

2018 장사(葬事)업무 안내



장사업무 안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1577-4129)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203-10

www.mohw.go.kr

2018

장사(葬事)업무 안내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차례

제1편 장사정책 총괄

제1장 장사정책 추진방향	3
1. 일반현황	3
2. 장사정책의 기본방향	4
3. 주요 추진계획	5
제2장 장사정책 추진	7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
2.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8
3. 묘지의 일제 조사 및 무연분묘의 처리	10
4.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11
5.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	12
6. 비용의 보조	15

제2편 매장과 분묘·묘지

제1장 매장	19
1. 매장의 정의	19
2. 매장의 시기	19
3. 매장의 장소	20
4. 매장의 방법	20
5.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	21
6. 매장신고	22
제2장 분묘	24
1. 분묘의 정의	24
2. 분묘의 점유면적 등	24

3. 묘지의 사용 연장 신청주기	25
4.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	26
5.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27

제3장 공설묘지 30

1. 묘지일반	30
2.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	31
3. 공설묘지의 설치기준	31
4. 공설묘지의 사망자정보 등록	32

제4장 사설묘지 33

1. 사설묘지 일반	33
2. 개인묘지	34
3. 가족묘지	37
4. 종중·문중묘지	39
5. 법인묘지	42
6.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처리절차	49

제5장 개장 50

1. 개장의 정의	50
2. 개장신고	50
3. 개장허가	53
4. 유형별 개장절차	54

제3편 화장과 화장시설

제1장 화장 61

1. 화장(시설)의 정의	61
2. 화장의 시기	61
3.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62

4. 화장의 방법	63
5. 화장신고	63

제2장 공설화장시설 66

1. 공설화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	66
2. 공설화장시설의 설치기준	66
3. 공설화장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67

제3장 사설화장시설 68

1. 사설화장시설	68
2.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68
3. 사설화장시설 설치기준	70
4. 화장 상황의 기록·보관	71
5. 사설화장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	71
6. 사설화장시설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72
7. 사설화장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74

제4편 봉안과 봉안시설

제1장 봉안 77

1. 봉안(시설)의 정의	77
---------------------	----

제2장 공설봉안시설 79

1.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	79
2. 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	79
3. 공설봉안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80

제3장 사설봉안시설	81
1. 사설봉안시설의 정의 및 종류	81
2.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81
3.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85
4. 봉안 상황의 기록·보관	89
5. 사설봉안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	90
6. 사설봉안시설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90
7. 사설봉안시설의 관리금 적립	93
8. 사설봉안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94

제5편 자연장과 자연장지

제1장 자연장	97
1. 자연장의 정의	97
2.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	98
제2장 공설자연장지	99
1. 공설자연장지의 조성 및 관리	99
2. 공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	100
3. 공설자연장지의 사망자정보 등록	101
제3장 사설자연장지	102
1. 사설자연장지의 정의 및 종류	102
2. 사설자연장지 조성 공통사항	103
3. 사설자연장지의 조성	106
4. 자연장 상황의 기록·보관	113
5. 사설자연장지에 대한 검사 및 보고	113

6.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114
7. 사설자연장지의 관리금 적립	116
8. 사설자연장지의 사망자정보 등록	117

제6편 장례식장

제1장 공설장례식장	121
1. 장례식장의 정의	121
2. 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121
3. 공설장례식장의 사망자정보 등록	122

제2장 사설장례식장	123
1. 장례식장영업자의 정의	123
2.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123
3.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등 기준	126
4. 가격표의 게시·등록	131
5. 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132
6.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134
7. 장례식장의 거래명세서 발급	142
8. 재해·재난 사망자 장례지원	142
9. 장례식장에 대한 검사 및 보고	146
10. 사설장례식장의 사망자정보 등록	147

제7편 장사시설 공통관리사항

제1장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151
1. 묘적부 및 매장· 화장· 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 작성·보관	151
2.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 조성 신고(허가)관리대장 작성·보관	151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제한지역	152
1. 장사시설 설치· 조성 제한지역	152
2.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54
제3장 행정처분 등	155
1.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155
2.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156
3. 사설묘지 설치자 등 및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57
4. 과징금 처분	161
5. 과태료 부과	163
6. 벌칙	169
7. 이행강제금	170

제8편 장사정보시스템

제1장 장사정보시스템	175
1. 장사정보시스템(e하늘)	175
2. e하늘 포털시스템	177
3. 화장관리시스템	186
4. 시설운영관리시스템	190
5. 장사행정지원시스템	196
6. 사망자정보관리시스템	212
7. 민원지원시스템	215
8. 기타	218

제9편 행정사항

제1장 행정사항	223
1. 장사업무 보완사항	223
2. 장사업무 통계보고	226
제2장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233
1. 목적	233
2. 추진 방침	233
3. 2018년 국고보조사업	234
제3장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홍보 ...	260
1. 목적	260
2.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순회설명회	260

제10편 부록

제1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주요 개정내용	265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주요 개정내용	265
제2장 친환경 화장용품 권장에 관한 운영지침	276
1. 목적	276
2. 친환경 화장용 관 권장기준	276
3. 친환경 화장용 부속용품 권장기준	277
4. 관 속의 부장품 규제물질	277
제3장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매뉴얼	279
제1절 개요	279
1. 목적	279
2. 법적 근거	279
3. 적용대상	279
4. 용어 정의	280
제2절 무연고 시신 처리 절차	281
1. 무연고 시신의 처리	281
2. 무연고자 등에 대한 시신처리 행정요령	283
3. 무연고 시신의 처리방법 및 공고 등	284
4. 무연고 시신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285
제4장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소방안	291
1. 기본적 인식의 공유	291
2. 장사시설 설치 민원극복 우수사례	293
3. 공모와 협상에 의한 입지선정	295
4. 타당성 검토 강화	299
※ 각 시·도 장사업무 담당부서	302



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용어변경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수 ○ 가족구성 ○ 만료시까지 ○ 사망시 ○ 약품처리시 ○ 묘지사용 ○ 완료확인 ○ 설치제한지역 ○ 폐지시 ○ 신고시 ○ 완수여부 ○ 장사시설내 ○ 불공정행위 	<p>〈변 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수 ○ 가족 구성 ○ 만료 시까지 ○ 사망 시 ○ 약품처리 시 ○ 묘지 사용 ○ 완료 확인 ○ 설치 제한지역 ○ 폐지 시 ○ 신고 시 ○ 완수 여부 ○ 장사시설 내 ○ 불공정 행위 	
인구구조 의 고령화, 사망자 수 증가 (p.3)	<p>(1)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경부터 노인세대에 대거 진입 ※노인인구(천명) : 5,452('10) → 8,084('20) → 12,691('30)</p> <p>(2) 기대수명의 연장 속에 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 ※기대수명(세) 남 : 78.22('15) → 79.31('20) → 80.41('25) → 81.44('30) 여 : 84.98('15) → 85.67('20) → 86.36('25) → 86.98('30) ※사망자수(천명) : 308('15) → 357('20) → 403('25) → 453('30)</p>	<p>〈변 경〉</p> <p>(1)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경부터 노인 세대에 대거 진입 ※65세 이상 노인인구(천명) : 6,827('16년 실적치) → 10,508('25) → 15,176('35)</p> <p>(2) 기대수명의 연장 속에 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 ※기대수명(세) 남 : 80.3('20) → 81.6('25) → 82.7('30) → 83.7('35) 여 : 86.2('20) → 87.0('25) → 87.8('30) → 88.5('35) ※사망자 수(천 명) : 281('16년 실적치) → 324('20) → 373('25) → 423('30) → 480('35)</p>	○ 현황에 맞도록 통계수치 변경
매장 및 화장 변화추이 (p.4)	<p>(1) 장사방법 선택 요인 - 매장선택 이유 : 사전 묘지 마련, 전통적 관습, 성묘가능, 화장반감 등</p>	<p>〈변 경〉</p> <p>(1) 장사방법 선택 요인 - 매장 선택 이유 : 사전 묘지 마련, 전통적 관습, 성묘 가능, 화장 반감 등</p>	○ 현황에 맞도록 통계수치 변경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선호 이유 : 장례절차 간소, 묘지 미확보, 관리 부담, 장례비용 절감 등 (2) 화장률의 지속 증가 - '05년 기점으로 화장률(52.6%)이 매장률(47.4%)을 넘어선 이후 '15년 기준 8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 선택 이유 : 관리 용이, 고인의 유연, 묘지 미확보, 장례절차 간소 등 (2) 화장률의 지속 증가 - '05년 기점으로 화장률(52.6%)이 매장률(47.4%)을 넘어선 이후 '16년 기준 82.7% 	
장사시설 현황 (p.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16년 12월말 기준 전국 화장시설은 총 58개(공설), 화장로 337기 (2) '15년 말 기준 전국의 봉안당은 총 392개소로 공설 147개소, 사설 245개소(법인, 종교단체) (3) '15년 말 기준 전국의 자연장지는 총 1,514개소로 공설 51개소, 사설 1,463개소(개인·가족, 종종·문중, 종교단체, 법인) (4) '15년 말 기준 전국의 묘지는 총 490개소로 공설 335개소, 사설 155개소(법인) 	<p><변 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17년 12월말 기준 전국 화장시설은 총 59개소(공설 58), 화장로 346로 (2) '16년 말 기준 전국의 봉안당은 총 414개소로 공설 148개소, 사설 266개소(법인, 종교단체) (3) '16년 말 기준 전국의 자연장지는 총 2,012개소로 공설 52개소, 사설 1,960개소(개인·가족, 종종·문중, 종교단체, 법인) (4) '16년 말 기준 전국의 묘지는 총 494개소로 공설 341개소, 사설 153개소(법인) 	○ 현황에 맞도록 통계수치 변경
장사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 (p.5)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공설봉안당 지원 축소 검토('16년 이후, 자연장지에 포함 예정) 	<p><변 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공설봉안당 지원 축소 검토 	
분묘의 정의 (p.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 시신이나 유골이 없더라도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할 것이 확실시될 경우, 분묘로 볼 수 있음 	<p><변 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 시신이나 유골이 없더라도 봉분 또는 비석 등의 시설물이 있어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할 것이 확실시되거나 사실상 분묘를 설치한 것과 동일한 영향이 있을 경우, 분묘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분묘의 범위 명확화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p.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이 되는 비석은 분묘와 연관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며, 분묘와 연관이 없는 공적비 등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p><변 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묘와 연관되어 설치되는 비석에만 적용되며, 분묘와 연관이 없는 공적비 등은 해당되지 않음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p>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 (p.31)</p>	<p>○ 공설묘지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 제2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p>	<p>〈변 경〉 ○ 공설묘지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거래명세서의 발급은 2018. 6. 20일 부터 시행</p>	<p>○ 장사법 개정 (법 제13조)</p>
<p>종중·문중 묘지 (p.39)</p>	<p>- 종중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분묘수호·제사·종원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 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중은 문중이라고 일컫 기도 하지만, 문중은 종중과 동의어는 아니며, 고조(4 대조)를 공동시조로 하는 유복친의친족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통례임</p>	<p>〈변 경〉 - 종중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분묘수호·제사·종원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 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고 정의함 - 종중은 문중이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문중은 종중과 동의어는 아니며, 고조(4대조)를 공동시조로 하는 유복친의 친족 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통례임</p>	
<p>법인묘지에 대한 검사 및 보고 (p.44)</p>	<p>○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묘지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p> <p>○ 매장 상황의 보고 - 법인묘지의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연도별 매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함</p>	<p>〈변 경〉 ○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묘지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증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7일 전 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 계획을 법인묘지의 설치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p> <p>○ 매장 상황의 보고 - 법인묘지의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연도별 매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도록 안내</p>	<p>○ 검사의 사전통지 의무</p> <p>○ 보고 시 가격정보 현행화 안내</p>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법인묘지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p.45~47)	<신 설>	(2) 가격표의 게시·등록 ○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팻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4) 거래명세서의 발급 ○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해당 묘지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2018. 6. 20일부터 시행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2조) - 행정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장사법 개정 (법 제24조)
공설 화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 (p.66)	○ 공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변 경> ○ 공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거래명세서의 발급은 2018. 6. 20일부터 시행	○ 장사법 개정 (법 제13조)
시설 화장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 (p.71)	1) 검사 및 보고 ○ (생 략)	<변 경> 1) 검사 및 보고 ○ (현행과 같음) - 증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 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계획을 시설화장시설의 설치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2) 화장 상황의 보고	○ 검사의 사전통지 의무 ○ 보고 시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2) 화장 상황의 보고 (생 략)	(현행과 같음)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도록 안내	가격정보 현행화 안내
시설 화장시설의 사용료· 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p.72~ 74)	〈신 설〉	2) 가격표의 게시·등록 ○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팟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4) 거래명세서의 발급 ○ 시설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해당 화장시설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2018. 6. 20일부터 시행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2조) - 행정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장사법 개정 (법 제24조)
공설 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 (p.79)	○ 공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변 경〉 ○ 공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거래명세서의 발급은 2018. 6. 20일 부터 시행	○ 장사법 개정 (법 제13조)
봉안시설 설치신고 시 유의사항 (p.89)	○ 봉안시설 설치 신고절차 간소화 - 따라서 새로이 묘지를 설치하여 동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지역이 묘지설치제한지역이 아니고 묘지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묘지허가 절차와	〈변 경〉 ○ 봉안시설 설치 신고절차 간소화 - 따라서 새로이 묘지를 설치하여 동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지역이 묘지 설치 제한지역이 아니고 묘지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묘지 허가 절차와	○ 교육환경 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p>봉안 시설 신고 절차를 동시에 처리 ※ 단,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 위생정화구역 안에 봉안시설은 설치 금지 시설물이므로, 이에 저촉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p>	<p>봉안시설 신고 절차를 동시에 처리 ※ 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이에 저촉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p>	
<p>사설 봉안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 (p.90)</p>	<p>1) 검사 및 보고 ○ (생략)</p> <p>2) 봉안 상황의 보고 (생략)</p>	<p>〈변경〉</p> <p>1) 검사 및 보고 ○ (현행과 같음) - 증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 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계획을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p> <p>2) 봉안 상황의 보고 (현행과 같음) ※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 하도록 안내</p>	<p>○ 검사의 사전통지 의무</p> <p>○ 보고 시 가격정보 현행화 안내</p>
<p>사설 봉안시설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p.91~92)</p>	<p>〈신설〉</p>	<p>2) 가격표의 게시·등록 ○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풋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p> <p>4) 거래명세서의 발급 ○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해당 봉안시설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 2018. 6. 20일부터 시행</p> <p>○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2조) - 행정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p>	<p>○ 장사법 개정 (법 제24조)</p>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p>공설 자연장지의 구성 및 관리 (p.99)</p>	<p>○ 공설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p>	<p>〈변 경〉 ○ 공설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거래명세서의 발급은 2018. 6. 20일부터 시행</p>	<p>○ 장사업 개정 (법 제13조)</p>
<p>사설 자연장지에 대한 검사 및 보고 (p.113~ 114)</p>	<p>1) 검사 및 보고 ○ (생략)</p> <p>2) 자연장 상황의 보고 (생략)</p>	<p>〈변 경〉 1) 검사 및 보고 ○ (현행과 같음) - 증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계획을 사설자연장지의 조성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p> <p>2) 자연장 상황의 보고 (현행과 같음)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도록 안내</p>	<p>○ 검사의 사전통지 의무</p> <p>○ 보고 시 가격정보 현행화 안내</p>
<p>사설 자연장지의 사용료· 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p.114~ 116)</p>	<p>〈신 설〉</p>	<p>2) 가격표의 게시·등록 ○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풋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p> <p>4) 거래명세서의 발급 ○ 사설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자는 해당 자연장지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p>	<p>○ 장사업 개정 (법 제24조)</p>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p>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2018. 6. 20일부터 시행</p> <p>○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2조) - 행정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p>	
<p>공설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p.122)</p>	<p>○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에 관하여는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p>	<p><변 경></p> <p>○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법 제2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 ※ 거래명세서의 발급은 2018. 6. 20일 부터 시행</p>	<p>○ 장사법 개정 (법 제28 조의2)</p>
<p>장례식장 영업의 신고 (p.125)</p>	<p>4) 위반시 벌칙 등(법 제39조, 제42조)</p>	<p><변 경></p> <p>4) 위반시 벌칙 등(법 제32조, 제39조, 제42조) ○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폐쇄명령 가능</p>	
<p>장례식장의 시설·설비·안전·위생 기준 (p.127~128)</p>	<p>○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례식장에는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p> <p>○ '16.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7.1.8. 시행)에 따라 장례식장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 등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p>	<p><변 경></p> <p>○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례식장에는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함)이 아닌 장례식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장례식장</p> <p>○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장례식장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 등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p>	<p>○ 시행</p>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됨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	
장례식장 영업신고 점검항목 (p.130)	○ 소음방지용 내장제, 소음방지용 외장제 ○ 냉방설비, 난방설비 ○ 소독설비, 살균설비	〈변 경〉 ○ 소음방지용 내·외장제 ○ 냉·난방설비 ○ 소독·살균설비	
가격표의 게시·등록 (p.131)	〈신 설〉	○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팸말 등을 사용하여 <u>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u> ※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교육 대상자별 교육 실시계획 (p.138)	(2)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15년 기준 전국에서 월별 5~10명 내외 예상	(2)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삭 제〉	
장례식장의 거래명세서 발급 (p.142)	〈신 설〉	1) 거래명세서의 발급 ○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 <u>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u> ※ 2018. 6. 20일부터 시행 2) 위반시 벌칙 등(법 제32조, 제42조) ○ 시정명령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장사법 개정 (법 제29조)
장례식장에 대한 검사 및 보고 (p.146)	1) 검사 및 보고 ○ (생략)	〈변 경〉 1) 검사 및 보고 ○ (현행과 같음) - 증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 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입·	○ 검사의 사전통지 의무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2)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 보고 (생 략)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계획을 장례식장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2)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 보고 (현행과 같음) ※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도록 안내	○ 보고 시 가격정보 현행화 안내
장사시설 설치·조성 제한지역 (p.152~153)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과 법 제1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같은 조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 상업지역 및 같은 조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을 제외함 ⑩ (생 략)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일 것 ·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10만㎡ ·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3만㎡ ⑪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변 경>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함 -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 -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같은 조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 상업지역 및 같은 조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⑩ (현행과 같음) -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만㎡,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 미만일 것 ⑪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다만, 자연장지는 <u>요존국유림</u> 내에 조성할 수 있음	다만, 자연장지는 <u>보전국유림</u> 내에 조성할 수 있음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설치 금지 장사시설 (p.154)	〈 신 설 〉	- 교육환경법 제9조제9호에 따라 교육 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와 <u>중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함</u>)를 설치·조성할 수 없음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에 자연 장지를 포함하는 것은 2018. 3. 20일부터 시행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p.155)	1) 행정처분 대상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변 경 〉 1) 행정처분 대상 (7)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장사법 개정 (법 제31조)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p.156)	〈 신 설 〉	(1) 시정명령 - 대상 ⑥ 법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장사법 개정 (법 제32조)
행정처분 대장 작성·보관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 2)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	〈 삭 제 〉	○ 중복
과태료 부과대상자 (p.164)	(13)부터 (21)까지를 (14)부터 (22)까지로 하고, (22)부터 (23)까지를 (24)부터 (25)까지로 하며, (13) 및 (23)을 신설함	〈 변 경 〉 (13)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3) 법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 장사법 개정 (법 제42조)
이행강제금 (p.171)	〈 신 설 〉	○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방법 안내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장사정보 시스템 (p.176)		<변 경> 2)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성도	○ 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e하늘 포털 시스템 (p.177~185)	<p>2) 시스템 구축 목적과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명 위주의 인터넷 기반 예약창구 단일화로 실수요자에 대한 예약·이용 편의 제공 <p>3) e하늘 포털시스템 화면</p> <p>4) 인터넷 화장예약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유족 등) 신청/변경/취소 원칙 ※ 화장시설 및 시간별 중복 예약 불가능하며, 매장·화장·봉안·자연장 등의 처리사실이 확인된 자는 예약 불가 ○ 사망자, 연고자 실명인증 확인 방식 적용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이용 사망자, 연고자 실명 확인 - 화장예약 신청인 본인인증 <p>5) 장사시설 가격 정보 등록 및 게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시설 요금, 장례용품 등 가격 정보 등록 - 가격 정보 등록 유형 구분(사용료·관리비, 시설물, 장례용품, 기타) <p>○ 장사시설 요금, 장례용품 등 가격 정보 게시</p>	<p><변 경></p> <p>2) 시스템 구축 목적과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명인증 기반의 인터넷 예약창구 단일화로 실수요자에 대한 예약·이용 편의 제공 <p>3) e하늘 포털시스템 화면</p> <p>4) 인터넷 화장예약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유족 등) 신청/변경/취소 원칙 ※ 화장시설 및 시간별 중복 예약 불가능하며, 매장·화장·봉안·자연장 등의 처리사실이 확인된 자는 예약 불가 ○ 사망자, 연고자 실명인증 확인 방식 적용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이용 사망자, 연고자 실명 확인 - 화장예약 신청인, 연고자 본인인증 확인 <p>5) 장사시설 가격 정보 등록 및 게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시설 요금, 장례용품 등 가격 정보 등록 - 가격 정보 등록 유형 구분(사용료·관리비, 시설물, 장례용품, 기타) - 해당 장사시설의 운영에 맞게 품종(관, 수의 등)에 따른 취급품목을 구성할 수 있고, 취급품목에 대한 판매 여부(판매·미판매) 관리 가능 <p>○ 장사시설 요금, 장례용품 등 가격 및 표준 평균가격 정보 게시</p> <p>○ 실속정보(지자체 장서관련 지원 사항 조회) - 개·화장 장려금, 시설이용료 감면 혜택, 기타 지원사항 등</p>	○ 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화장관리 시스템 주요 관리 항목 (p.189)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변 경> ○ 신청자 생년월일	○ 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장사행정 지원시스템 (p.212)		〈변 경〉 3) 장사행정지원업무 처리절차 ○ 각 메뉴별 등록 방법 - 자료관리	○ 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의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p.218~ 220)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연고자 주민등록번호 - 고인과의 관계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 신고자 주민등록번호 -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보유기간 책정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64조	〈변 경〉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연고자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신청자 생년월일 - 관리자 생년월일 - 신고자 생년월일 - 납부자 생년월일 ※보유기간 책정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60조	○ 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2018년 국고보조 사업 (p.237~ 249)		〈변 경〉 ○ [서식 제2호] 사업계획서 ○ [서식 제3호] 시·도지사 검토의견 ○ [별표 2] 예산신청서 작성요령	○ 장사시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계획 추가 ○ 자문위원회 활동 실적 및 결과 추가
국고보조 금통합관리 시스템 이용 안내	○ (참고 2)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 안내문	〈삭 제〉	○ 시행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홍보 (p.260~ 262)	〈신 설〉	1. 목적 2.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순회설명회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12.29., 법률 15269호) (p.275)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시설 이용자가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례용품까지 포함한 과다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 방지 목적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시행('17.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종전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정비(제29조의4제2호) - 6개월 후 시행('18. 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장례식장 임대료),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제1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9조) · 거래명세서 미발급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31조, 제32조, 제42조) 	○ 장사법 주요 개정사항 반영
무연고자 등에 대한 시신처리 행정요령 (p.283)	2)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연고자가 되므로 사망한 장소에 관계 없이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제급여 지급 등을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장제급여' 참조)	<p>〈변 경〉</p> <p>2)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장소에 관계없이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제급여 지급 등을 시행(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장제급여' 참조)</p>	○ 혼란을 야기하는 문구 수정
무연고 시신 처리 절차 (p.288~290)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3호서식] 무연고 시신 처리 관리대장 ○ [별지 제4호서식] 무연고 시신 처리 실적 	○ 무연고 시신 통계서식 추가
지자체간 공동 장사시설 설치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서남권 조성사례 ○ 춘천-홍천 조성사례 	〈삭 제〉	



제1편

장사정책 총괄

제1장 장사정책 추진방향	3
제2장 장사정책 추진	7

제1장 장사정책 추진방향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1 일반현황

1) 인구구조의 고령화, 사망자 수 증가

(1)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경부터 노인세대에 대거 진입

※ 65세 이상 노인인구(천 명) : 6,827('16년 실적치) → 10,508('25) → 15,176('35)

(2) 기대수명의 연장 속에 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

※ 기대수명(세)

남 : 80.3('20) → 81.6('25) → 82.7('30) → 83.7('35)

여 : 86.2('20) → 87.0('25) → 87.8('30) → 88.5('35)

※ 사망자 수(천 명) : 281('16년 실적치) → 324('20) → 373('25) → 423('30) → 480('35)

2) 국민 의식수준 향상, 핵가족화, 다양성 등이 장사문화 변화에 영향

- (1) 국가·사회적 복지서비스로서의 장사문화 및 제도의 변화
- (2) 국토 이용에 대한 효율성 및 친환경적인 장법에 대한 관심
- (3) 가족 구성의 양적·질적 변화와 개인화의 영향으로 묘지 조성·관리 한계
- (4) 장사수요에 상응하여 시설의 고급화 및 다양화

3) 매장 및 화장 변화추이

(1) 장사방법 선택 요인

- 매장 선택 이유 : 사전 묘지 마련, 전통적 관습, 성묘 가능, 화장 반감 등
- 화장 선택 이유 : 관리 용이, 고인의 유언, 묘지 미확보, 장례절차 간소 등

(2) 화장률의 지속 증가

- '05년 기점으로 화장률(52.6%)이 매장률(47.4%)을 넘어선 이후 '16년 기준 82.7%
※'90년대 중반까지 화장률은 20% 수준('75~'85년 4.2% ↑ '85~'95년 5.4% ↑ '95~'05년 30.6% ↑)

4) 장사시설 현황

- (1) '17년 12월말 기준 전국 화장시설은 총 59개소(공설 58), 화장로 346로
- (2) '16년 말 기준 전국의 봉안당은 총 414개소로 공설 148개소, 사설 266개소(법인, 종교 단체)
- (3) '16년 말 기준 전국의 자연장지는 총 2,012개소로 공설 52개소, 사설 1,960개소(개인·가족, 종종·문중, 종교단체, 법인)
- (4) '16년 말 기준 전국의 묘지는 총 494개소로 공설 341개소, 사설 153개소(법인)

2

장사정책의 기본방향

1) 장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장사행정 역량 강화

- (1) 제도와 관행의 격차 해소 및 법적 실효성 제고
- (2) 현행 장사제도 문제점을 파악하여 비합리적인 규제의 제도 개선 추진

2) 매장 억제 및 화장·봉안·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개선

- (1) 화장시설 설치촉진 및 현대화, 화장가능 시설·지역 확대 등 화장장려를 위하여 제도 기반의 개선 및 정비
- (2)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이행

- (3) 사망자정보, 장사시설 이용 및 묘지설치 관련정보의 관리 공유체계 구축
- (4)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18~'22)에 대비하여 불법·무연분묘 정비방안 개발

3)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장사문화의 개선

- (1) 국민의 인식변화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현장순회교육을 통한 장사문화 개선 및 인식변화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2)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관계기관 협조 및 전국적 현장순회교육 등을 통하여 장사문화 인식개선 홍보·교육
- (3) 광고 및 관련 이벤트의 개최 등을 통해 친환경적 장사문화 홍보 및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3

주요 추진계획

1) 장사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

- (1) 지자체간 공동장사시설 설치로 지역 간 장사업무 협력 체계 구축
- (2)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을 모두 갖춘 종합장사시설 설치로 지역 편의성·접근성 증대
- (3) 노후 화장로를 신형 화장로로 교체하여 화장서비스 편의성 제고
- (4) 공설봉안당 지원 축소 검토
- (5) 공설묘지 재개발

2) 화장장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1) 화장시설의 관내·관외 요금 격차 해소
 - ※ 관내·관외 요금 격차는 원가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
- (2)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간 공동으로 화장시설 설치로 지역주민 서비스 증대

3) 장례서비스 개선

- (1)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및 시설·설비·안전기준 등 관리기준 마련
- (2) 장례식장 이용자의 안전과 만족도 등 편익제고를 위한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 실시
- (3)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추진, 민관 합동으로 친자연적인 장례 홍보·캠페인 실시

4)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 (1)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 (2)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 (3) 장례 및 장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4) 각종 연금·복지 급여의 지급 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자정보 관리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장사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주민참여 확대

- (1) 장사시설 신축 시 시설의 필요성, 설치지역의 환경개선·편의성·경제적 이익 등을 지역 주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주민들이 공모를 통한 시설 유지 결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2) 호화·사치 장례 근절 및 검소하고 친자연적 장사문화 확산 추진

제2장 | 장사정책 추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제4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함(장사법 제4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법 제2조」 :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1)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장사시설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 포함 노력

- 국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다음의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장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조성
 - 990만㎡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 화장시설 설치

2)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음(장사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음(장사법 시행령 제3조제4항)

2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1)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법 제5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 ①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②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 ③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 ④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 ⑤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 ⑥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 1차 종합계획(2013~2017년) 이후 2차 종합계획(2018~2022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자체 지역수급계획 수립(법 제5조제2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관할 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

- ① 지역수급계획의 기본방향
- ②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 ③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 ④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 ⑥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 ⑦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 지역수급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3)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자체 지역수급계획 수립 절차

- ①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
- ②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 시달
- ③ 관할 구역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의 수립·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보건복지부)
 - 지자체에서 수립된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 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
 - ※ 관할 구역 내 읍·면·동간 갈등은 관할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관할 구역 내 시·군·구간 갈등은 관할 시·도에서 담당하고, 시·도간 갈등 및 타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함
 -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각 시·도 또는 시·군·구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갈등을 조정함을 원칙으로 함
- ⑤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 확정
- ⑥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통보
- ⑦ 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다음 종합계획에 반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
 -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의 추진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는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비용의 보조에 반영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음

3

묘지의 일제 조사 및 무연분묘의 처리(법 제11조, 제28조)

1) 묘지의 일제 조사(법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음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경우
- ②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경우

2) 무연분묘의 처리(법 제28조)

(1) 개장 주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개장 절차 및 방법(시행규칙 제19조)

① 공 고

-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중앙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함(이하 동일)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란,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 공식 홈페이지를 말함(이하 동일)

② 무연분묘의 처리

-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의 기간 만료 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
- 개장 후 봉안의 기간은 10년
- 봉안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함

4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법 제12조)

1)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주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함

2)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방법

(1) 매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시행령 제9조)

-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 10년
-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난 경우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하여야 함
- ※무연고 시신 등을 화장하지 아니하고 매장 또는 봉안한 경우에는 화장하여야 함

(2) 공고 및 공고관련 서류의 보존

-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3) 공고 방법(시행규칙 제4조)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 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4) 공고 내용(시행규칙 제4조)

- ① 인적사항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함)·주소·성명·성별·연령·사망일·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신의 특징에 관한 사항
- ② 시신의 발생상황 : 발생장소, 발견경위, 사망 당시 착용복장
- ③ 매장·화장·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 ④ 연락처

3)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능력이 없거나 처리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의 처리

쪽방 거주자 등의 사망 시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능력이 없거나 시신처리를 거부·기피한다고 시장등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매뉴얼(p.306~318) 참조)

행려환자 또는 복지시설 보호자의 사망 시 처리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사목에는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고자(행정기관)가 있는 행려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의 처리는 사망하기 전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던 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의 처리는 사망하기 전의 치료·보호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복지조치기관도 없는 경우에는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함

5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법 제34조)

1)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등”) 지정대상

-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 (3) 국가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2) 보존묘지심사위원회(시행령 제27조부터 제34조)

(1)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 성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임기 : 2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위 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간 사	- 1명(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 -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직 무		- 보존묘지등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보존묘지등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회 의		-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관계자 의견청취		-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소유자, 관계공무원이나 그 밖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수당 등		-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2)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 성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함 - 임기: 2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위원장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위 원	시·도의 조례로 정함
	간 사	- 1명(시·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 -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직 무		- 보존묘지등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보존묘지등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회 의		-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관계자 의견청취		-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소유자, 관계공무원이나 그 밖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수당 등		-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3) 보존묘지등의 지정

(1)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시행령 제35조)

① 지정절차

-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 보존묘지 등의 지정을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청취
-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
- 국가보존묘지 등 지정

② 관보 게재 및 지정서 교부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보존묘지 등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
-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묘지소유자들에게 국가보존묘지등 지정서 교부

③ 지정기준

- 「국가장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 사회장 대상자 등의 묘지 또는 분묘로서 법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묘지 또는 분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2) 시·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시·도보존묘지등”)(시행령 제36조)

① 지정절차

- 묘지소유자등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 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
- 시·도지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
- 시·도보존묘지등 지정

② 공보 게재 및 지정서 교부

- 시·도지사는 시·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
- 시·도지사는 당해 묘지소유자 등에게 시·도보존묘지등 지정서 교부

③ 지정기준

- 시·도의 조례로 규정

4) 보존묘지등의 지정시 특례

- ① 법 제18조 규정의 분묘의 점유면적 등의 제한 및 법 제19조 규정의 분묘의 설치 기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 ② 지정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 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함

5) 보존묘지등의 지정 해제 등(시행령 제37조)

(1) 지정 해제 및 범위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2) 지정서 반납

묘지소유자등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6

비용의 보조(법 제36조)

- 1) 국가는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 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제2편

매장과 분묘·묘지

제1장 매장	19
제2장 분묘	24
제3장 공설묘지	30
제4장 사설묘지	33
제5장 개장	50

제1장 | 매장

1 매장의 정의(법 제2조)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장사방법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2 매장의 시기(법 제6조)

매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1) 24시간 이전에 매장을 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5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에 대하여 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2)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매장의 장소 (법 제7조)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음

- 1) 매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만 가능하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묘지에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만 매장신고 수리
- 2)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매장의 방법 (법 제9조)

매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1)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시행령 제7조)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함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이어야 함
- 2)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하려면 다음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1) 약품처리를 할 수 있는 장소

시신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2)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시 시설기준

- 시신약품처리실 : 실내공기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소독시설, 상하수도 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구비
- 약품보관실 : 환기시설 설치

3)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다음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이 약품처리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약품처리로 인하여 질병의 감염·확산 및 악취의 발생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없는 경우

4)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시 준수사항

- 약품처리로 인하여 시신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그 약품은 「약사법」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품을 사용하여야 함
- 시신의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
- 시신의 약품처리 중에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

-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
- 약품처리기록대장의 기록·작성 및 보존·비치
 - 장례식장 영업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비치

5)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매장신고 (법 제8조)

1) 신고유형 : 사후신고제

※사망을 예견할 수 없으므로 사후신고제로 운영

2) 신고의무자 : 매장을 한 자

3) 신고기한 : 매장 후 30일 이내

4) 신고기관 :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

5) 처리기간 : 즉시

6)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매장신고	사망자 및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		
접 수	행정전산망을 통한 매장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사망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서 작성 내용을 확인 - 매장 및 화장의 시기를 반드시 확인	처리기관
↓		
검 토	매장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시설묘지설치 신고 및 허가 여부 확인 필요)	처리기관
↓		
결 재	매장신고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매장신고내역 및 관리대장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 리	매장신고인에게 매장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7)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징수절차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 불복절차 및 방법
 - 과태료 처분 불복 시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 이의 제기 시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
 -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실시

제2장 | 분묘

1 분묘의 정의 (법 제2조)

-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 시신이나 유골이 없더라도 봉분 또는 비석 등의 시설물이 있어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할 것이 확실시되거나 사실상 분묘를 설치한 것과 동일한 영향이 있을 경우, 분묘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분묘의 점유면적 등 (법 제18조·시행령 제23조)

- 1) 개인묘지의 면적 : 30㎡ 이하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함)
- 2) 공설묘지와 사설묘지(개인묘지 제외) 안의 분묘 등의 설치구역 면적
 - 공설묘지와 사설묘지 중 개인묘지를 제외한 묘지의 면적은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 합장하는 경우에는 15㎡ 이하로 설치할 수 있음

3)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분묘와 연관되어 설치되는 비석에만 적용되며, 분묘와 연관이 없는 공적비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4)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 법인묘지의 경우 과징금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묘지의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3

묘지의 사용 연장 신청주기 (법 제19조)

1) 적용대상 분묘

-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 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
-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 등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음
-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 제외)에 대하여는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음

2) 묘지의 사용 연장 신청주기

-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기본적인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함
- 합장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

3) 분묘의 설치기간의 단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설치기간은 단축할 수 있으나, 연장신청 횟수는 단축 불가

4)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제43조)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4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 (법 제19조·시행규칙 제13조)

2001. 1. 13일 이후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장사법 일부개정으로 설치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됨(15. 12. 29. 법률 제13660호). 단, 분묘 설치기간은 묘지 사용 계약기간과는 별개이므로 묘지 사용 계약은 15년 등 일정 기간 단위로 가능함

1)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신청 방법 및 절차

(1) 연장신청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

○ 신청기관

구 분	신청기관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 시장등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

-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의 교부
 -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 하여야 함
- 법인묘지 설치·관리인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내용 보고
 -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가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등에게 통보
- 연장신청 사항의 묘적부 및 관리대장 기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한 때 묘적부 및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 법인묘지의 경우,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이 묘적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5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법 제20조·시행규칙 제14조)

1) 적용대상 분묘

- 2001. 1.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됨
-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자유의사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것에 의함

2) 연고자가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 증명서를 교부받음
 -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정신고 후 개장을 하여야 함

3)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서면 통보

- 개정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정사유, 개정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 방법 ④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
- 개정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정신고를 한 후 개정

- 연고자가 아닌 설치자가 개장하는 경우에는 개장신고를 하여도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개장을 할 수 없으므로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장신고토록 함
- 해당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통보를 하지 않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당분묘의 개장과 관련한 사항

(보상, 기한, 비용 등)에 대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

○ 협의가 완료된 경우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기존 분묘의 사진과 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 후 개장

○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

- 봉안기간은 10년
-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고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하므로, 두 번째 공고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

○ 개장신고서에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

- 개장신고를 하여도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개장을 할 수 없으므로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장신고토록 함
- 해당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공고를 하지 않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
 - 봉안기간은 10년
 -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제3장 | 공설묘지

1 묘지일반 (법 제2조, 법 제21조, 법 제40조)

1) 묘지의 정의

- (1)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함
- (2)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장사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묘지의 종류

- (1)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2) 사설묘지 :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3)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음(개인묘지 등은 적용 제외)

(1) 예외

-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
-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 (1)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2)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 (법 제13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음
- 공설묘지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거래명세서의 발급은 2018. 6. 20일부터 시행
- 공설묘지의 설치·관리인은 매장을 한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개장유골) 매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매장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3

공설묘지의 설치기준 (시행령 제11조 별표 1)

- ① 분묘의 형태는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함
- ②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③ 폭 5m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 ④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함

- ⑤ 공설묘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 ⑥ 공설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4

공설묘지의 사망자정보 등록 (법 제33조의3)

- 공설묘지의 설치·관리인(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함)은 매장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란 죽은 태아를 제외한 사망자의 시신과 유골·골분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말함(이하 동일)
 - ① 사망자의 인적사항
 - 성명 및 성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생년월일, 외국국적동포는 국내 거주신고번호)
 -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외국인은 국내 체류지, 재외국민은 실제 거주지,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
 - ② 사망일과 장사시설 이용일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4장 | 사설묘지

1 사설묘지 일반 (법 제14조·시행령 별표 2, 법 제26조)

1) 사설묘지의 종류

-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2) 사설묘지의 공통설치기준

- (1)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함
- (2)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3)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 ※개인·가족묘지에 한하여 이격 거리기준이 각각 “200m 이상”, “300m 이상”으로 완화
 -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란 토지의 상황 즉, 지형의 형태에 의한 능고·차폐시설 등으로 묘지예정지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가시권밖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등임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은 한마을 전체의 호수를 기준으로 하되 “동, 리” 등 행정구역 단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그 지역의 지형적 상황이나 생활의 유지관계, 취락의 형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단, 20호는 일종에 기준이고 단순히 수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은 아님)

(4)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 1차 위반시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2차 위반시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3차 위반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시 시설폐쇄(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 묘지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3) 사설묘지 폐지신고(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폐지 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폐지 사실을 연고자 등에게 알려야 함
- (2) 폐지 시에는 사후처리, 요금 등의 정산 등에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3) 폐지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4) 공고 등 사후 조치를 미 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2

개인묘지 (법 제14조) (시설물 설치기준 시행령 제23조)

“개인묘지”라 함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1) 면적

- (1) 30㎡ 이하
- (2)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30㎡를 초과할 수 없고 합장의 경우도 동일
- (3) 개인묘지 내 분묘의 점유면적은 30㎡ 이하로 평면도 위에서 분묘와 시설물을 포함한 면적을 구적하며,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면 끝에서부터 계산(경사면 자체는 면적에 미포함)

2) 시설물 설치기준

-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2) 상석 1개
- (3)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이러한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3) 개인묘지의 설치기준

- (1)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
- (2) 그 외 사항은 묘지의 공통설치기준과 동일

4)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시행규칙 제5조)

(1) 설치신고 : 사후신고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등에 신고

○ 구비서류

- 평면도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 하는 경우만 해당)

○ 기존의 묘지에 합장할 경우 묘지설치 신고의무

- 기존의 묘지(분묘)가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그 법령 소정의 설치면적 범위 내에서는 부부합장을 위한 쌍분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묘지(분묘)가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현행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개인묘지 설치 신고를 하여야만 그 설치가 가능하며, 점유면적 또한 부부합장 여부와 관계없이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지목이 “묘지”인 장소에 분묘 설치 가능 여부

-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 (신고)허가 후 분묘를 설치하여야 함

(2) 설치변경신고 : 사후신고

설치변경 후 30일 이내에 신고

- 설치변경신고 사유
 -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 구비서류 : 변경도면 첨부

(3) 처리기간 : 7일

(4)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고서 작성	묘지, 사망자, 설치자, 관리자,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		
접 수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처리기관
↓		
검 토	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관
↓		
결 재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내역 및 관리대장·묘적부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 리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5)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① 연고자의 확인(실제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
 - ②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우선순위에 따라 부과

3

가족묘지(법 제14조)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 「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친족의 범위로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음

1) 면적 : 100㎡ 이하

(1) 가족묘지 내 분묘의 점유면적

-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10㎡ 이하
- 합장의 경우 점유면적 : 15㎡ 이하
 - 비석, 상석 등 시설물 포함
 - 분묘의 점유면적은 평면도 위에서 분묘와 시설물을 포함한 면적을 구적하며,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면 끝에서부터 계산(경사면 자체는 면적에 미포함)

2) 시설물 설치기준

-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2) 상석 1개
- (3)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이러한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3) 가족묘지의 설치기준

- (1)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 이하로 설치
- (2)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
- (3)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함
- (4) 그 외 사항은 묘지의 공통설치기준과 동일

4) 가족묘지 설치(변경)허가(시행규칙 제6조)

(1) 설치허가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시장등에게 설치 허가 신청

○ 허가신청 방법 및 절차

- 구비서류

- ① 평면도
- ②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③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 ⑤ 가족묘지 설치허가 신청서의 작성
- ⑥ 10일 이내에 가족묘지 설치허가 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 ⑦ 설치공사 완료 확인 후 가족묘지 설치허가증 교부

(2) 설치변경 허가

○ 설치변경 허가신청 사유

- 가족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 변경 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 구비서류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 가족묘지 설치변경 허가신청서의 작성
 - 10일 이내에 가족묘지 설치변경 허가 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변경사항의 확인 후 가족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교부
- (3)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4

종중·문중묘지(법 제14조)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 종중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제사·종원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고 정의함
 - 종중은 문중이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문중은 종중과 동의어는 아니며, 고조(4대조)를 공동시조로 하는 유복친의 친족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통례임

1) 종중·문중묘지의 면적 등

- (1) 면적 : 1,000㎡ 이하
- (2) 종중·문중묘지 내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10㎡ 이하
- 합장의 경우 점유면적 : 15㎡ 이하
 - 비석, 상석 등 시설물 포함
 - 분묘의 점유면적은 평면도 위에서 분묘와 시설물을 포함한 면적을 구적하며,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면 끝에서부터 계산(경사면 자체는 면적에 미포함)

(3) 시설물 설치기준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이러한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2)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기준

- (1) 종중·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 이하로 설치
- (2)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
- (3)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함
- (4) 그 외 사항은 묘지의 공통설치기준과 동일

3) 종중·문중묘지 설치(변경)허가(시행규칙 제6조)

(1) 설치허가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시장등에게 설치 허가 신청

- 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 구비서류
 - ① 종중·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실측도
 - ③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④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위하여 종중·문중묘지 설치허가증의 첨부를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 종중·문중묘지 설치허가신청서의 작성
- 10일 이내에 종중·문중묘지 설치허가 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공사 완료 확인 후 종중·문중묘지 설치허가증 교부

(2) 설치변경 허가

- 설치변경 허가신청 사유
 - 종중·문중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 변경 허가신청 방법 및 절차
 - 구비서류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 종중·문중묘지 설치변경 허가신청서의 작성
 - 10일 이내에 가족묘지 설치변경 허가 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변경사항의 확인 후 가족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교부

(3)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5

법인묘지 (법 제14조)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1) 법인묘지의 면적 등

- (1) 면적 : 10만㎡ 이상
- (2) 법인묘지 내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10㎡ 이하
 - 합장의 경우 점유면적 : 15㎡ 이하 - 비석, 상석 등 시설물 포함
- (3) 시설물 설치기준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이러한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2) 법인묘지의 설치기준

- (1) 법인묘지의 면적은 10만㎡ 이상으로 함
- (2) 법인묘지에는 폭 5m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 (3)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함
- (4) 법인묘지의 허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 (5) 그 외 사항은 묘지의 공통설치기준과 동일

3)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시행규칙 제6조)

(1) 설치허가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시장등에게 설치 허가 신청

○ 허가신청 방법 및 절차

- 구비서류

- ①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②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③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④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⑥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 법인묘지 설치신청서의 작성

- 30일 이내에 법인묘지 설치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공사 완료 확인 후 법인묘지 설치허가증 교부

(2) 설치변경 허가

○ 설치변경 허가신청 사유

-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 변경 허가신청 방법 및 절차

- 구비서류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 법인묘지 설치변경 허가신청서의 작성

- 30일 이내에 법인묘지 설치변경 허가 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변경 신청사항의 완료 확인 후 법인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교부

(3)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4) 묘지·분묘에 관한 상황의 기록·보관 의무(법 제14조)

-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은 매장을 한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개장유골) 매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매장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법인묘지에 대한 검사 및 보고(법 제37조)

-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묘지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증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계획을 법인묘지/의 설치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 출입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 매장 상황의 보고
 - 법인묘지의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연도별 매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도록 안내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법인묘지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법 제24조)

(1)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 신고내용

-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

○ 사용료 : 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등 총 비용을 조성된 묘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m당 사용료에 분양된 전용면적을 곱하여 계산

○ 관리비 : 묘지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과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으로 구분하여 차등 징수

- 잔디 조성비, 벌초 등 묘지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 사용료 및 관리비의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라 함은 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의 이용요금 및 잔디조성비, 벌초 등 묘지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항목별 시설 설치비용 등을 말함
- 그 항목별 산출근거는 원가계산 및 물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예컨대 공인된 기관에 의한 원가계산서 분석자료 등을 기초로 사용료 및 관리비의 항목별 비용을 산출하여 그 요금을 관할관청에 신고 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 사용료·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가격표의 게시·등록

-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장사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팸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가격표의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금품수수 및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사용료·관리비 및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수수 금지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격표에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거래명세서의 발급

-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해당 묘지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2018. 6. 20일부터 시행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2조)
 - 행정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법인묘지의 관리금 적립(법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재해에 대비하여 법인묘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

- 관리금 적립내용
 - 설치·관리인은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
 - 법인묘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함
 - 다만,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
-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 법인묘지 설치·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등에게 제출
 - 법인묘지 설치·관리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
 - 법인묘지 설치·관리인은 시장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
 -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같음

- 관리금의 용도
 -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등 재해 예방과 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법인묘지의 사망자정보 등록(법 제33조의3)

-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은 매장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9) 법인묘지 안의 묘지·봉안시설 설치 신고

- 해당 법인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 구비서류는 개인, 가족, 종중·문중이 묘지 또는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만 징수

6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처리절차

1) 민원처리기간 : 10일(가족, 종중·문중묘지), 30일(법인묘지)

2)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청서 작성	묘지, 설치자, 관리자, 신청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청인
↓		
접 수	신청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처리기관
↓		
서류검토	신청의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관
↓		
현장실사	설치 제한지역 및 설치기준 위반여부 확인	처리기관
↓		
관계기관 의견조회	묘지설치와 관계되는 기관(부서)의 의견조회(협의)	처리기관
↓		
결 재	설치허가 신청사항의 적합여부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신청사항 이행 통지	허가신청한 사항의 이행을 통지	처리기관
↓		
이행여부 확인	허가신청 및 이행통지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처리기관
↓		
결 재	묘지 설치(변경)허가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허가신청내역 및 관리대장·묘적부 작성(입력)	처리기관
↓		
허 가	신청인에게 허가증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제5장 | 개장

1 개장의 정의 (법 제2조)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것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된 화장한 유골의 이동은 개장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1) 개장의 방법

-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하여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종전의 분묘가 있던 구덩이(광중, 壙中)는 파문어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개장신고 (법 제8조)

- 1) 신고유형 : 사전신고제
- 2)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 3) 신고기관 : 시신·유골의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곳에 각각 신고

현존지와 개장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이 있는 장소가 용인시이면 용인시가 현존지가 되며, 이를 수원시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수원시가 개장지가 됨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이 있었던 지자체에 신고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묘지를 설치하려는 지자체에 신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해당 공설묘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에게 신고
- 시장등은 신고증명서 교부

4)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5) 처리기간 : 2일

6)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 고	사망자 및 개장신고자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	
접 수	행정전산망을 통한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개장신고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제적등본 등)	처리기관
	↓	
확 인	개장신고 사항 확인	처리기관
	↓	
검 토	개장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관
	↓	
결 재	개장신고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개장신고내역 및 관리대장·묘적부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 리	개장신고자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7)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징수절차: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 불복절차 및 방법
 - 과태료 처분 불복 시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 이의 제기 시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
 -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실시

8) 불법묘지(분묘) 설치자·연고자의 개장신고 수리

- 불법묘지(분묘) 설치자·연고자가 불법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거나 화장 및 봉안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법분묘의 정비 차원에서 개장신고를 허용
- 타인의 묘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동일
- 이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종전의 위법사항 해소를 위하여 종전의 법령 위반사항을 고발하거나 소급하여 묘지설치신고 위반 또는 매장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

3

개장허가(법 제27조)

- 1) 허가유형 : 사전허가제
- 2) 허가신청 의무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 3) 허가신청 대상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4) 허가신청기관 :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
- 5)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 6) 처리기간 : 3일
- 7)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하거나, 확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청서 작성	사망자 및 개장허가신청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청인
↓		
접 수	행정전산망을 통한 개장허가신청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개장신고로 접수하지 않도록 유의	처리기관
↓		
확 인	개장허가 신청사항 확인	처리기관
↓		
검 토	개장허가의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관
↓		
결 재	개장허가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개장허가내역 및 관리대장·묘적부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 리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4 유형별 개장절차

1) 묘지 소유자(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조)

○ 사전신고 후 개장

-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음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시행규칙 제14조)

(1)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
- 해당분묘의 개장과 관련한 사항(보상, 기한, 비용 등)에 대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
- 협의가 완료된 경우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기존 분묘의 사진과 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 후 개장

(2)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하므로 두 번째 공고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
- 개장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
 - 봉안기간은 10년
 -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장신고 후 개장을 하여야 함
 - 해당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함

3)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시행규칙 제18조)

(1)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
- 해당 분묘의 개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
- 개장
 - 협의가 완료된 경우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연고자 등이 개장신고 후 개장
 -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어야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소송 등으로 집행력을 확보한 후 토지 소유자 등이 개장신고 후 개장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의 개장
-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해당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된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 물권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인정받아야 함. 분묘기지권은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설치한 경우, ② 타인이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온 경우,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하여 별도 특약 없이 타인에게 토지만을 처분한 경우에 취득하게 되며, 이 경우 분묘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 분묘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존재하여야 함(95다 29086, 판결 등 다수 참조)
- 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소송을 통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단,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는 기지권을 제한(법 제27조제3항)하고 있음

(2)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고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공고 결과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 설치자·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이 처리

- 시·도 및 시·군·구는 토지 소유자 등이 분묘개장공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란(분묘개장공고 전용메뉴)을 만들어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자에게 공고 문안 작성 지도 및 공고방법 안내
-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하므로 두 번째 공고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

○ 개장허가 신청

-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의 기간 만료 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고문을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함

개장허가 신청서류 중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토지 소유자 또는 묘지 설치자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그 주변에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일간신문·홈페이지 공고 또는 인근주민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그 연고자를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하였으나, 그 연고자 등을 알지 못한 사유를 말함

- 개장절차의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또는 봉안기간 등 당초 허가신청서 내용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

○ 개장허가증의 교부

- 시장등은 허가신청 사항을 확인한 다음 개장허가증을 교부

-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10년간 봉안하였다가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하고, 그 처리한 결과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가 묘지 등의 설치 제한(제17조) 구역 위반 및 설치기준(제14조)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으로 시정 필요

4)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이나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한 묘지의 일제 조사 결과 무연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시행규칙 제19조)

- 개장 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공고

-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공고 결과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 설치자·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이 처리

(2) 무연분묘의 처리

-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의 기간 만료 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
- 개장 후 봉안의 기간은 10년이며,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함



제3편

화장과 화장시설

제1장 화장	61
제2장 공설화장시설	66
제3장 사설화장시설	68

제1장 | 화장

1 화장(시설)의 정의 (법 제2조·시행령 제2조)

1) 화장(火葬)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우는 장사방법

화장의 대상

- 시신, 죽은 태아, 개장유골에 한하며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의 사체는 해당하지 아니함

2) 화장시설(火葬施設)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부대시설 포함)을 말함

○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 관리사무실
- 주차장
-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2 화장의 시기 (법 제6조·시행령 제5조)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1) 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에 대하여 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2)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법 제7조·시행령 제6조)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

-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화장의 방법 (법 제9조·시행령 제7조)

1) 화장의 방법과 기준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함
- 입관하지 아니한 시신도 화장 가능
-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 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됨

2)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화장신고 (법 제8조제2항)

1) 신고유형 : 사전신고제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
※장사법상의 각종 신고는 '민원24시(www.minwon.go.kr)'에서 신고 가능

2)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3) 신고기관 :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

4) 구비서류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5) 처리기간 : 즉시

6)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 고	사망자 및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		
접 수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화장의 시기를 반드시 확인	처리기관
↓		
검 토	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관
↓		
결 재	신고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신고내역 및 관리대장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 리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7)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화장신고의 종류

○ 시신의 화장신고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병원에서 발부하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란 사망자 발생지 부근의 여러 읍·면·동에 의사가 거주하지 않거나 병원(보건소 포함) 등이 없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돈이 없어서 병원 등에 갈 수 없거나 의사 등을 부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음

읍·면·동장의 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

- 화장신고 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 취지는 범죄의 원인이 있는 시신을 화장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것임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아닌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구할 수 없는 사유와 사망원인·사유 등에 대한 경찰 또는 이웃사람의 상세한 증명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
- 읍·면·동장은 화장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를 신중히 검토하여 사망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보완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보건소등에 이러한 사망의 사실에 대한 확인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작성협조 요구 등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여부 등을 행할 수 있음

- 시장등은 신고증명서 교부

추락사고 후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검사지휘서 첨부 여부

- 변사자(자살, 범죄사 포함)의 화장시 변사체검시방해죄(형법 제163조)에 해당될 소지
- 변사자(변사 의심 시신)가 있을 때에는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를 하여야 하며 검시필증 발급 이후에만 시신 처리 가능(염습 등 일체의 행위 금지)
- 변사자(변사 의심 시신)의 화장신고 시 경찰에 신고(원칙적으로 유족 신고사항)하고, 경찰은 검찰에 지휘 요청(사진촬영, 진술확보 등 조치)

○ 죽은 태아, 개장유골의 화장신고

-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
- 시장등은 신고증명서 교부

제2장 | 공설 화장시설

1 공설 화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 (법 제13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 화장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 화장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음
- 공설 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거래명세서의 발급은 2018. 6. 20일부터 시행
- 공설 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을 한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개장유골) 화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장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2 공설 화장시설의 설치기준 (시행령 제11조 별표 1)

- ① 화장로 시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 ② 화장로 시설은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 포함)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음

- ③ 시신안치실은 시신의 보건 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④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3

공설화장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법 제33조의3)

- 공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함)은 화장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3장 | 사설화장시설

1 사설화장시설 (법 제15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을 말함

2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법 제15조, 법 제26조)

1) 설치신고 : 사전신고

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 신고절차
 - 설치신고서의 작성
 - 30일 이내에 화장시설 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문 통보
 - 설치신고사항 이행 확인 후 신고증명서 교부

2) 설치변경신고 : 사전신고

- 설치변경신고 사유
 - 사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변경사항, 화장로의 변경사항

○ 설치변경신고 방법 및 절차

- 구비서류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 설치변경신고서의 작성
- 30일 이내에 화장시설 설치변경 신고사항 이행통지문 통보
- 설치변경 신고사항 이행 확인 후 신고증명서 교부

3) 처리기간 : 30일

4)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고서 작성	화장시설, 설치자, 관리자,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		
접 수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처리기관
↓		
서류검토	신고의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관
↓		
현장실사	설치 제한지역 및 설치기준 위반여부 확인	처리기관
↓		
관계기관 의견조회	시설 설치와 관계되는 기관(부서)의 의견조회(협의)	처리기관
↓		
결 재	설치신고 사항의 적합여부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신고사항 이행 통지	설치신고한 사항의 이행을 통지	처리기관
↓		
이행여부 확인	설치신고 및 이행통지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처리기관
↓		
결 재	설치신고 수리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설치신고 내역 및 신고대장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 리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5)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사설 화장시설 폐지신고(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 사설 화장시설 폐지 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폐지사실을 연고자 등에게 알려야 함
- 폐지 시에는 사후처리, 요금 등의 정산 등에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폐지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고 등 사후조치를 미 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3

사설 화장시설 설치기준 (시행령 별표 3)

- ① 사설 화장시설에는 화장로 시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 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 ② 화장로 시설은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 포함)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음
- ③ 시신안치실은 시신의 보건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④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족 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⑤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 1차 위반시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2차 위반시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3차 위반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시 시설폐쇄(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 화장시설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화장 상황의 기록·보관 (법 제15조)

1) 화장 상황의 기록·보관 의무

사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을 한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개장유골) 화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장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2)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사설화장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 (법 제37조)

1) 검사 및 보고

-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설화장시설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사설화장시설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증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계획을 사설화장 시설의 설치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 출입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2) 화장 상황의 보고

사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연도별 화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도록 안내

3)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사설화장시설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법 제24조)

1)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 신고내용

- 사용료 : 사설화장시설의 이용 요금
- 관리비 : 사설화장시설의 관리 비용
- 사설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 사용료·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가격표의 게시·등록

- 사설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장사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팟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가격표의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금품수수 및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사용료·관리비 및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수수 금지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격표에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거래명세서의 발급

- 시설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해당 화장시설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2018. 6. 20일부터 시행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2조)
 - 행정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시설화장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법 제33조의3)

1) 사망자정보 등록

- 시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4편

봉안과 봉안시설

제1장 봉안	77
제2장 공설봉안시설	79
제3장 사설봉안시설	81

제1장 | 봉안

1 봉안(시설)의 정의 (법 제2조)

1) 봉안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장사방법

2) 봉안시설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다음의 시설

- ①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②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 ③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④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

제2장 | 공설봉안시설

1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 (법 제13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음
- 공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 거래명세서의 발급은 2018. 6. 20일부터 시행
- 공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봉안을 한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개장유골) 봉안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봉안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2 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 (시행령 제11조 별표 1)

1) 공설봉안묘(탑·담)

- 사원·묘지· 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m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공설봉안묘지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2) 공설봉안당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함
-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3

공설봉안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법 제33조의3)

- 공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함)은 봉안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3장 | 사설봉안시설

1 사설봉안시설의 정의 및 종류 (법 제15조)

1) 사설봉안시설의 정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을 말함

2) 사설봉안시설의 용도별 종류

- ① 봉안당 : 가족봉안당, 종중·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
- ② 봉안묘(탑·담)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종중·문중봉안묘, 종교단체봉안묘, 법인봉안묘

2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법 제15조, 법 제26조)

1) 설치신고

- 유형 : 사전신고제
- 의무자 :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
- 신고기관 : 관할 시장등
- 변경신고 사항
 -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 구비서류
 - 가족, 종·문중, 종교단체 봉안당
 - 종중·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봉안당 건물·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
- 종중·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 해당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법인봉안당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담)
 - 평면도
 -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가족봉안탑·가족봉안담만 해당)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담)
 - 봉안묘(탑·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및 구적도
 -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법인봉안묘(탑·담)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봉안묘(탑·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 운영 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봉안묘(탑·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사설봉안당

○ 처리기간 : 30일

구 분	내 용	주 체
신고서 작성	봉안당, 설치자, 관리자,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	
접 수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처리기관
	↓	
서류검토	신고의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관
	↓	
현장실사	설치 제한지역 및 설치기준 위반여부 확인	처리기관
	↓	
관계기관 의견조회	시설 설치와 관계되는 기관(부서)의 의견조회(협의)	처리기관
	↓	
결 재	설치신고 사항의 적합여부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신고사항 이행 통지	설치신고한 사항의 이행을 통지	처리기관
	↓	
이행여부 확인	설치신고 및 이행통지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처리기관
	↓	
결 재	설치신고 수리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설치신고 내역 및 신고대장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 리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3) 사설봉안묘(탑, 담)

○ 처리기간 : 10일(개인, 가족, 종중·문중), 30일(종교단체, 법인)

구 분	내 용	주 체
신고서 작성	봉안시설, 설치자, 관리자,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		
접 수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처리기관
↓		
서류검토	신고의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관
↓		
현장실사	설치 제한지역 및 설치기준 위반여부 확인	처리기관
↓		
관계기관 의견조회	시설 설치와 관계되는 기관(부서)의 의견조회(협의)	처리기관
↓		
결 재	설치신고 사항의 적합여부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신고사항 이행 통지	설치신고한 사항의 이행을 통지	처리기관
↓		
이행여부 확인	설치신고 및 이행통지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처리기관
↓		
결 재	설치신고 수리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설치신고 내역 및 신고대장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 리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4)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봉안시설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시설봉안시설 폐지신고(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 시설봉안시설 폐지 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폐지사실을 연고자 등에게 알려야 함
- 폐지 시 사후처리, 요금 등의 정산 등에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유골은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하고, 10년간 봉안한 후 집단으로 매장 또는 자연장
- 폐지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고 등 사후 조치를 미 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3

시설봉안시설 설치기준 (시행령 별표 3)

1) 시설봉안당

(1) 공통사항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함
-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2)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

-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 하여야 함
- 연면적은 100㎡ 이하여야 함
- 사원·묘지· 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3)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 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구 이하여야 함
※ 단, 최초신고 접수 시 5천구를 할 필요는 없으며, 신도수를 감안한 규모로 신고를 수리하여 부실 경영으로 인한 연고자 피해를 방지
-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4)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공공법인이 설치하는 경우 포함)

-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 사설봉안묘(탑, 담)

(1) 공통사항

-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 이하로 함
- 봉안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봉안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2)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 1개소로 제한하며, 개인봉안묘의 경우 10㎡ 이하, 가족봉안묘의 경우 30㎡ 이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3)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 봉안묘지의 면적 중 봉안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함

(4)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묘

-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
-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 이하여야 함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5)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기존의 묘지에 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함
-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3) 사설봉안탑(담)

- 봉안탑 및 봉안담의 설치기준은 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면적은 3㎡ 이하여야 함. 다만,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봉안시설 설치신고 시 유의사항

- 장사시설 설치·운영 주체로서의 종교단체의 의미
 - ※봉안시설 뿐만 아니라 자연장지·수목장림에도 동일하게 적용
 -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법인·단체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전통사찰
 -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종교단체는 물적 요소인 성당·교회·불당 등의 종교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목사·주지 등과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종교적 활동을 하여야 함
- 봉안당의 건축허가(신고) 관련
 - 장사법에는 “봉안당”을 건축물인 봉안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사설 봉안당은 설치 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봉안당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장사법에 따른 봉안당의 설치신고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는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사설봉안당의 설치신고 시 건축물이라 하여 설치신고 전 반드시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
- 봉안시설 설치 신고절차 간소화
 - 봉안묘(탑, 담)와 가족·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묘지”는 장사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설치예정지가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새로이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해당 묘역 내에 동 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묘지설치 허가절차와 봉안시설 설치신고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민원인에게 불편 초래

- 따라서 새로이 묘지를 설치하여 동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지역이 묘지 설치 제한지역이 아니고 묘지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묘지 허가 절차와 봉안시설 신고 절차를 동시에 처리

※ 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이에 저촉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5)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 1차 위반시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2차 위반시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3차 위반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시 시설폐쇄(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 봉안시설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봉안시설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4

봉안 상황의 기록·보관(법 제15조)

1) 봉안 상황의 기록·보관 의무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봉안을 한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개장유골) 봉안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봉안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2)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사설봉안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 (법 제37조)

1) 검사 및 보고

-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설봉안시설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증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계획을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 출입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2) 봉안 상황의 보고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연도별 봉안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도록 안내

3)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사설봉안시설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법 제24조)

1)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 신고내용
 -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
 - 사용료 및 관리비의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라 함은 봉안시설의 이용요금 및 관리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항목별 시설설치비용 등을 말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 사용료·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가격표의 게시·등록

○ 시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장사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팟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가격표의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금품수수 및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사용료·관리비 및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수수 금지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격표에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거래명세서의 발급

-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해당 봉안시설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 ※2018. 6. 20일부터 시행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2조)
 - 행정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사설봉안시설의 관리금 적립 (법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재해에 대비하여 봉안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

1) 관리금 적립대상

- ①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설봉안시설
- ②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500구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 ③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봉안시설

2) 관리금 적립내용

-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
- 사설봉안시설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함
- 다만,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

3)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관리금 적립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등에게 제출
-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
-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시장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
-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같음

4) 관리금의 용도

-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등 재해 예방과 개·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

5)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사설봉안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법 제33조의3)

1) 사망자정보 등록 대상

- 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2) 사망자정보 등록

-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봉안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3)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5편

자연장과 자연장지

제1장 자연장	97
제2장 공설자연장지	99
제3장 사설자연장지	102

제1장 | 자연장

1 자연장의 정의 (법 제2조)

1) 자연장

-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방법
- “매장”과 “자연장”의 구분

구 분	대 상	장 소	시설물
매 장	시신 또는 유골	묘 지	분 묘 (비석, 상석, 기타 석물)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	표지, 편의시설

- 수목을 이용하는 경우 “수목형태 자연장”, 화초를 이용하는 경우 “화초형태 자연장”, 잔디를 이용하는 경우 “잔디형태 자연장”으로 부를 수 있음
-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으로 “연못장”은 자연장이 아님

2) 자연장지

-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 공설자연장지 :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
- 사설자연장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조성·관리하는 자연장지

3) 수목장림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2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법 제10조·시행령 제8조)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됨

1) 자연장의 방법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정한 용기를 사용하여 함

2)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 용기의 재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굽지 않은 토기 등)

3)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장 | 공설자연장지

1 공설자연장지의 조성 및 관리 (법 제13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자연장지를 조성 및 관리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조성 및 관리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음
- 공설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 거래명세서의 발급은 2018. 6. 20일부터 시행
- 공설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자연장을 한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개장유골) 자연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연장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 공설자연장지(수목장림)의 고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함
 -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
 - 명칭, 행정구역·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전체 면적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규모, 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공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 (시행령 제11조 별표 1)

1) 공설자연장지 조성기준

- ①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
- ②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됨.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③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m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④ 자연장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함
- ⑤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cm²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2) 공설수목장림 조성기준

- ①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
- ②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됨.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③ 공설수목장림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관리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공설수목장림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음
- ④ 수목장림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함
- 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 표지의 면적은 200cm² 이하여야 함
- ⑥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

3

공설자연장지의 사망자정보 등록 (법 제33조의3)

- 공설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의 조성·관리인(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함)은 자연장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3장 | 사설자연장지

1 사설자연장지의 정의 및 종류 (법 제16조)

1) 사설자연장지의 정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조성·관리하는 자연장지

2) 사설자연장지의 종류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① 개인·가족자연장지(수목장림)

면적이 100㎡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 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 종중·문중자연장지(수목장림)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③ 종교단체자연장지(수목장림)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④ 법인자연장지(수목장림)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사설자연장지 조성 공통사항(시행령 별표 4, 5)

1) 자연장지 조성 가능지역

- ①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 ② 급경사지에 조성할 수 없음(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에 한함)

2)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 ①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cm²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표지 설치 사례〕



〔표지 설치 사례〕

- ② 수목장림의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 면적은 200cm² 이하로 하며,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
- ③ 공동표지
 - 공동표지는 부부,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불특정 다수인의 종류로 함
 - 표지의 면적은 1구당 200cm²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자연장된 구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설치할 수 있음
 - 표지는 자연장지 내 조경물, 기존의 벽면, 공동분향단 등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정할 수 있음
- ④ 표지는 수목·화초 등에 매달거나 땅에 세우는 등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수목장림의 경우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함
- ⑤ 표지에 기록되는 사항은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월일, 연고자 이름,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함
- ⑥ 표지를 대신하여 전자칩을 부착할 수 있으며, 전자칩에는 자연장지의 위치 및 고인의 인적사항, 업적 또는 회고록 등 고인과 관계된 정보 및 설치자(연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저장할 수 있음

자연장지의 지목 변경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7호에는 시신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장지 조성 시 지목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적법령에 따라 “묘지”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자연장지의 지목이 “묘지”라 하여 묘지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3)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 가능 지역(시행령 제22조)

구 분	조성불가지역	조성가능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4)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

구 분		개인	가족	중중·문중	종교단체	공공법인·재단법인
조성 지역	개소수	1개소에 한함				-
	면적	30㎡ 미만	100㎡ 미만	2,000㎡ 이하	40,000㎡ 이하	50,000㎡ 이상
	고려사항	지형·배수·토양			지형·배수·토양·경사도	
	조성장소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표지	규격	개별·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 200㎢ 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한 크기				
	설치방법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이용대상		구성원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	불특정 다수인
급경사지의 자연장 금지		종교단체 및 법인자연장지에는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되나,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급경사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참조하고,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사도 기준을 준용하여 재해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정규모 내에서 판단)				
편의시설		종교단체 및 법인자연장지에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 진입로(폭 5m 이상),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기존의 사원 경내, 기존 장사시설 안의 일정 구역,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한 지역에 자연 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따로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재해방지시설		법인자연장지에는 자연장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 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는 소방방재청의 “우수유출저감 시설의 종류, 구조설치 및 유지 관리기준”을 준용함)				

5) 사설수목장림의 조성기준

구 분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공공법인·재단법인
조성 지역	개소수	1개소에 한함			-
	면적	100㎡ 미만	2,000㎡ 이하	40,000㎡ 이하	50,000㎡ 이상
	고려사항	지형·배수·토양		지형·배수·토양·경사도	
	조성장소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표지	규격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 표지의 면적은 200㎢ 이하			
	설치방법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			
이용대상		구성원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	불특정 다수인
급경사지의 수목장 금지		종교단체 및 법인수목장림에는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되나,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편의시설		종교단체 및 법인수목장림에는 수목장림 구역 내 보행로, 안내표지판 설치, 다만, 관리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음(관리사무실, 편의시설 등의 부속시설도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임, 다만,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 가능)			
재해방지시설		법인수목장림에는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침사지 또는 물저장고는 소방방재청의 “우수유출저감 시설의 종류, 구조설치 및 유지 관리기준”을 준용함)			

3

사설자연장지의 조성(법 제16조, 법 제26조)

1)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11조)

(1) 조성(변경)신고 : 사후신고

- 신고의무자 :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 신고기한 :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
- 신고기관 : 관할 시장등

- 변경신고 사항
 -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구비서류
 - 평면도, 소재지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고서 작성	자연장지, 사망자, 조성자, 관리자,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 서류 첨부	신고인
↓		
접 수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처리기관
↓		
검 토	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타법(산지관리법 등)상의 신고의무 여부 확인)	처리기관
↓		
결 재	신고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신고내역 및 관리대장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 리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2)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 이전명령 등의 행정처분
- 자연장지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자연장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조성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의 확인(실제 자연장지를 설치한 자)
 -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우선순위에 따라 부과

2)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11조의2)

(1) 조성(변경)신고 : 사전신고

- 구비서류
 - 가족자연장지
 - 평면도
 -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 가족관계증명서
 -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변경신고 사항

-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종중·문중자연장지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에 관한 사항
- ※조성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는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처리기간 : 7일(가족자연장지), 10일(종중·문중자연장지)

○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고서 작성	자연장지, 사망자, 조성자, 관리자,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		
접 수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처리기관
↓		
검 토	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관
↓		
결 재	신고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신고내역 및 관리대장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 리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2)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 자연장지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자연장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조성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의 확인(실제 자연장지를 설치한 자)
 -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우선순위에 따라 부과

3) 종교단체·법인 자연장지 조성(변경) 허가(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2조)

(1) 조성(변경)허가 : 사전허가

- 구비서류
 - 종교단체자연장지
 -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법인자연장지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 중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변경허가 사항
 - 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법인등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에 관한 사항
- 처리기간 : 30일
-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청서 작성	자연장지, 조성자, 관리자, 신청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청인
↓		
접 수	허가신청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처리기관
↓		
서류검토	신청의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관
↓		
현장실사	조성 제한지역 및 조성기준 위반여부 확인	처리기관
↓		
관계기관 의견조회	자연장지 조성과 관계되는 기관(부서)의 의견조회(협의)	처리기관
↓		
결 재	조성허가 신청사항의 적합여부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신청사항 이행통지	허가 신청한 사항의 이행을 통지	처리기관
↓		
이행여부 확인	허가신청 및 이행통지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처리기관
↓		
결 재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허가신청내역 및 관리대장 작성(입력)	처리기관
↓		
허 가	신청인에게 허가증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2)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 (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자연장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4)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한 공공법인의 종류

-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 ②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 ③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 ⑤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 ⑥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관

5) 사설자연장지 폐지신고(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 법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자연장지 폐지 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폐지사실을 연고자 등에게 알려야 함
- 폐지 시에는 사후처리, 요금 등의 정산 등에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폐지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고 등 사후 조치를 미 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4

자연장 상황의 기록·보관 (법 제16조)

1) 자연장 상황의 기록·보관 의무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자연장을 한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개장유골) 자연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연장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2)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사설자연장지에 대한 검사 및 보고 (법 제37조)

1) 검사 및 보고

-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설자연장지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사설자연장지의 조성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중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계획을 사설자연장지의 조성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 출입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2) 자연장 상황의 보고

시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연도별 자연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도록 안내

3)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시설자연장지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법 제24조)

1)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 시설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 사용료·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가격표의 게시·등록

- 시설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장사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팟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가격표의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금품수수 및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사용료·관리비 및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수수 금지○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격표에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거래명세서의 발급

- 사설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자는 해당 자연장지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2018. 6. 20일부터 시행
-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2조)
 - 행정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사설자연장지의 관리금 적립 (법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재해에 대비하여 자연장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

1) 관리금 적립내용

-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
- 사설자연장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함
- 다만,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

2)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관리금 적립금액과 사용 내역을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
-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
-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관할 시장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
-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같음

3) 관리금의 용도

-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등 재해 예방과 개·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

4)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0조, 제41조)

-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사설자연장지의 사망자정보 등록 (법 제33조의3)

1) 사망자정보 등록 대상

-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2) 사망자정보 등록

-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자연장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3)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6편

장례식장

제1장 공설장례식장	121
제2장 사설장례식장	123

제1장 | 공설장례식장

1 장례식장의 정의 (법 제28조의2, 제29조)

- “장례식장”이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
- “공설장례식장”이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
- “사설장례식장”이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

2 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법 제28조의2)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하려는 자가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장례식장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이용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③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공설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26조의4 및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름(p.148~153 참조)
- 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
-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
※거래명세서의 발급은 2018. 6. 20일부터 시행

3

공설장례식장의 사망자정보 등록 (법 제33조의3)

-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함)은 장례의식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2장 | 사설장례식장

1 장례식장영업자의 정의 (법 제29조)

“장례식장영업자”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을 신고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

2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법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20조)

1) 영업신고

- 신고제 개정 취지
 - 장례식장은 연간 27만 여구의 시신을 보관하고 2,700만 여명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각종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므로, 국민의 보건위생적 안전성 도모 및 강요·강매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례식장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방안 마련 등 장사시설 관리체계 개선 권고(12.10월) → 장사법 개정·공포(15.1.28) → 시행(16.1.29)
- 신고의무자 : 공설장례식장 아닌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법 시행 당시(16.1.29. 시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례식장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봄. 다만, 2년 이내(18. 1. 29까지)에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 위생 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관 :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구청장(이하 “시장등”)
- 구비서류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처리기간 : 30일

2) 변경신고

- 신고의무자 :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한 자
- 신고기관 :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
- 변경신고 사항
 - 장례식장의 시설에 관한 사항
 - 장례식장영업자에 관한 사항
- 구비서류
 -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간 : 10일

3)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고서 작성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		
접 수	행정전산망을 통한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처리기관
↓		
확 인	장례식장 영업신고 사항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처리기관
↓		
검 토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사항 적합여부 검토 - 장례식장 영업신고 점검항목 확인	처리기관
↓		
결 재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내역 및 관리대장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 리	신고인에게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발급(출력) 교부	처리기관

4) 위반시 벌칙 등(법 제32조, 제39조, 제42조)

-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폐쇄명령 가능
-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례식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등 기준(법 제28조의2, 제29조, 시행령 제26조의4, 시행규칙 제20조의2)

1) 용어 정의

- 안치실 : 시신의 부패와 바이러스·세균 등 감염원의 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 보관용 냉동·냉장설비(이하 “안치 냉장고”)를 갖춘 시설
- 염습실 : 시신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혀서 입관하거나, 시신의 팔과 다리를 가지런히 하는 수시(收屍)를 행하는 시설
- 시신약품처리실 : 시신을 장기 보관하기 위해 방부용 약품으로 처리하는 시설
- 참관실 : 염습시 유족이 참관하는 시설
- 발인실 : 유족이 입관한 고인을 운구하여 장지로 떠날 때 종교의식 등을 하는 시설
- 빈소 : 유족이 사용하는 분향실과 접객실을 합한 시설
- 분향실 : 유족이 문상객의 문상을 받기 위하여 고인의 영정이나 유골 등을 모셔 놓은 시설
- 접객실 : 유족이 문상객에게 음식 등을 대접하기 위한 시설
- 유족휴식실 : 유족이 24시간 거주하며 휴식할 수 있는 시설

2) 장례식장 시설·설비의 구분

-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염습·운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
- 유족이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
- 장례 상담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편의시설
- 비상재해 및 안전관리 시설

3) 장례식장의 시설·설비·안전·위생 기준(시행규칙 제20조의2)

- 장례식장영업자는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구분	시설 구성		시설 관련 기준 등
	필수	선택	
시신처리 시설	안치실, 염습실	참관실, 발인실, 시신약품처리실 등	- 안치실 : 감염성 시신 보관용 안치냉장고 별도 2개 이상, 정전대비 발전기 - 감염 방지 조치 필수
문상·조문 시설	빈소(분향실, 접객실), 화장실	유족휴식실, 문상객 휴게실, 매장 등	- 감염병으로 사망한 고인의 유족을 위하여 예비용 빈소 별도 설치 - 접객실, 취사시설은 시신처리구역과 별도 분리
장례식장 관리 시설	사무실, 직원휴게실	상담실, 장례용품 전시실 등	- 상담실은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 - 직원휴게실에 샤워 설비 구비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방, 전기, 건축물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소방법, 전기관련 법령,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기준 준수

※감염병 예비용 빈소 등은 별도로 설치하되, 평상시에 사용 가능

- 다만, 공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위의 설비 외에 무연고 시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안치 냉장고 2개 이상과 무연고 시신 등의 장례를 위한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어야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례식장에는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함)이 아닌 장례식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장례식장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접수대 · 작업대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문상·조문 시설을 이용할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접객실에는 입식식탁 또는 높은 식탁을, 분향실에는 이동식 경사로 등 편의용품을 구비하도록 권장

〈장애인의 장례식장 이용 불편 사례〉

좌식 식탁	분향실 문턱(단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장례식장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 등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재난 안전법」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봄
 - 의무보험에 미 가입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무보험에 대한 세부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참고)

■ **보장위험 및 보상한도**

- (보장위험)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보상
 -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등)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
- (보상한도)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 재산상 손해 :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보험 가입 시기**

- 신규 시설 : 2017년 1월 8일부터
 -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기존 시설 : 2017년 7월 7일까지
- 가입만기 재가입 시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4) 위반시 벌칙 등(법 제32조, 제42조)

- 영업신고와 달리 시설·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한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4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5차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5차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장례식장의 폐쇄명령 가능
-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5조)

- '16.1.28.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례식장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18.1.29 이전까지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을 모두 갖추어 시장등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함
 - 시장등은 이를 장례식장에 정기적으로 안내 필요

(별지 1) 장례식장 영업신고 점검항목

장례식장 영업신고 점검항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의3 참고			점검자 : / 점검일 : . . .	
소재지		전화번호		
장례식장 명칭		영업자명		
예배	채광시설 ()	조명시설 ()	소음방지용 내·외장제 ()	방습설비 ()
	방충설비 ()	환기설비 ()	냉·난방설비 ()	청소도구 ()
	폐기물처리 ()	소독·살균설비 ()	진공청소기 유무 ()	집진용·집수용 분리 ()
시신보관시설	안치실 ()	안치냉장고 (대)	감염병용 안치냉장고 (1인용 대)	비상용기 ()
	※비상용 발전기는 외부 전기 공급 설비가 있을 경우 제외			
	염습실 ()	내부식성 염습대 (대)		별도의 상하수도 시설 구비 ()
	시신약품처리실 ()	혈액,약품 등 별도 처리 설비 ()		
	안치실·염습실·(시신약품처리실이 있을 경우 점검 시 포함)	바내수성 ()	바내화학적성 ()	방충망 등 외부 침입 방지 설비 ()
	폐기물 별도 보관 시설 ()	별환기 시설 ()	별도 폐수 처리 시설 ()	개인위생구 ()
선택	참관실 ()	발인실 ()	기타 시신약품처리실 ()	
문상시설	빈소 (개)	제단 ()	환기시설 ()	감염병용 예비빈소 (개)
	접객실 (개)	식탁 ()	시신보관시설과 분리 여부 ()	
	화장실 ()			
선택	유족휴식실 ()	문상객실 ()	매점 ()	기타
	급수대	취사시설 ()	취사시설과 시신보관시설 분리 여부 ()	
관리시설	사무실 ()	상담칸막이 ()	가격표 게시 ()	화장예약용 컴퓨터 ()
	직원휴게실 ()	샤워설비 ()		
선택	상담실 ()	장례용품 ()	기타	
비상재해시설	소방	소화용기구 ()	비상구 등 비상대피시설 ()	
	가스설비	도시가스 안전설비 ()		액화석유가스설비 ()
	※가스 설비는 있을 경우에만 점검			
	전기설비	전기 안전설비 ()		
건축물	건축물 이상 유무 ()			

210mm×297mm[백상지 80g/m²]

4

가격표의 게시·등록 (법 제29조제3항, 제29조제4항, 시행규칙 제20조의3)

1) 임대료 산정기준

오전(정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정오) 12시까지를 1일로, 염습실은 1회 사용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

2) 가격표의 게시·등록(시행규칙 별표 1의2)

-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판 또는 팻말 등을 사용하여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각종 행위별 수수료
 -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
 -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관할행정기관
- 가격표는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고,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함
-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팻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3)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수수 금지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됨

4) 장례용품의 사용강요·강매행위 금지

장례식장 내에서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면 안 됨

5) 위반시 벌칙 등(법 제32조, 제42조)

- 가격표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5차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 가격표에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거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5차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장례식장의 폐쇄명령 가능
- 가격표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연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가격표에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법 제29조제5항, 시행규칙 제20조의4)

1) 신고유형 : 사후신고제

- 장례식장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 함께 제출 가능함.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2) 신고의무자 : 장례식장영업자
- 3) 신고기관 :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
- 4) 구비서류 :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 5) 처리기간 : 즉시
- 6) 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체
신고서 작성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고인
↓		
접 수	행정전산망을 통한 폐업신고 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세무서로 송부	처리기관
↓		
확 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 사항 확인	처리기관
↓		
검 토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 사항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관
↓		
결 재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 관련 보고 및 결재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 내역 및 관리대장 작성(입력)	처리기관
↓		
수 리	신고인에게 장례식장영업 폐업 통보	처리기관

7) 위반시 벌칙(법 제42조)

-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법 제29조제6항, 시행규칙 제20조의5)

1) 교육 대상자

-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장사법 제29조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 종사자는 장례지도사 등 6개월 이상 근로한 상시종사자를 말함
 - 정규직, 비정규직, 위탁 및 파견계약 등을 통한 장례식장 종사자 포함
 - 단, 식당, 매점, 주차장 근무자, 미화원은 제외
-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2) 당해 연도 교육 면제자

- 해외체류·휴업 또는 폐업,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6개월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대학과 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사람
-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교육 이수시간

- 매년 5시간의 범위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4) 교육주관

-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반기별로 교육 주관
 - 다만, 관할 시장등이 독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른 시장등과 공동으로 교육을 주관할 수 있음(시·도 단위로 실시 가능)
- 시장등은 교육 대상자 소집 통보, 교육 일정·장소 선정, 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행정 처분 등을 담당함

- 시장등은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 이수필증을 받은 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5서식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 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 명시)
 - 교육 면제자 명단
 - 교육 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장등은 교육 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교육 장소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교육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도지사를 거쳐 다음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자체별 교육실시 계획
 - 관할지역 장례식장 영업자 등과 협의하여 교육 일정을 결정
 - 교육은 출장교육 또는 교육실시기관별 정기교육 활용 가능
 - 시·군·구는 원거리 등(사각지대)의 사유로, 필요시 8개 교육실시기관과 장사지원 센터(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요청하여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 장사지원센터는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교육을 주관하고, 사각지대의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출장교육을 병행수행

교육예정 일자	교육 실시기관명	교육예정 인원	교육 장소	교육과목	교육예정 시간	기타

○ 지자체별 교육실시 결과 보고

구분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이수자 수	교육 미 이수자 수	행정처분 건수	행정처분 예정건수	기타
합계							
영업자							
종사자	소계						
	시신처리자 (장례지도사 등)						
	기타						
영업 예정자							

5) 교육실시

- 7명 이상의 교수요원과 교육장을 확보한 장례관련 대학(장례지도학과 또는 평생교육원)을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수요원은 장례지도학과 교수, 상장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험이 풍부한 장례지도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교육실시기관
 - 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 ②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 ③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 ④ 서라벌대학교 장례서비스경영과
 - ⑤ 동부산대학교 장례행정복지과
 - ⑥ 창원문성대학 장례복지과
 - ⑦ 가톨릭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 ⑧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 ⑨ 장사지원센터(한국장례문화진흥원)
- 교육실시기관은 월 1회 이상 정기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필요시 시·군·구와 협의하여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교육수강료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1인당 3만원~5만원의 범위에서 수납하는 것을 권장함
 - 교육실시기관은 시행주기 및 대상자별 교육과목 등을 연초에 확정하여 해당 홈페이지 등에 등록하여야 함
- 시·군·구는 기 지정 8개 교육실시기관과 원거리 등(사각지대)의 사유로 필요 시 장사지원센터(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요청하여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장사지원센터는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교육을 주관하고, 사각지대의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출장교육을 병행 수행
 -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교육이수자는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 이수 인정

6) 교육과목

-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의 강요·강매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보건위생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6개 과목으로 구성
 - 장사정책, 유족심리, 장례식장 위생 및 시신위생 관리, 직업윤리, 장례예절, 장례식장 경영
- 시장등은 교육실시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대상자별로 교육과목을 변경할 수 있음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영업자*·영업 예정자 (4시간)		장사정책, 직업윤리, 장례예절, 장례식장 경영	장례식장 위생 및 시신위생 관리, 유족심리
종사자	장례지도사** (4시간)	장사정책, 직업윤리, 장례예절, 장례식장 경영	-
	기타* (3시간)	장사정책, 직업윤리, 장례예절	-

* 영업자는 장사법 제29조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임

** 장례지도사가 아니더라도 시신을 다루는 장례식장 종사자도 해당

*** 행정직 등 기타 종사자

7) 위반시 벌칙 등(법 제32조, 제42조)

- (장례식장영업자)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5차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장례식장의 폐쇄명령 가능
- (교육 미 이수자)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교육 대상자별 교육 실시계획

(1)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 교육실시기관에서 개설한 정기교육(월 1회)을 이수하거나, 시장등이 관할 장례식장 영업자 등이 원하는 일시·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장례식장은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대상자의 직원 이름, 입사연월일, 업무내용 등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행정지원시스템 : 교육대상 관리, 교육과정 관리, 교육결과 관리 및 교육이수증 발급, 교육실시기관 수료자 현황 조회

- '17년도 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 시도에서 '18년도 상반기에 교육이수 통보를 하고, 미 이수시 '18년 하반기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시

(2)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교육실시기관에서 개설한 정기교육(월 1회)을 이수하거나, 시장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3) 공설장사시설 종사자(선택)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장사지원센터가 교육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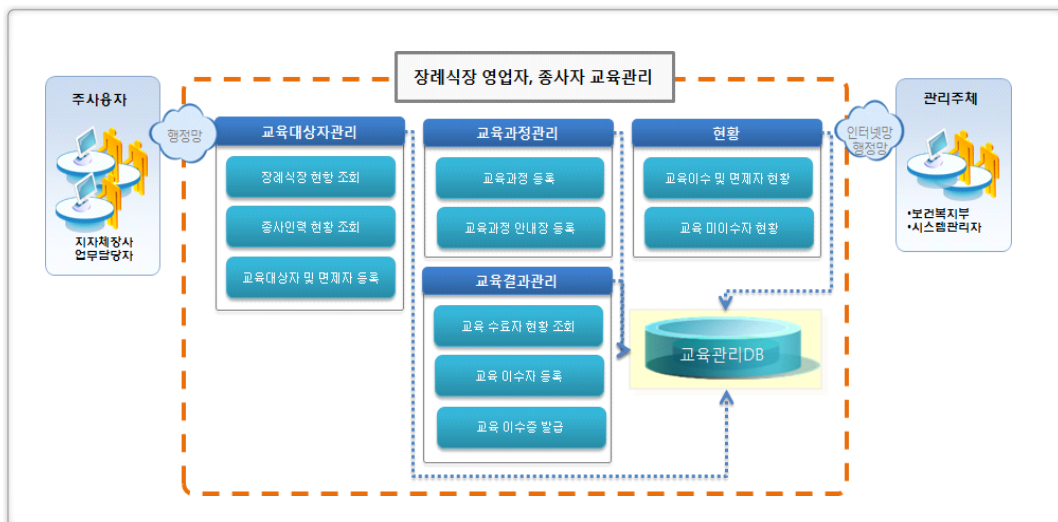
(4)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교육이수자는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 이수 인정
※재해·재난 사망자 장례지원(p.165~168) 참조

9) 교육관리

- 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교육결과 관리, 교육실시기관 교육 수료자 현황 조회, 장례식장 직원 등록 및 관리 기능
※장사행정지원시스템의 장례식장 교육관리 메뉴 등록 방법(p.233~237) 참조

〈교육관리 기능 구성도〉



[별지 1] 교육 이수필증(교육기관 발급용)

장례식장 종사자·영업자 교육 이수필증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근 무 처 명			
교 육 유 형	<input type="checkbox"/> 영업자 교육	종사자 교육 (<input type="checkbox"/> 장례지도사, <input type="checkbox"/> 행정직)	<input type="checkbox"/> 장례식장영업 준비자
교 육 이 수 시 간	시간	시간	시간
<p>위 상기인은 00.00.00일에 실시한 장례식장 종사자·영업자 교육에 참가하여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0000년 00월 00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원장 (인)</p> <p>※교육이수 내용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교육관리에 등록하였습니다.</p>			

(별지 2) 교육장 안내 양식

〈제00회 장례식장 <u>영업자·종사자</u> 교육〉	
○ 일 시 :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등록 완료 요망
○ 교육장소 :	
○ 지참품 :	신분증 등
○ 약도(교육장 위치)	

[별지 3] 수강료 영수증

수강료 영수증

연 번		금액 (₩	원)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교육과목	
<p>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교육원장 (인)</p>			

(절취선)

수강료 영수증

연 번		금액 (₩	원)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교육과목	
<p>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교육원장 (인)</p>			

[별지 4] 교육 참석자 확인대장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 참석자

번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관할시도	근무처명	담당부서	근무 연한	장례지도사 유무 (O, X)	서명
1									
2									
3									
4									
5									
6									
7									
8									
9									
10									

7 장례식장의 거래명세서 발급 (법 제29조제7항)

1) 거래명세서의 발급

-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2018. 6. 20일부터 시행

2) 위반시 벌칙 등(법 제32조, 제42조)

- 시정명령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재해·재난 사망자 장례지원 (법 제33조의 4)

1) 목적

-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구축·운영으로 효율적 지원체계 확보
- 국가적 재난·감염사태 발생 시 사망자의 존엄(품위)을 유지한 장례지원

2)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지정 운영

- 운영 방향

기능·역할	자격요건	지정 절차	교육	사후관리
① 시신 현장수습 ② 장례용품 지원 ③ 감염병 사망자 시신 밀봉·안치 ④ 빈소 우선 제공 ⑤ 운구 및 화장·봉안(무연고)	① 경험·봉사의식 ② 빈소·안치실 ③ 장례지도사 ④ 장례지원 물품 ⑤ 협조체계 역량	보건복지부 지정 ↑ 시·군·구 추천 (한국장례협회 협조)	장사법령 재해구호법 재난안전법 감염병관리법 (장사지원센터)	관계기관 협력·지원

- 장례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자연·사회·해외),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장례
 - 사망 종류 : 감염병 사망, 화재 사망, 수해 사망, 사고 사망
-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 시·군·구별로 1개소 내외로 지정, 강제사항 아님(2년간, 재지정 가능)
 - ※장사지원센터가 지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를 명시하여 지정패를 제작·배포
- 운영권자 : 지방자치단체장
- 지정장례식장의 주요역할
 - ① 사망자 시신 현장수습
 - ② 관, 수세포 등 장례용품 제공
 - ③ 감염병 사망자 시신 밀봉·안치
 - ④ 빈소 우선 제공
 - ⑤ 연고지로 시신 운구 또는 무연고자 화장·봉안
- 자격요건
 - ① 재해·재난 장례지원 경험(봉사의식)
 - ② 빈소 4개, 안치 냉장고 6개 이상(농어촌은 빈소 3개, 안치 냉장고 5개 이상)
 - ③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거나 감염성 시신을 밀봉할 수 있는 장례지도사 2명 이상
(농어촌은 1명 이상)
 - ④ 장례지원에 필요한 물품(시신 이동용 들것, 시신 밀봉용품 등)
 - ⑤ 지역 협조체계 역량
- 지정 운영 절차
 - 시·군·구는 한국장례협회의 협조를 받아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지정기준에 적합한 장례식장을 지역별로 1개소 이상 보건복지부로 추천
 - 보건복지부는 유관기관 7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구가 추천한 장례식장을 심사하여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결정
 - 보건복지부와 시·군·구는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지정 운영
 - ※지정기간은 2년으로 추진실적 등 평가 후 재지정, 지정기간 중 비협조·법을 위반(처분) 등 발생 시 지정취소 및 지정패 회수
 - ※보건복지부는 관리총괄, 개인보호장구 제공 등 2차 감염방지 조치 등
 - ※시·군·구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장례식장 추천(신청), 지정장례식장 지원

○ 교육 : 장사지원센터(한국장례문화진흥원)

- 교육 이수 시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대상 :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행정·관리직 포함)
 - ※식당, 매점, 미화원, 주차장 근무자 등은 제외
- 기간 및 장소 : 3월~12월까지 지자체 강당 등에서 22회(예정)
 - ※교육 효율 및 영업차질 등을 고려, 11개 권역(서울, 경기,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으로 나누어 2회씩 집합교육
- 교육시간 및 내용 : 4시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장례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 ※재난 사망자에 대한 신속한 장례지원을 위해 4과목(장사법규·행정, 지정장례식장 네트워크 구축체계 및 유형별 장례지원 절차, 시신위생 및 시설안전관리, 재난심리상담 및 장례예절(직업윤리 포함))으로 구성
- 교육관리
 - ※대상 장례식장별 담당자가 e하늘에 입력 → 시·군·구별 담당자 확인
 - ※장사지원센터는 교육결과 e하늘 입력 → 시·군·구 담당자가 확인 후 교육이수증 출력



3) 재해·재난 장례지원반 운영

○ 목적

- 국가적 재난·감염사태 발생 시 사망자의 존엄(품위)을 유지한 장례지원
 - ※유족에 대해 장례절차 및 용품, 화장예약 및 시설이용 지원 등으로 유족의 각종 부담 경감
 -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과 연계한 효율적 장례지원 도모, 지원역량 확보

○ 운영기관 : 장사지원센터

- ※출동대기조 편성·운영(2인 1조, 24시간, 장례지도사 포함), 유형별 장례지원 매뉴얼 제작·운영

○ 역할 및 기능

- 현장 출동, 초기대응 및 신원확인 지원 등
 - ※시신 수습·운구, 염습 등에 존엄을 확보한 신원확인 및 장례지원(장례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계획 수립 및 상황보고·전파(사망자 발생·처리 현황, 등 장사시설 확보(연계))
 - ※장례지원 물품 확보, 현장 추모식 및 입관, 운구 등 지원, 장례관련 각종 기관·단체 및 용품 공급업체 등에 대한 연락체계 유지, 장례관련 자원봉사자 관리(배치 및 역할 부여, 현황 및 실적관리 등)
- 화장예약 및 각종 장사시설 이용 지원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화장예약(관리), 현장 인근 장사시설에 대한 이용 가능 여부 파악을 위한 이용현황 모니터링, 화장시설 등에 대한 야간가동 및 이용 협조(협약), 장사(장사시설 이용) 절차, 시설·용품·가격 등 장사시설 이용전반 관련 정보 지원
- 장례식장 지정 및 교육 등에 대한 지원
 - ※지정패 제작·배포, 교육교재 제작·배포(재난 관련 법률, 대처방법, 지원체계) 등
 - ※지정장례식장에 대한 안치시설·운구차량 등 지원 요청, 투입된 시설(장비)·인력현황 관리(모니터링) 및 보고(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로 개인정보장구 제공 요청 등

9 장례식장에 대한 검사 및 보고 (법 제37조)

1) 검사 및 보고

-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중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계획을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 출입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2)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 보고

장례식장영업자는 연도별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도록 안내

3) 위반시 벌칙(법 제42조)

-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서식〉	공정위 송부 공문 서식
<p>○○○○ 장례식장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또는 제35조(과징금처분) 및 제42조(과태료)에 따른 조치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p> <p>해당 조치 전에 귀 위원회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귀 위원회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일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을 것으로 간주할 것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단, 조사 중인 사인이라면 조사 중인 상황과 사후조치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10

사설장례식장의 사망자정보 등록 (법 제33조의3)

1) 사망자정보 등록

-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의식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7편

장사시설 공동관리사항

제1장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151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제한지역	152
제3장 행정처분 등	155

제1장 |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1 | 목적부 및 매장·화장·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 작성·보관

- ①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증명서를 교부한 때
- ②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한 때
 -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이 작성하여 보관
- ③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장허가증을 발급한 때
-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설묘지의 분묘를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한 때
- 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연분묘를 처리한 때

2 |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 신고(허가)관리대장 작성·보관

- ①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교부한 때
- ②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증을 교부한 때
- ③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증명서를 교부한 때
- ④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교부한 때
- ⑤ 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교부한 때
- ⑥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 허가증을 교부한 때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제한지역

1

장사시설 설치·조성 제한지역 (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 ②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 시설 또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조성하는 10㎡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 미만의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 ③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3만㎡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함
 -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
 -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같은 조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조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 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⑥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 ⑦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 ⑧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⑨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⑩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다만,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구역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함
-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만㎡,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 미만일 것
 -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 ※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 ⑪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음
- ⑫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 ⑬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방지(砂防地)
- 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⑮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치 금지 장사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환경법 제9조제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함)를 설치·조성할 수 없음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에 자연장지를 포함하는 것은 2018. 3. 20일부터 시행

2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① 수목장림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하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 계획에 따를 것
- 수목장림 구역에는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 필수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② 공동묘지, 화장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안에 봉안시설 및 장례식장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 가능
 - 기존의 공동묘지 안에 있는 기존의 분묘만을 봉안시설로 전환·설치하는 경우
 - 봉안시설을 사찰의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
 -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개발제한구역 밖에 있던 분묘를 포함)하는 부지 안에서 봉안시설 또는 수목장림으로 전환·설치하는 경우
 - 수목장림을 사찰의 경내지에 설치하는 경우

③ ②항에 따라 봉안시설이나 수목장림으로 전환·설치하는 경우 정비된 분묘가 있던 기존의 잔여부지는 임야·녹지 등 자연친화적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 위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위 가능(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관련)

제3장 | 행정처분 등

1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1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은 사설장사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 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1) 행정처분 대상

- (1)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8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 (2) 법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 (3) 법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 (6)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 (7)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8)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행정처분대장의 작성·비치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함

3) 청문

법 제3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2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2조)

1) 행정처분 대상

(1) 시정명령

- 대상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한 경우
-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 ④ 법 제29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단, 게시한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받은 경우에 해당 위반사실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
- ⑤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⑥ 법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기간: 10일 이내

(2) 영업정지

- 대상: 장례식장영업자가 법 제32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간: 6개월 이내

(3) 장례식장의 폐쇄 - 대상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2) 행정처분대장의 작성·비치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함

3) 청문

법 제32조에 따른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3**시설모지 설치자 등 및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시행규칙 별표 5)****1) 일반기준**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음
- (2)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함.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 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함
- (3) 시장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음
 -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일수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음
 -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이전명령·개수명령으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로,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로 경감할 수 있음

2) 개별기준

(1) 사설묘지 설치자 등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가족 묘지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31조 제1호	이전명령	시설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2)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가족 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31조 제1호	개수명령 (설치·관리인 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3)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사설 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 제1호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	법 제31조 제1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5) 법 제18조에 따른 묘지제한 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 제1호	개수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사설 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 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나) 사설 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 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31조 제2호	시설폐쇄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설치·관리인 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봉안 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 시설폐쇄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봉안 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없는 자가 유골 500구 이상의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한 때	법 제31조 제2호	개수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8)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설 화장 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 제2호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9)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 화장 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	법 제31조 제2호	이전명령	시설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10)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개인·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종·문중 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나) 개인·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종·문중 자연장지의 조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31조 제3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11)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나)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법 제31조 제3호	이전명령 개수명령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12)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 제3호	개수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13)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 자연장지 조성 제한 지역에 조성한 때	법 제31조 제3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1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1조 제4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법 제31조 제4호의2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6)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 제4호의3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7)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법 제31조 제4호의3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8)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장례식장영업자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5차위반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의2 및 제2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29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3호 및 제2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4호 및 제2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법 제32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시설폐쇄	-	-	-	-

※ 행정처분 중 시설폐쇄는 해당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영업장 출입 방해 시설물 설치, 현판 설치 등)하는 것으로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규정임

4

과징금 처분 (법 제35조)

시장등은 법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1)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금액(시행령 별표 6)

(1) 일반기준

- ①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함
- ②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를 같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업무정지·영업정지처분 전년도에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창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함
- ③ 법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조사 중이거나 과징금 부과예정인 경우 포함)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과징금으로 같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포함)을 부과할 수 없음

(2) 과징금 기준

등 급	연 간 매 출 액	1일 과징금(단위 : 원)
1	4천만원 이하	9,300
2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25,600
3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9,500
4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50,000
5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55,000
6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0,000
7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65,000
8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74,000
9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90,000
10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	107,000
11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	123,000
12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40,000
13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6,000
14	10억원 초과	164,000

※비고 : 시장등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이 경우 늘리는 경우의 과징금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음

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시행령 제39조)

- ① 시장등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중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
- ②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함.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함
- ③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함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알려야 함
-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음

3)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시장등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함

4) 과징금의 징수절차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함.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5

과태료 부과 (법 제42조, 시행령 별표 7)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포함)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과태료 부과대상자

-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자
-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
- (7)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 (8)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9)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 (10)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자
- (11)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 (12)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단, 「공정거래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은 경우 제외)
- (13)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 (14)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5)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7)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 (18)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연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자
- (19) 법 제29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 (20) 법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단, 「공정거래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은 경우 제외)
- (21)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2)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23) 법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 (24)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 시스템에 등록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 (25)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함.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함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경 비율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가능함.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외함

장사시설	감경 비율
1.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종교단체·재단법인의 봉안시설, 종교단체·공공법인·재단법인의 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1,400건 이상인 장례식장	100분의 10
2. 종중·문중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800건 이상 1,400건 미만인 장례식장	100분의 20
3. 가족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200건 이상 800건 미만인 장례식장	100분의 30
4. 개인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200건 미만인 장례식장	100분의 40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2호	150	200	250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3호			
1)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250	300
2)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개인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0	200	250
라.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기록·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2	150	200	250
마.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4호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250	300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0	200	250
바. 시공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5호	200	250	300
사.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5호의2	150	200	250
아.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6호			
1) 법 제1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250	300

위반행위	근거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 법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0	200	250
자.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5호의2	150	200	250
차. 사설묘지 설치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7호	200	250	300
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8호	150	200	250
타.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8호의2	150	200	250
파.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공정거래법」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	법 제42조제1항제8호의3	200	250	300
하.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9호	200	250	300
거.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한 경우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0호	200	250	300
너.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0호의2	150	200	250
더. 장례식장영업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1호	150	200	250
러.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	150	200	250
머. 법 제29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2	150	200	250

위반행위	근거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공정거래법」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3	200	250	300
서.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4	150	200	250
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5	100	200	300
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6	150	200	250
처.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3호	200	250	300

5)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① 이의제기 기간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②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함

③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의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6

벌 칙(법 제39조, 제40조)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 ②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 조성한 자
-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자
- ④ 법 제30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의 정비· 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①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 ② 법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시설 외의 시설· 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 ③ 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 화장· 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 화장· 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 ⑤ 법 제18조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 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 ⑥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 ⑦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을 한 자
- ⑧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
- ⑨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 ⑩ 법 제31조에 따른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 개수명령· 시설의 폐쇄· 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⑪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양벌규정 (법 제41조)

-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7

이행강제금 (법 제43조)

시장등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1)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 ① 법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 조성한 자
- ②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 ③ 법 제31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연고자

2) 부과 절차

- 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통보

- ②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 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함
- ③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④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 ① 이의제기 기간
 - 이행강제금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③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방법 안내

-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



제8편

장사정보시스템

제1장 장사정보시스템 175

제1장 장사정보시스템

1 장사정보시스템(e하늘)

〔 장사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법 제33조의2)에 따른 주요업무 〕

1.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2.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근거 마련
3. 장례 및 장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각종 연금·복지 급여의 지급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자정보 관리

1) 장사정보시스템의 목적

(1) 화장예약 창구 단일화

- 화장시설의 효율적 활용, 화장 예약편의 제공 및 투명성 확보
 - 단일화된 화장예약 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화장할 수 있는 화장예약 서비스 제공

(2) 장사문화 및 시설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 장사법령 및 제도, 장사문화의 소개와 장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의 제공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장사시설 현황 및 사용료, 예약현황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가격대비 서비스 및 품질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

(3) 장사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장사행정처리

- 묘지,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 장사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처리 가능
 - 전자적인 장사민원처리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및 대민서비스 편의 제공

(4) 사망자정보 수집 및 제공을 통한 국고누수 방지

- 사망자정보의 효과적 수집 및 정보연계로 복지급여업무의 내실화

2)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성도

시스템	주요기능
e하늘 포털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인 실명인증 기반의 인터넷 화장예약 서비스 제공 • 장사문화 전반(장사시설 정보, 장례용품 및 가격 정보, 장례절차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장례식장 및 장사시설 관리·운영부 등록 관리 • 장사시설 정보(시설정보·용품가격·이용료 정보 등) 및 사망자정보 등록 기능 제공
화장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화장시설의 화장예약 및 화장접수 관리 (화장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전담하고,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설은 e하늘과 예약 및 화장자료 연계 처리)
시설운영 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설장사시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운영관리
장사행정지원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설치 인·허가 처리 및 매·개·화장 신고 관리 •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 관리(관리·운영부, 관리금 등) •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관리 기능 제공
사망자정보 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시설 등을 통해 취득한 사망자정보 관리 ※장사시설의 사망자정보 제공으로 복지급여 업무 활용(현재 10개 기관)
민원지원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 민원업무 사례 등록 관리 • 민원사례 검색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사망자의 사망 시점부터 장례식장 이용, 화장(봉안, 자연장) 및 매장 등 전 단계에 걸쳐 사망자정보를 수집 및 활용

- 사망자정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자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정한 기관에만 제공(「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는 별도로 신고해야 함)

2 e하늘 포털시스템

1) 시스템 구성



2) 시스템 구축 목적과 기대효과

- 실명인증 기반의 인터넷 예약창구 단일화로 실수요자에 대한 예약·이용 편의 제공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사시설 및 장례용품 가격 정보 제공
-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사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3) e하늘 포털시스템 화면

○ <http://www.ehaneul.go.kr>

○ <http://m.ehaneul.go.kr>

구분	전체	예약	대기	가능	불가	더보기
일반시신	50	48	0	0	2	더보기
개장유골	4	3	0	1	0	더보기
죽은태아	4	3	0	1	0	더보기

4) 인터넷 화장예약 절차

○ 신청자(유족 등) 신청/변경/취소 원칙

- 신청인이 화장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신청/변경/취소 진행
- 화장예약 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 신청자가 책임(예약의 진정성 확보)
 - ※ 화장시설 및 시간별 중복 예약 불가능하며, 매장·화장·봉안·자연장 등의 처리사실이 확인된 자는 예약 불가
 - ※ 화장예약 시 사전 선점 방지 및 실수요자 위주의 화장예약을 위하여 사망진단서 발급 후 예약 권장

〈인터넷 화장예약 신청 절차(일반)〉

신청	- 예약대상 및 신청 구분 선택 - 개인정보보호정책 동의	유족 등
↓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인의 정보 입력 - 신청인의 본인인증(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 신청인이 본인인증(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도구 미소지 시 대리인을 신청인으로 하여 사망자와의 관계(비혈연 동거인, 국가, 지자체, 법인, 문중, 기타 등) 입력	유족 등
사망자정보 입력	- 사망진단 내용을 기준으로 사망자정보 입력	유족 등
연고자 정보 입력	- 연고자의 정보 입력 - 연고자의 본인인증(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유족 등
화장예약	- 화장구분 선택(일반시신, 개장유골, 죽은 태아) - 화장시설 선택(시도, 화장시설) ※ 사망자정보를 기반으로 화장예약 신청 - 예약 가능한 일자와 시간대 선택 - 필요시 변경/취소	유족 등
예약완료	- 예약이 완료되면 신청인은 예약번호와 예약안내 SMS 수신	e하늘

〈인터넷 화장예약 변경(취소) 처리 절차〉

예약정보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정보 확인 • 예약번호, 신청인의 본인인증(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로 예약 정보 확인 ※ 예약번호 분실 시 '화장예약 확인' 메뉴에서 예약번호를 확인하거나 해당 화장시설로 문의 	유족 등
화장예약 변경/취소	<p>〈예약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 변경은 화장시설 및 예약일시만 선택 가능 ※ 사망자, 신청자 정보 변경 불가능 <p>〈예약 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내용 확인 후 취소 가능 	e하늘
화장예약 변경/취소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예약 변경/취소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결과 SMS 수신 	유족 등

- 사망자, 연고자 실명인증 확인 방식 적용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이용 사망자, 연고자 실명 확인
 - 화장예약 신청인, 연고자 본인인증 확인
 - ※ 본인인증 방식 :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 '취소 후 대기'는 최소 1시간(전국 화장시설 공통)이고, 화장예약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선정
 - ※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 또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예약 변경 및 선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및 랜덤수치 수시 조절
- 사망자의 실명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실명인증 불가자의 화장예약 절차'에 따라 화장 예약 진행
 - 실명인증 신청 대상 : 출생신고 전 사망자(주민등록번호 미 존재), 신원 불명의 행려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거주지 불명), 신원확인 불가 외국인
 - ※ 외국인 등록번호/거소번호가 있으나 실명인증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 장사지원센터(1577-4129)로 문의 후 실명인증 신청 절차를 거쳐 화장예약 진행

〈실명인증 불가자의 화장예약 절차〉

신청	- 실명인증 신청서 및 사망사실 증빙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사망증명서 등) 제출(팩스 송부) - 외국인의 경우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또는 대사관의 확인서(자국민확인서, 화장동의서 등) 요구	유족 등
사실 확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기재 내용과 사망사실, 화장의사 여부 대조 확인 - 신청자 및 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사망사실 및 증빙서류 작성여부, 발 급여부 확인(유선통화, 녹취)	장사지원센터
사망자정보 등록여부 판단	- 사망자 및 신청자 관련 정보 확인 - 증빙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조치	장사지원센터
사망자정보 승인처리	- 사망자 및 신청자 관련 정보 승인처리	장사지원센터
화장예약 권한 부여	- 신청자에게 화장예약이 가능한 대체번호를 SMS 전송	장사지원센터
화장예약	- 사망자정보를 기반으로 화장예약 신청(필요시 변경/취소)	유족 등

□ 참고사항

1) 죽은 태아(사산아)의 화장예약 절차

- 죽은 태아(사산아)는 임신 4개월 이상의 사태아를 의미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화장절차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원칙
※임신 4개월 미만의 사태아는 적출물로 분류되어 소각 처리
- 죽은 태아(사산아)는 시신(일반)과 같이 1구 단위로 예약
- 예약 신청인은 부모가 원칙이나, 출산 병원장의 책임 하에 그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업체 담당자로 예약 가능
- 사망자명은 산모명+“사산”으로 입력

2) 개장유골의 화장예약 처리 절차

- 유족이나 개장대행업체 담당자를 신청인으로 하여 예약 가능
- 일반 시신과 분리 관리
- 별도의 차수로 가급적 시신(일반)과 분리하여 관리
- 화장시간을 가급적 오후 시간으로 배정

3) 출생신고 이전 사망자(신생아)의 화장예약 절차

- 출생신고 이전 사망한 신생아는 실명인증이 되지 않으므로 실명인증 불가자 화장 예약 절차에 따라 예약
- 화장예약 신청 항목의 사망자명은 산모명+“아기”로 입력
※쌍생아의 경우는 산모명+“아기일”, 산모명+“아기이”로 입력

4) 무연고 사망자 등의 화장예약 절차

- 신원불상 무연고 사망자
 - 담당자(지자체 공무원 포함)가 실명인증 신청 후 화장예약
-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 장례식장에서 사망자정보 등록 후 기관의 담당자가 화장예약

5) 외국인의 화장예약 처리 절차

-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실명확인 가능 외국인
 - 실명확인이 가능한 외국인은 인터넷 화장예약 절차에 따라 예약
-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실명확인 불가 외국인
 - 체류의 적법성과 상관없이 유가족의 장례방침과 사망자 국적 영사의 확인 등에 따라 국내법에 따라 처리
 - 실명인증 불가자 화장예약 절차에 따라 실명인증 신청 후 인터넷 화장예약 가능
※신청인은 실명인증과 본인인증(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이 가능한 국내 연고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 신원불상 또는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 외국인 사망자가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사망자 국적 영사의 사망확인을 받아 실명인증 불가자 화장 예약 절차에 따라 예약
 -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 국적의 영사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무연고 시신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6) 외국에서 사망한 한국인의 화장예약 처리 절차

- 외국에서 사망하여 국내로 운구된 한국인의 경우 인터넷 화장예약 절차에 따라 예약

7) 기 사망신고 된 사망자의 화장예약 처리 절차

- 기 사망신고 된 사망자의 경우 실명인증이 되지 않으므로 실명인증 불가자 화장 예약 절차에 따라 예약

8) 재난이나 대형사고 사망자의 화장예약 처리 절차

- 대상
 - 사고 또는 재난·재해로 인한 사망자로 화장시설 대표가 인정하는 경우
 - 비영리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장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당 대책위원회 담당자가 예약을 신청하는 경우
 - 그 외 화장시설 대표가 그에 준하는 사망자로 인정 하는 경우
- 사망 증명서류 제출 및 사망자정보의 확인 없이 처리 가능
 - 유족의 편의 제공 및 원활한 수습을 위하여 사망증명서류 제출 및 사망자정보 확인 없이 화장예약
 - 이 경우, 화장예약 접수 시 특이사항에 “재난·재해” 또는 “사고명”을 기재하여 관리 될 수 있도록 함
※단, 유족이 개별적으로 예약하거나 화장시설을 통하여 예약한 경우는 제외

5) 장사시설 가격 정보 등록 및 게시방법

- 장사시설 요금, 장례용품 등 가격 정보 등록
 - 가격 정보 등록 유형 구분(사용료·관리비, 시설물, 장례용품, 기타)
 - 해당 장사시설의 운영에 맞게 품종(관, 수의 등)에 따른 취급품목을 구성할 수 있고, 취급품목에 대한 판매여부(판매·미판매) 관리 가능
 - 장례용품 정보 등록(품명, 가격, 규격, 재질, 원산지 등)
 - ※가격 정보 등록 및 수정 내역에 대한 이력관리 가능

<가격 정보 등록>

○ 시설선택 ▼
○ 조회하기
○ 검색기간 2018-01-01 ~ 2018-01-02
○ 이력조회

▶ 가격정보 입력

이용료
시설물
장례용품
참고자료

* 가격은 1일, 1회 기준 가격으로 입력하고, 원산지는 세부내용에 입력합니다. 품을 추가하셔서 가격정보를 입력하세요.

선택	분류	종류	품명	규격/재질/원산지 (mm, cm, m 등 기본단위 사용)	가격 (단위:원)	비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value=""/> ▼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text" value=""/>

○ 장사시설 요금, 장례용품 등 가격 및 표준 평균가격 정보 게시

<가격 정보정보(평균가격 포함) 게시- 예시 화면>

미판매 보기 전부열기 ▾ 전부닫기 ▲

시설사용료 항목	품종	품명	임대내용	요금 (단위:원)	일수	관내 평균가격	전국 평균가격	판매 구분	선택
시설임대료 ☏	기타	빈소임대료	2개실(290㎡) / 1시간	40,000	<input type="text" value="1"/>	0 (0개소)	0 (0개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빈소임대료	2개실(290㎡) / 1시간	38,000	<input type="text" value="1"/>	0 (0개소)	0 (0개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영결식장임대료	1개실(77.56㎡) / 1회	50,000	<input type="text" value="1"/>	0 (0개소)	0 (0개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빈소임대료	2개실(263㎡)/1시간	38,000	<input type="text" value="1"/>	0 (0개소)	0 (0개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빈소임대료	1개실(247㎡)/1시간	36,000	<input type="text" value="1"/>	0 (0개소)	0 (0개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빈소임대료	1개실(204㎡)/1시간	33,000	<input type="text" value="1"/>	0 (0개소)	0 (0개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빈소임대료	1개실(104㎡)/1시간	18,000	<input type="text" value="1"/>	0 (0개소)	0 (0개소)		<input type="checkbox"/>
안치실이용료 ☏	일반	안치료1	1시간	2,500	<input type="text" value="1"/>	121,250 (2개소)	66,881 (841개소)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항목	품종	품명	서비스내용	요금 (단위:원)	관내 평균가격	전국 평균가격	판매 구분	선택
청소/관리 ☏	청소비	청소/관리비	무료	0	150,000 (1개소)	43,002 (289개소)		<input type="checkbox"/>
도우미 ☏	도우미	도우미	기본6시간 45,000원	45,000	45,000 (1개소)	54,439 (268개소)		<input type="checkbox"/>
주차비 ☏	주차비	주차비(상주)	상가당 4대 무료등록	0	0 (0개소)	1,692 (30개소)		<input type="checkbox"/>
	주차비	주차비(문상객)	30분 무료주차 무인정산 기 이용 초과시 10분당 300원	0	0 (0개소)	1,692 (30개소)		<input type="checkbox"/>
전화비 ☏	전화비	전화설치비	국제전화 제외	10,000	10,000 (1개소)	22,577 (25개소)		<input type="checkbox"/>

○ 실속정보(지자체 장사관련 지원 사항 조회)

- 개·화장 장려금, 시설이용료 감면혜택, 기타 지원사항 등

<지자체 장사관련 지원 사항 조회 화면>

시도선택 ▼ 시도선택 시군구선택 ▼ 전체 내용포함 Q 검색

전체건수 209건, (3/21) 페이지

NO	구분	지역	제목	시행일시	등록일	조회수
189	화장지원금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화장장려금	2016.01.01	2016.05.09	487
188	기타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군 공영장례지원	2016.03.11	2016.04.01	251
187	화장지원금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군 화장장려금	2016.02.05	2016.02.12	388
186	화장지원금	강원도 고성군	고성군 화장장려금	2015.08.13	2016.01.11	258
185	화장지원금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화장장려금	2013.08.16	2016.01.08	794
184	기타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2011.12.15	2016.01.08	174
183	기타지원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	2014.09.19	2016.01.08	255
182	기타지원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지원	2015.02.10	2016.01.08	86
181	화장지원금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군 화장장려금	2016.01.01	2015.12.11	265
180	화장지원금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군 화장장려금	2016.01.01	2015.12.11	163

3 화장관리시스템

1) 시스템 구성



2) 시스템 구축 목적과 기대효과

- 화장시설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투명성 제고
- 화장시설 이용 결과의 사망자정보 관계기관 제공
- 업무처리 정보화가 미흡한 시설에 대한 시스템 제공으로 비용 절감
- 지자체의 화장시설 사용료 정산체제 기반 마련
- 화장시설 이용체제 최적화를 통한 화장수요 충족률 제고

3) 화장시설 준비사항

- 화장예약 및 화장접수 기준(기본정보) 설정
 - 시설별 화장예약 차수, 우선예약 종료시간, 사용료, 시설, 서식 기준 등 등록
 - 설정된 기준에 따라 시설별 인터넷 화장예약(e하늘 포털시스템) 적용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장사지원센터 1577-4129로 문의)
※인터넷 예약 시 사전 선점 방지를 위해 '취소 후 대기' 시간을 60분으로 설정(전체 시설 공통)
- 시설기준 및 예약차수, 예약일정 관리
 - 화장시설 주소, 대표전화, 화장로 수, 인증절차 적용
 - 시신, 개장유골, 죽은 태아(사산아)의 차수별 시간대 기준 설정
 - 운영차수 기준에 따른 일별 예약 가능한 차수의 시간대 설정
- 사용료 기준정보 관리
 - 유형별(시신, 개장유골, 죽은 태아), 관내·외, 감면대상 여부 등 화장시설 요금 기준 설정
- 서식기준 관리
 - 화장신고서, 화장증명서, 영수증에 기재될 안내 문구 설정

4) 화장예약 관리 절차

- 화장시설 예약정보 관리
 - 화장예약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투명한 화장예약 체계 정립을 위하여 화장시설의 자체예약 최소화
※윤달 기간, 개장유골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시설 여건에 적합한 추가 예약절차를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모든 화장정보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
 -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e하늘 포털(www.ehaneul.go.kr)의 실명인증 신청 절차에 따라 예약 진행
※주소지가 동일한 다수의 무연고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예약은 화장시설 운영 기준에 따라 사전 협의 하여 예약 진행 가능

5) 화장접수 관리 절차

○ e하늘 화장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화장시설

- “화장접수 관리” 메뉴에서 화장예약을 선택하여 화장접수 처리
- 화장신고서, 화장증명서, 영수증 출력
- 화장 시작, 종료의 화장결과 등록
- 화장접수 관리대장을 출력하여 접수 내역과 비교

○ 자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화장시설

- 화장관리시스템의 화장예약 정보가 자체 정보시스템의 자료구조에 적합하게 전환되어 적재되었는지 확인
- 자체 정보시스템에 화장접수 처리된 화장정보가 화장관리시스템으로 올바르게 연계되는지를 화장관리시스템의 화장접수 관리대장을 통해 익일 확인

※ 자체 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장사시설

- 서울(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수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세종, 광주, 울산, 용인, 구미, 정읍, 청주

🔍 화장접수 시 주의사항

- 자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화장시설에서 시신(일반) 화장접수 시 연계된 화장예약 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서로 다른 사망자를 접수할 수 없음

※ 예약정보와 상이한 사망자의 화장접수 사실이 발생하면 사실 확인 후 해명요구 및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예정

※ 참고사항

〈화장관리시스템 주요 관리 항목〉		
구분	관리정보	주요 관리 항목
기준정보	시설기준	시설명, 소속기관, 주소, 대표전화번호, 신청자 실명인증 여부, 신청자 휴대폰 인증 여부, 예약변경 제한횟수, SMS 안내 여부, 당일예약 여부, 당일예약 가능시간, 우선예약 종료시간
	예약차수 및 일정	기준일자, 차수, 시간대, 최대 예약 수, 적정 예약 수, 관내 우선예약 수, 예약대상, 예약가능 여부
	사용료	화장대상, 관내·외, 감면대상, 적용일자, 사용료
화장예약	화장예약	예약일자, 예약시간대, 예약대상, 사망자명,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자명, 신청자 생년월일, 사망일자, 사망시간(사망시각), 휴대폰번호, 사망장소, 사망사유, 사망자와의 관계, 관내·외, 사망자 주소, 신청자 주소, 사망 관리번호
	화장예약 취소	예약번호, 취소일자, 취소시간, 취소사유
화장접수	화장접수	화장일자, 화장예약번호, 화장대상, 감면대상, 관내·외, 유/분골 구분, 사망자명,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사망자 성별, 생년월일, 사망일자, 사망 장소, 사망사유, 유골처리 구분, 사망자 주소, 신청자명, 신청자 생년월일, 신청자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휴대폰번호, 사용료

4 시설운영관리시스템

1) 시스템 구성



2) 시스템 구축 목적과 기대효과

- 묘지,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정보화
-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한 즉시성 있는 정책자료 획득 기반 구축
- 매장(이장, 개장 포함)·봉안 등에 따른 시신·유골의 처리절차, 이동경로 등에 대한 이력 관리
-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업무 및 관리 효율성 증대
- 업무절차의 시스템화로 체계화된 민원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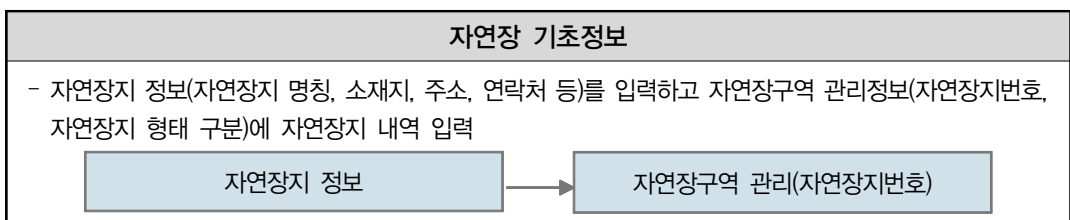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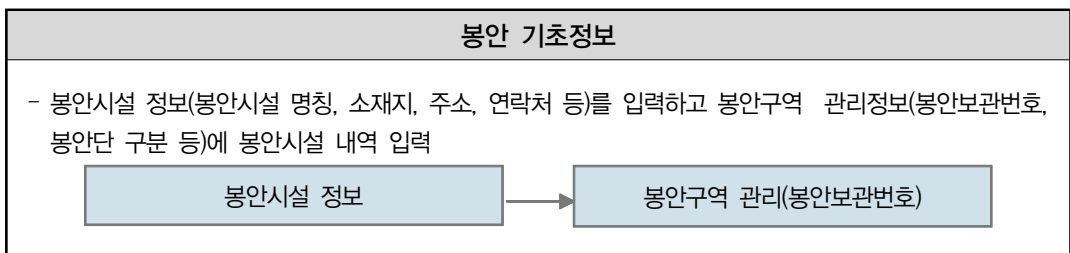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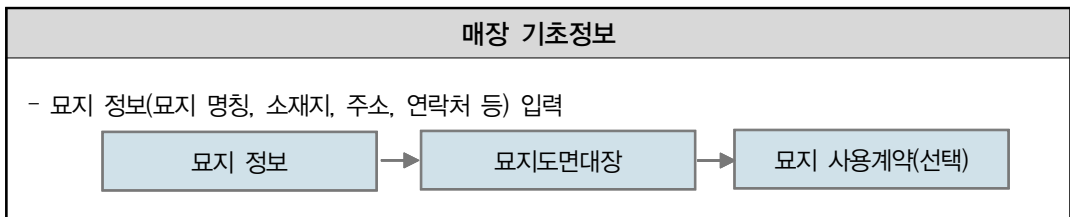
3) 시설운영관리업무 처리절차

○ 기준정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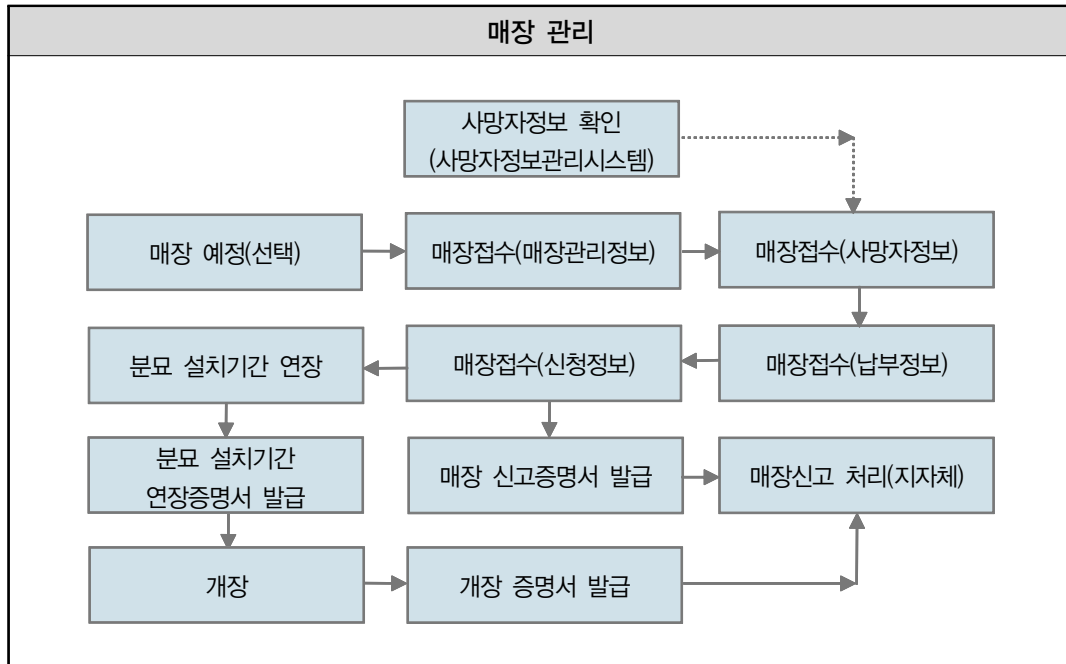
- 시설운영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준정보 등록
- 공통 기초정보는 공통사항이므로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서 입력하고, 매장, 봉안, 자연장 기초정보는 해당하는 시설만 입력



- 시설 유형별 추가정보와 요금정보를 입력
- 관리사무소(관리사무소 환경설정정보)에서 신고서 및 증명서를 동시 출력할 경우에는 [서식 신고서 출력여부]를 체크 입력



○ 매장신고 등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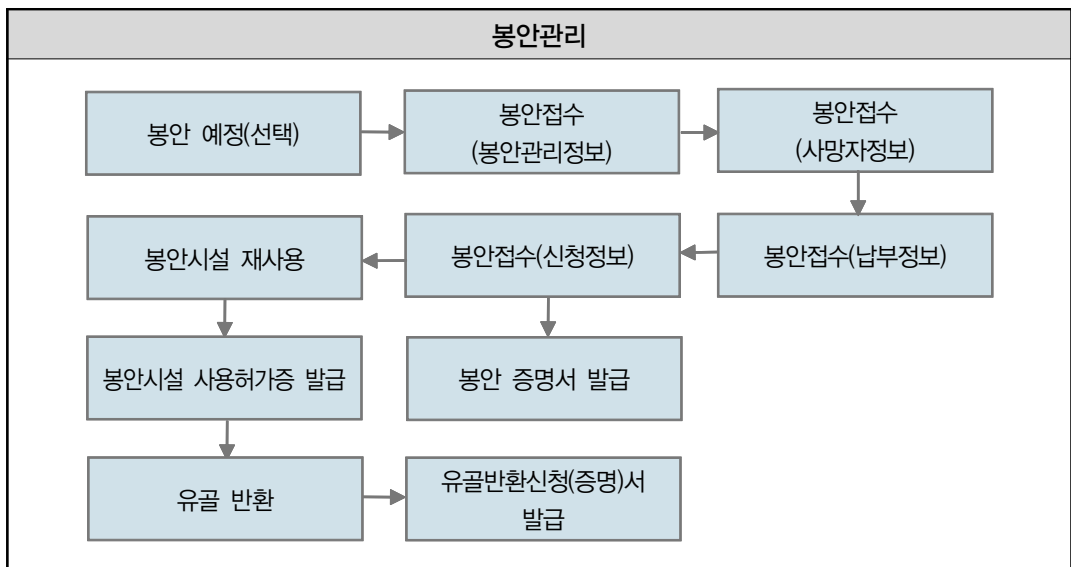


- 매장접수 업무 처리
- 매장접수 화면에서 접수 및 처리를 하고 신고서 및 증명서를 발급
- 사망진단서 대신 인우보증서(사망증명서)로 매장신고된 경우에는 사망증명서를 선택 (사망진단서번호 입력 생략)하고 입력
- 사망자정보와의 연계 기능(사망자정보 조회) 처리¹⁾
 - 매장접수 입력 시 사망자정보 조회를 위하여 사망자명,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조회함
 - 사망자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사망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 등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입력됨
 - 사망자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사망자정보 내역을 직접 입력하고, 입력된 사망자 정보 자료는 자동으로 사망자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처리됨

1) 사망자정보는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통하여 사망자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됨

- 장사행정지원 연계 기능
 - 단위 시설에 매장 접수된 자료를 관할 행정기관에서 매장신고를 위하여 연계 처리하는 기능
 - 매장접수 처리를 하면 단위 시설의 매장접수 내용이 장사행정지원시스템의 매장신고 등록에서 조회되어 매장신고 처리 가능
 - ※ 지자체 담당자는 시설의 매장접수 처리 건에 대하여 매월 장사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매장신고 연계 처리
- 분묘 설치기간 연장 처리 시에는 매장접수 화면의 '기간연장'에 기간연장 세부내역을 입력하고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
- 개장 처리 시에는 매장접수 화면의 '개장'에 개장 세부내역을 입력하고 개장 증명서를 발급

○ 봉안관리



- 봉안접수 및 유골반환 업무 처리
- 봉안접수 화면에서 접수 및 처리를 하고 신고서 및 증명서 발급
- 봉안시설 사용 연장을 할 경우에는 봉안접수 화면의 '재사용신청' 기능을 이용하여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세부내역을 등록하고 봉안시설사용허가증 발급
- 유골 반환을 할 경우에는 봉안접수 화면의 '반환'에 유골반환 세부내역을 입력하고 유골반환증명서 발급

○ 자연장 관리



- 자연장접수 업무 처리
- [자연장 접수 화면에서 접수 처리를 하고 신청서 및 증명서를 발급

4) e하늘 포털 관리

- 시설 담당자는 e하늘 포털에 등록된 시설 정보와 가격 정보의 확인 및 변경 관리
 - e하늘 포털의 “시설 정보 관리” 화면에서 시설 정보(시설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 및 시설 사용료 등의 가격 정보 등을 확인하고 변경사항 입력
 - e하늘 포털에서 시설 정보를 변경하면 시설운영관리시스템의 시설 정보도 자동으로 변경 처리됨

5) 주요 관리 항목

○ 기준정보 관리

업무 구분	관리정보	주요 관리 항목
공통	시설 정보	시설명칭,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등
	관리사무소 정보	관리사무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등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정보	관리사무소, 요금 종류, 사용료, 관리비 등
묘지	묘지 정보	관리사무소, 묘지명칭, 소재지, 설치일, 전화번호, 주소 등
봉안시설	봉안시설 정보	관리사무소, 봉안시설 명칭, 소재지, 설치일, 봉안시설 형태, 최초 허가기간, 연장기간, 연장횟수, 전화번호, 주소 등
	봉안구역 정보	봉안시설, 봉안구역, 봉안실 번호, 봉안단 번호, 봉안보관번호명, 봉안시설 형태 구분, 봉안단 구분 등
자연장지	자연장지 정보	관리사무소, 자연장지 명칭, 소재지, 조성일, 자연장지 형태 구분, 전화번호, 주소 등

○ 매장 관리

관리정보	주요 관리 항목
매장관리정보	관리사무소, 묘지지역, 매장일자, 분묘 형태, 분묘면적, 시설사용 허가기간 등
사망자정보	사망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국적 구분, 사망장소, 사망사유 등
납부정보	관내·외 구분, 감면대상 구분, 요금 구분, 사용료, 관리비 등
신청자정보	신청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신고일 등
납부자정보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신고일 등
연고자정보	연고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신고일 등
분묘 설치기간 연장정보	신청자명,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신고일, 주소, 연락처, 사망자와의 관계, 설치기간 연장 사유, 설치연장기간 등
개정정보	개정일자, 개정사유, 개정방법, 개정 신청자,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등

○ 봉안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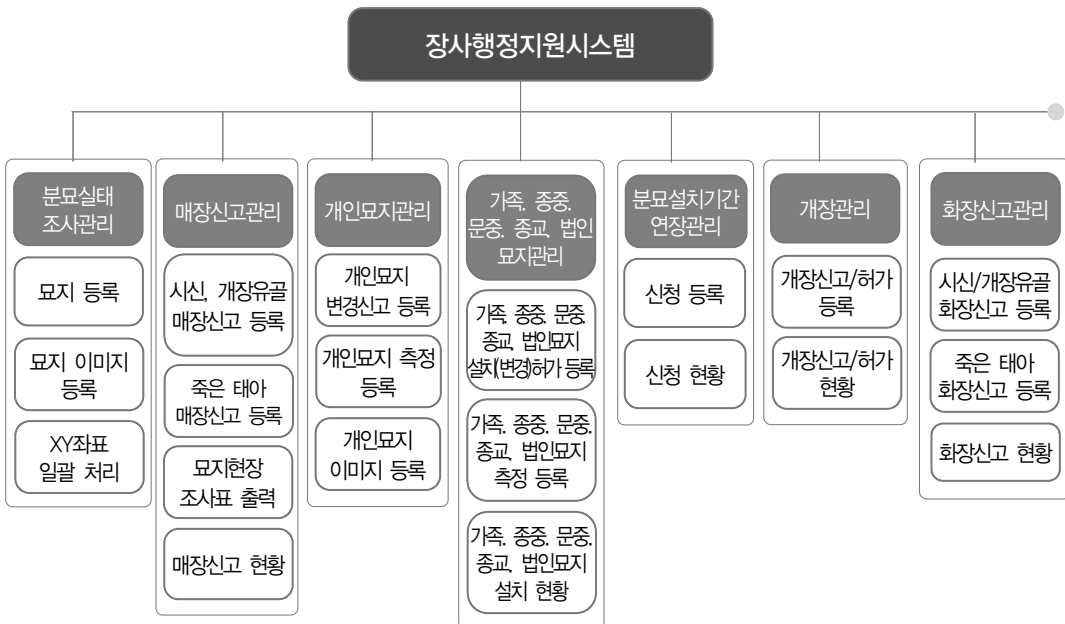
관리정보	주요 관리 항목
봉안관리정보	관리사무소, 봉안시설명, 봉안일자, 봉안함 구분, 봉안보관번호, 화장시설, 화장일자, 시설사용 허가기간 등
사망자정보	사망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국적 구분, 사망장소, 사망사유 등
납부정보	관내·외 구분, 감면대상 구분, 이용요금 구분, 사용료, 관리비 등
신청자정보	신청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신고일 등
납부자정보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신고일 등
연고자정보	연고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신고일 등
재사용정보	재사용 신청자명, 주민등록번호, 재사용 사유, 주소, 연락처, 신고일, 사망자와의 관계 등
반환정보	반환일자, 반환사유, 반환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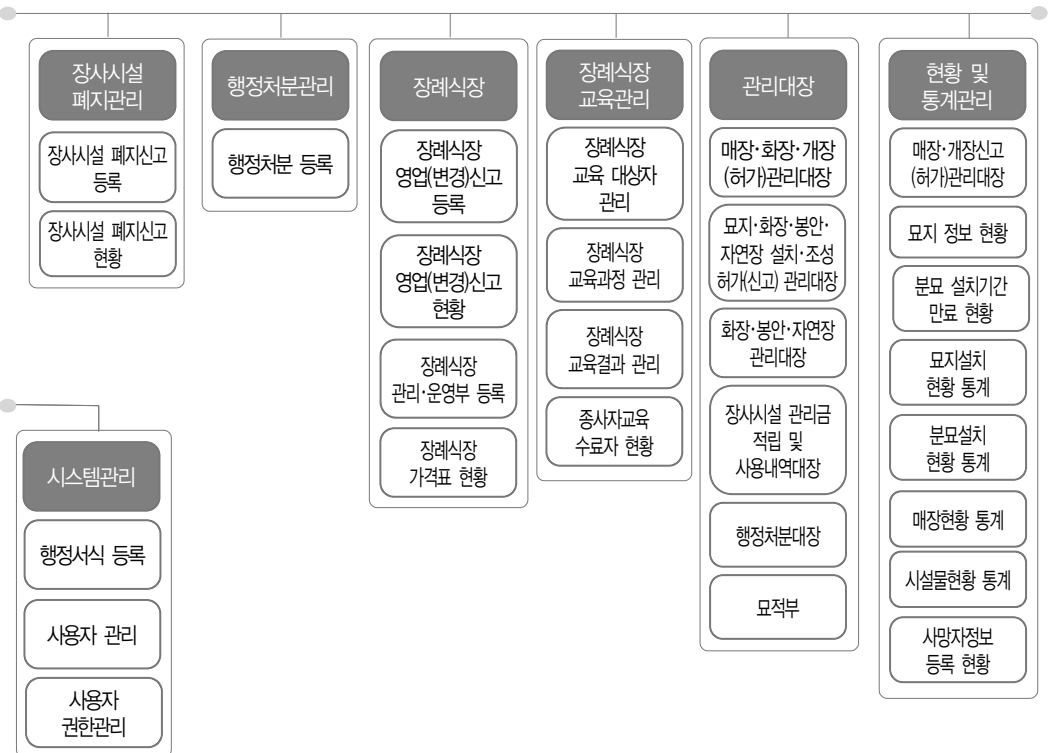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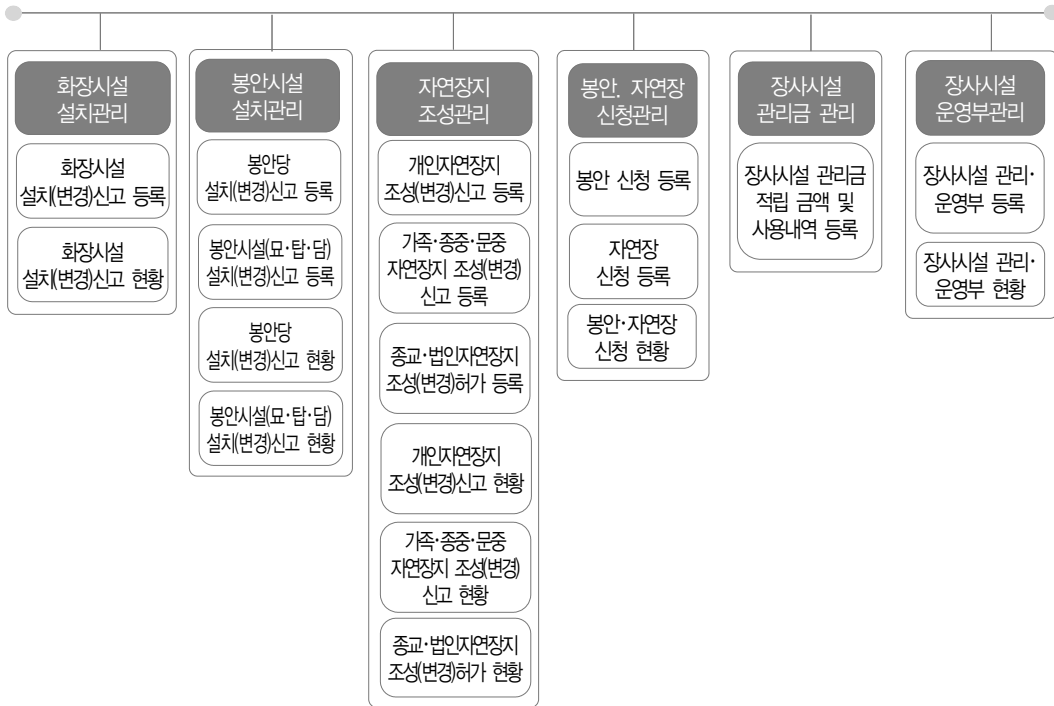
○ 자연장 관리

관리정보	주요 관리 항목
자연장관리정보	관리사무소, 자연장지명, 자연장 일자, 자연장 형태 구분, 자연장지 관리번호, 화장일자, 화장시설, 시설사용 허가기간 등
사망자정보	사망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국적 구분, 사망장소, 사망사유 등
납부정보	관내·외 구분, 감면대상 구분, 이용요금 구분, 사용료, 관리비 등
신청자정보	신청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신고일 등
납부자정보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신고일 등
연고자정보	연고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신고일 등

5 장사행정지원시스템

1) 시스템 구성





2) 시스템 구축 목적과 기대효과

-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 등 인허가 및 매·화장 신고관리 및 장사시설 관리(관리·운영부, 관리금 등)를 통한 전자적 업무처리
- 장사행정정보 통합 관리를 통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3) 장사행정지원업무 처리절차

- 장사행정지원시스템 접속환경 및 인증기능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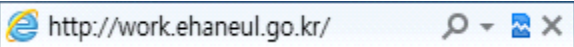
개선 내용

■ 주요 개선 내용

- 장사행정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와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업무망 서비스 및 본인인증기능 개선
 - 장사행정지원시스템 접속환경 행정업무망 서비스 추가
 - 본인확인을 위한 문자인증 방식 추가

■ 장사행정지원 시스템 접속 방법(인터넷망)

- 프로그램 설치 : <http://work.ehaneul.go.kr>



- ※ 프로그램 자동 설치(바탕화면 바로가기 단축아이콘 생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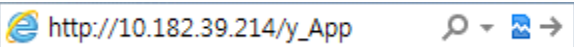
- 바탕화면에 단축아이콘 생성 및 로그인



-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접속 시 문자인증, 휴대폰/신용카드/범용공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 장사행정지원 시스템 접속 방법(업무망)

- 프로그램 설치 : http://10.182.39.214/y_App/



- ※ 프로그램 자동 설치(바탕화면 바로가기 단축아이콘 생성됨)

개선 내용

- 바탕화면에 단축아이콘 생성 및 로그인



• 장사행정지원시스템 공무원전용 인증(GPKI) 기능 도입('14.10월)

○ 각 메뉴별 등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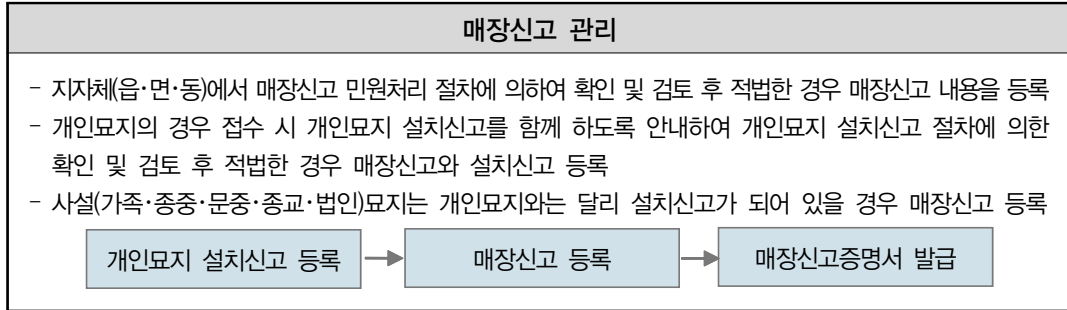
분묘 실태조사 관리

- 지자체(시·군·구)에서 관할지역의 분묘 실태조사 시 묘지 정보 등록 및 관련 묘지 이미지 등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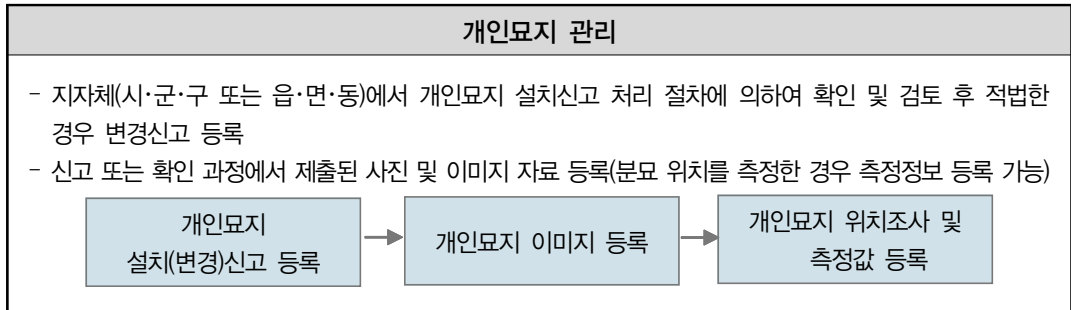
```

    graph LR
      A[묘지 정보 등록] --> B[이미지 정보 등록]
      B --> C[XY좌표 일괄 처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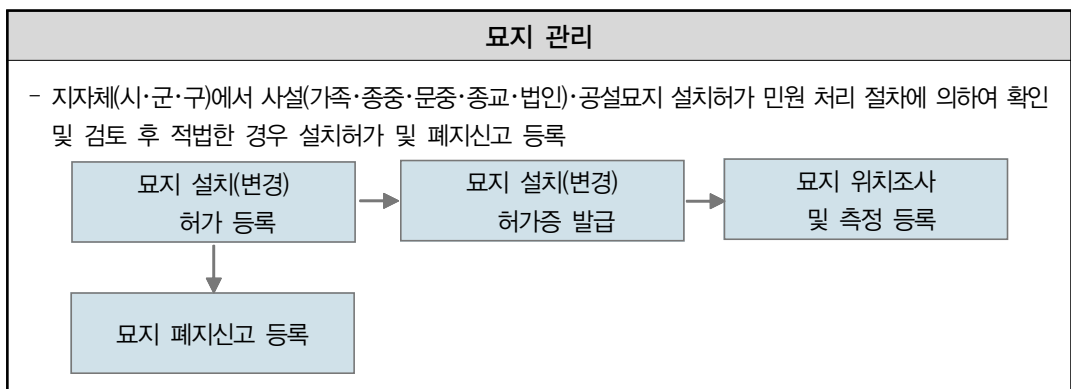
- 묘지 등록 방법
 - 사망자, 연고자, 설치자, 관리자, 시설물 설치정보 입력(사망자정보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그 외 정보는 필요시 입력)
 - 자료 조회를 위하여 조회 조건을 지정하여 묘지내역 조회
- 묘지 이미지 등록
 - 실태조사 관련 묘지 사진 또는 이미지 자료 등록(필요시 등록)
 - 조회 조건을 지정하고 묘지 정보 조회
- X, Y좌표 일괄 처리
 - 분묘실태 조사정보를 바탕으로 분묘위치(X,Y) 등록(엑셀자료 일괄 등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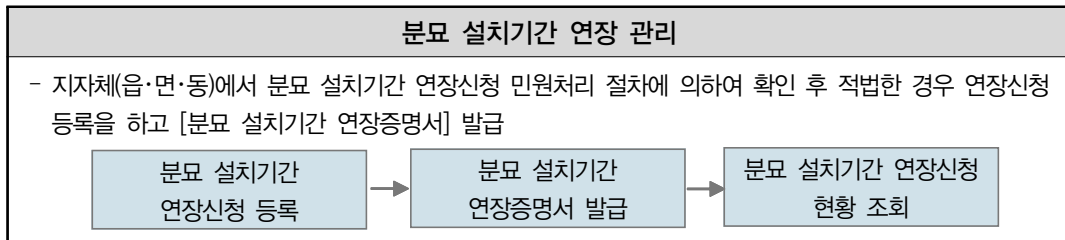
- 개인묘지 설치신고 등록
 - “매장신고등록” 화면의 “개인묘지 설치신고” 화면을 이용하여 등록
 - 설치자, 관리자 등 설치정보를 입력 후 등록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 출력
- 매장신고 등록
 - 매장 구분(시신, 개장유골, 죽은 태아)에 따라 신고내용 입력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대신 인우보증서(사망증명서)로 매장신고된 경우에는 ‘사망증명서’를 선택하고 ‘사망진단서 번호’ 및 ‘발급기관명’의 입력은 생략
 - 사망자정보 입력 시 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사망자정보 확인’을 통해 등록된 정보(사망일자, 주소 등의 사망자정보) 확인
 - ※사망자정보는 장사시설(화장시설 등)에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화장예약 및 처리를 통하여 등록된 정보로, ‘사망자정보확인’을 통해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매장신고서를 근거로 사망자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며, 입력된 정보는 사망자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처리됨
 - 매장 구분이 “죽은 태아”인 경우 사산장소, 사산사유, 임신주수와 부(모)정보 입력
 - 합장처리를 하려는 경우 ‘합장여부’를 체크한 후, 합장사유와 합장분묘를 선택 하여 합장처리(합장할 매장정보가 없는 경우, 신규 등록 후 합장처리)
 - 신고인 및 연고자의 정보를 입력 후 매장신고 등록
- 매장 신고증명서 발급
 - [시신·개장유골 매장신고서], [죽은 태아 매장신고서] 증명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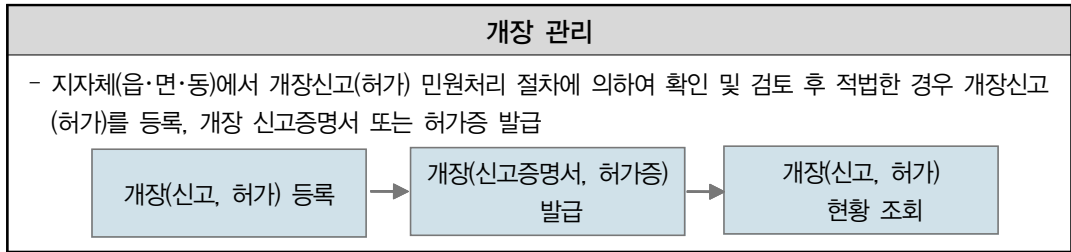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등록
 - 변경신고 등록 시 ‘매장정보 가져오기’에서 매장신고 정보를 검색한 후 매장관련 정보 입력
 - 묘지, 설치자, 관리자 등 변경된 내용을 입력 후 신고 등록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 출력
※개인묘지의 설치신고 등록은 “매장신고관리” 처리방법에 따라 매장신고와 설치신고 등록
- 개인묘지 이미지 등록
 - 조회 조건을 지정하여 설치(변경)신고 정보 조회
 - ‘이미지 보기’를 클릭하여 해당 묘지와 관련된 사진 및 이미지 자료 첨부
- 개인묘지 위치조사 및 측정 등록
 - ‘묘지현황조사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묘지현황조사표] 출력(분묘위치 조사 및 측정 업무에 출력된 조사표로 활용)
※측정정보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치를 인지할 수 있는 자료(지도, 약도 등)로 대체 가능, 이미지 자료는 “개인묘지 이미지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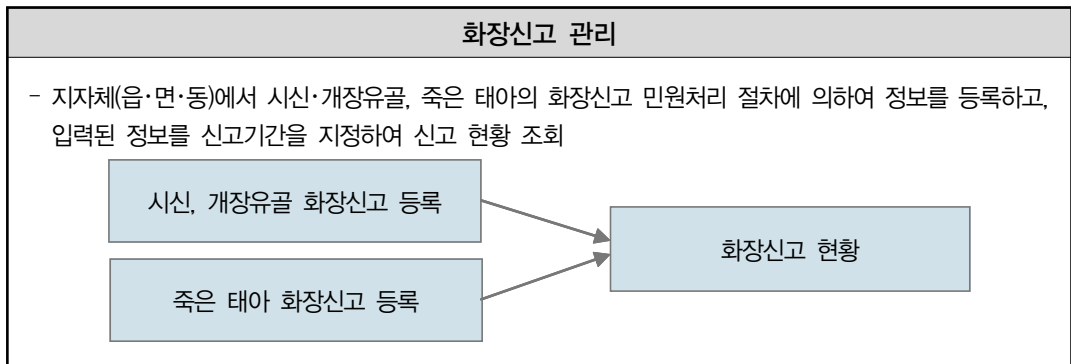
- 묘지 설치허가 등록
 - 분묘 형태와 설치 예정기수 등 묘지 정보 입력
 - 설치자, 관리자, 신청인 등 허가신청 내용을 입력 후 설치허가 등록
- 묘지 변경허가 등록
 -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허가 정보 조회
 - 허가 구분을 “변경신고”로 지정하여 설치변경사항을 입력 후 변경허가 등록
- 묘지 설치(변경)허가증 발급
 -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변경)허가 정보 조회
 - ‘묘지설치(변경)허가증’ 버튼을 클릭하여 [묘지설치(변경)허가증] 발급
- 묘지 위치조사 및 측정 등록
 - 묘지 위치 측정정보 입력(필요에 따라 등록)
 - ※“위치 측정 등록”의 분묘위치 X좌표(위도), Y좌표(경도) 항목은 입력 생략 가능
- 묘지 폐지신고 등록
 -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허가 정보 조회
 - 폐지일자, 사유 등 폐지내역을 입력 후 장사시설 폐지신고 등록



- 지자체(읍·면·동)에서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민원처리 절차에 의하여 확인 후 적법한 경우 연장신청 등록을 하고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발급
-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등록
 - ‘매장신고정보번호’ 조회를 통해 최초 신고된 분묘 정보를 선택하여 분묘정보 입력
 -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클릭하여 연장증명서 발급
 - ※‘연장정보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연장신청 이력 조회 가능
-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현황
 -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현황 조회를 위하여 신청일자, 시설 구분 등 조회 조건을 지정 후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현황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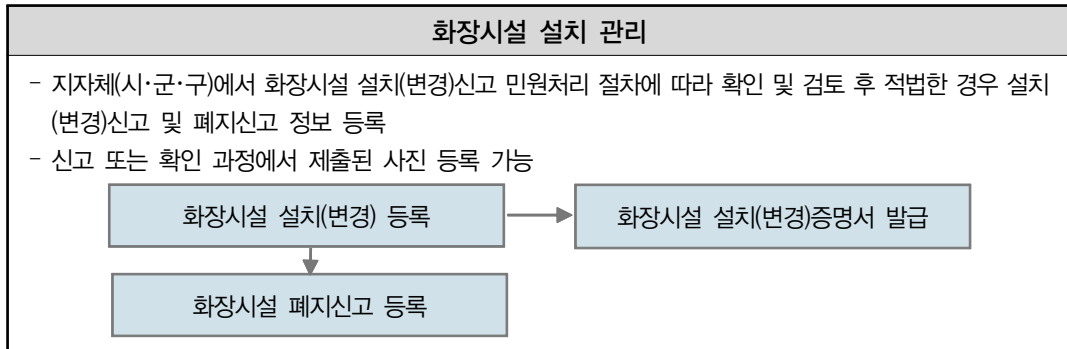


- 개정(신고/허가) 등록
 - ‘매장신고정보번호’에서 매장신고정보를 조회하여 최초 신고된 분묘 정보 선택
 - ※기 등록된 매장신고 정보가 없는 경우 [매장신고가 없는 경우 체크 해제]를 선택하고 분묘 정보 등록
 - 신고/허가 신청정보를 입력 후 개정(신고/허가) 등록
 - ‘개정신고/개정허가 신청서’를 클릭하여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
- 개정(신고/허가) 현황
 - 개정(신고/허가) 등록된 자료 조회를 위하여 신청일자, 시설 구분 등 조회 조건을 지정 후 개정(신고/허가)현황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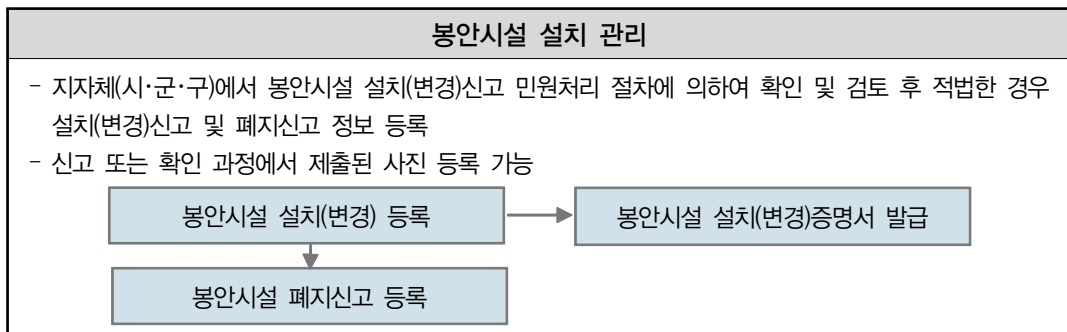


- 시신·개정유골 화장신고 등록
 - 사망자정보 입력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망자정보 확인’을 통해 “화장 신고 등록” 화면에서 사망일자, 주소 등의 사망자정보 항목 확인
 - 사망자 및 신고인 정보 등 화장신고 정보 등록
 - ‘시신·유골화장신고서’ 및 ‘화장 증명서’ 클릭하여 증명서 발급
 - ※ ‘화장접수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관할 화장시설에서 접수 처리된 자료 선택 후 화장 접수된 사망자 및 신고인 정보 입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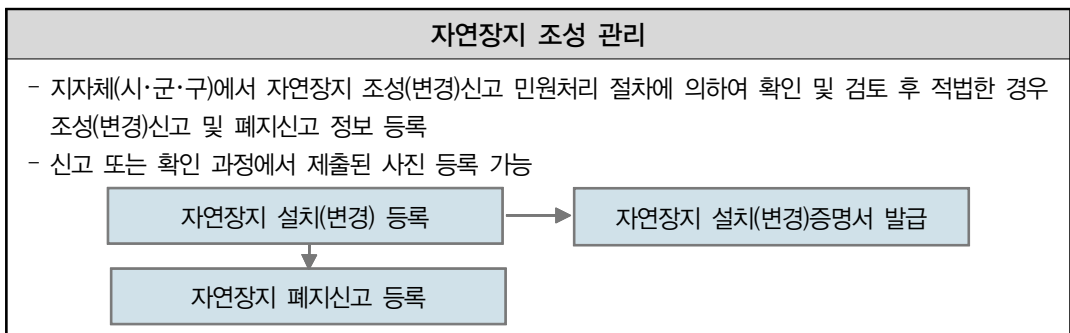
- 죽은 태아 화장신고 등록
 - ‘신고’ 버튼 클릭 후 죽은 태아 화장신고 등록
 - 죽은 태아 및 부(모), 신고인 정보 입력 후 화장신고 등록
 - ‘죽은 태아 화장신고서’ 및 ‘화장 증명서’를 클릭하여 증명서 발급
- 화장신고 현황
 - 화장신고 등록된 자료 조회를 위하여 신고일자 조회 조건을 지정하여 화장신고 현황 조회



- 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 등록
 - 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를 등록하는 경우 신고 구분(설치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을 선택하고 설치자, 관리인, 신고인 정보 및 설치변경사항 정보 등록
 - 기 신고된 시설의 경우, ‘시설명’을 통해 화장시설의 신고내역 조회
 - 신고처리 완료 시 ‘화장시설 설치(변경) 신고증명서’ 버튼을 클릭하여 [화장시설 설치(변경) 신고증명서 발급
- ※ 화장시설의 사진첨부 필요 시 [사진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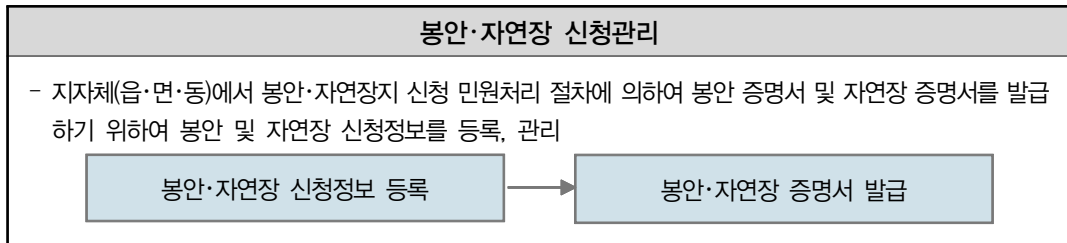


- 봉안당 설치(변경)신고 등록
 - 봉안당 설치(변경)신고를 등록하는 경우 신고 구분(설치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을 선택하고 설치자, 관리인, 신고인 정보 및 설치변경사항 정보 등록
 - 기 신고된 시설의 경우, '시설명'을 통해 봉안시설의 신고내역 조회
 - 신고처리 완료 시 '봉안당 설치(변경) 신고증명서' 버튼을 클릭하여 [봉안당 설치(변경) 신고증명서 발급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 등록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를 등록하는 경우, 신고 구분(설치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을 선택하고 설치자, 관리인, 신고인 정보 및 설치변경사항 정보 등록
 - 기 신고된 시설의 경우, '시설명'을 통해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의 신고내역 조회
 - 신고처리 완료 시 '봉안시설 설치(변경) 신고증명서' 버튼을 클릭하여 [봉안시설 설치(변경) 신고증명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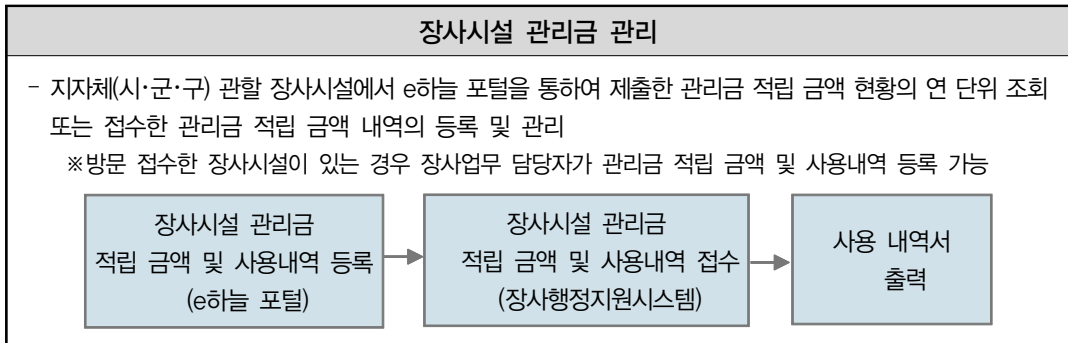
-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등록
 -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등록하는 경우 신고 구분(설치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을 선택하고 사망자, 조성자, 관리인, 신고인 조성변경사항 등의 정보 등록
 - 기 신고된 시설의 경우, '시설명'을 통해 개인자연장지의 신고내역 조회
 - 신고처리 완료 시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버튼을 클릭하여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 발급

-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등록
 -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등록하는 경우, [신고 구분](설치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을 선택하고 조성자, 관리인, 신고인 조성변경사항 등의 정보 등록
 - 기 신고된 시설의 경우, '시설명'을 통해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의 신고내역 조회
 - 신고처리 완료 시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 버튼을 클릭하여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 발급
-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등록
 -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를 등록하는 경우, '허가 구분'(조성허가, 변경허가, 폐지신고)을 선택하고 조성자, 관리인, 신고인 조성변경사항 등의 정보 등록
 - 기 허가된 시설의 경우, '시설명'을 통해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의 허가내역 조회
 - 허가처리 완료 시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명서] 버튼을 클릭하여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 발급
- 장사시설 조성(변경)신고/허가 등록 현황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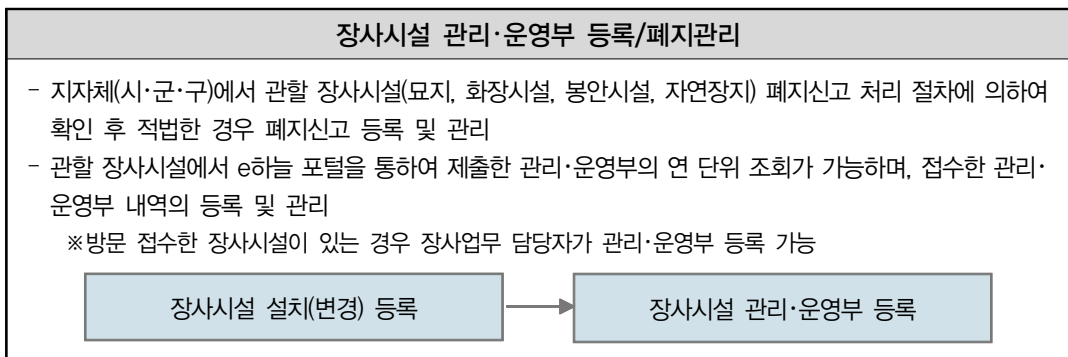
- 봉안 신청정보 등록
 - 봉안신청 등록 시 사망자 및 신고인 정보를 등록하고 관할 봉안시설 선택
 - 신청등록 완료 시 '봉안 증명서' 버튼을 클릭하여 [봉안 증명서] 발급
 - ※관할지역 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화장시설·봉안시설이 있는 경우, '화장정보 가져오기', '봉안접수정보 가져오기'를 통해 해당 지자체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접수정보를 선택하여 "신청정보등록" 화면의 사망자 및 신청자 항목 입력 가능
- 자연장 신청정보 등록
 - 자연장신청 등록 시 사망사정보 및 신고인 정보를 등록하고 관할 자연장지 선택
 - 신청처리 완료 시 '자연장 증명서' 버튼을 클릭하여 [자연장 증명서] 발급
 - ※관할지역 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화장시설·자연장지가 있는 경우, '화장정보 가져오기', '자연장접수정보 가져오기'를 통해 해당 지자체 화장시설 및 자연장지의 접수정보를 선택하여 "신청정보등록" 화면의 사망자 및 신청자 항목 입력 가능

- 봉안·자연장 신청 현황 조회



-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내역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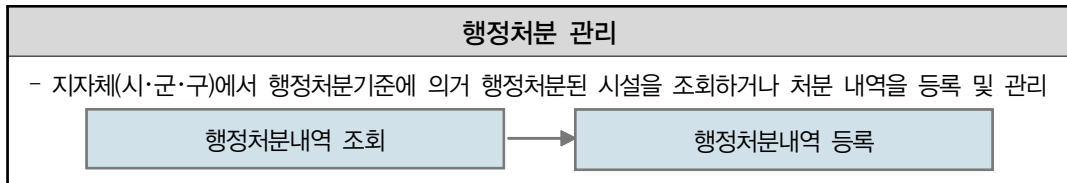
- 장사시설은 e하늘 포털을 통해 적립 금액 및 사용내역 제출
- 장사업무담당자는 관할행정구역 내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내역 조회
-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접수 구분을 [접수 완료]로 변경하여 접수처리
- 접수처리 완료 시 '사용내역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가능
 ※첨부자료가 있는 경우 '사용대장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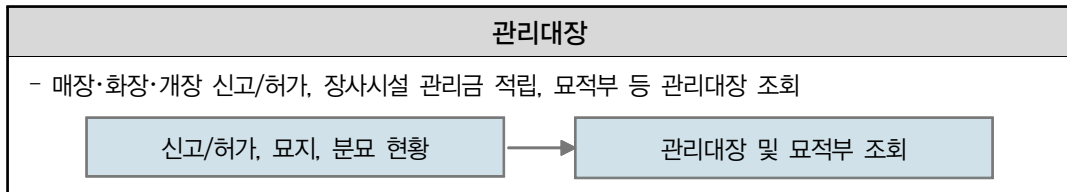
- 장사시설 관리·운영부 등록

- 장사시설은 e하늘 포털을 통해 관리·운영부 제출
- 지자체(시·군·구) 장사업무 담당자는 관할 장사시설에서 제출한 관리·운영부를 시설 종류(묘지, 봉안 시설, 화장시설, 자연장지), 시설명, 신고년도 등으로 지정하여 조회
- 제출된 관리·운영부를 확인하여 접수 구분을 [접수완료]로 변경하여 접수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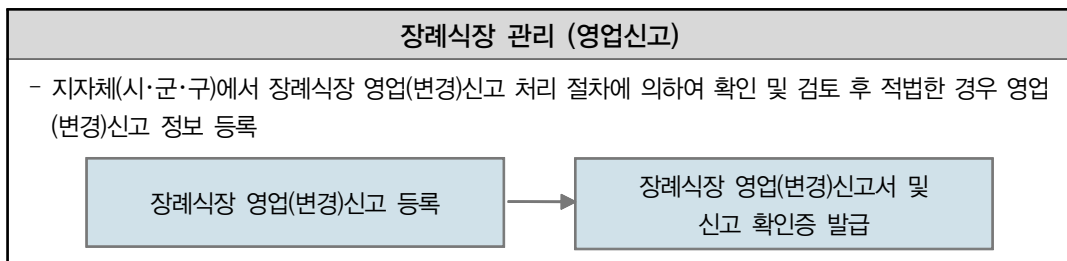
- 접수처리 완료 시 ‘장사시설운영부’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가능
 ※첨부자료가 있는 경우 [상세내역첨부]를 통해 첨부
- 장사시설 폐지신고 등록
 - 관할 장사시설의 폐지신고를 등록하는 경우 시설종류, 시설명, 신고기간 등 조회 조건을 지정하여 장사시설을 조회하고 해당 장사시설의 폐지신고 등록
 ※“가족·종중·문중·종교·법인묘지관리” 또는 “화장·봉안·자연장 설치(조성)관리” 화면에서 장사 시설을 선택하여 폐지신고 등록 가능



- 행정처분된 시설 정보를 조회하거나 처분할 시설을 선택하여 행정처분내역 등록(처분 일자,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등)
- 행정처분내역은 엑셀파일로 저장하여 대장관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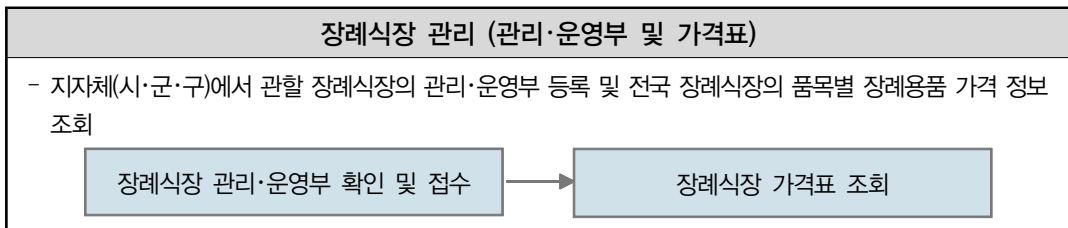


- 관리대장은 엑셀파일로 저장하여 별도 대장관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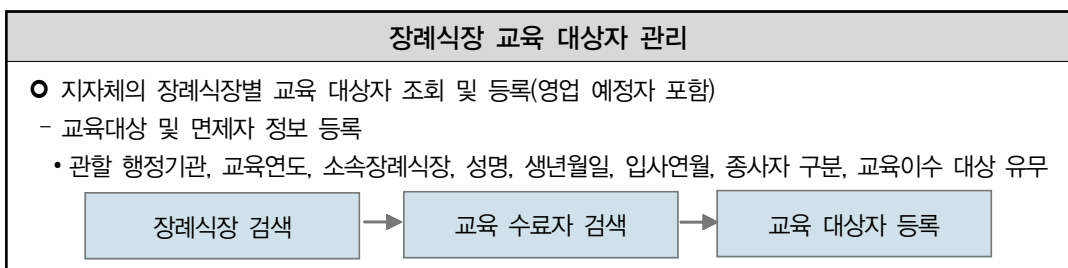


-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등록
 -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를 등록하는 경우 신고 구분(영업, 변경, 폐업)을 선택하고 영업자(대표자), 관리인, 신고인 및 영업변경사항 정보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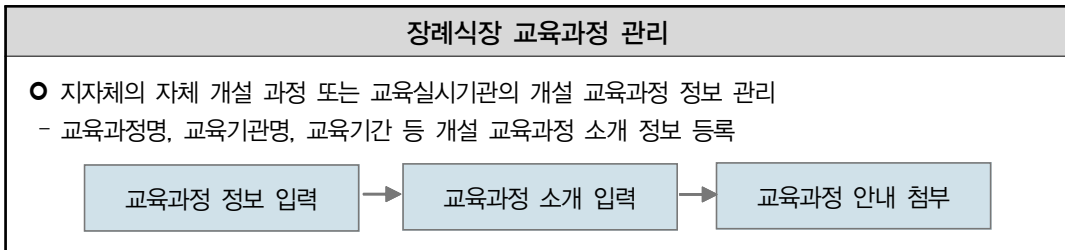
- 기 신고된 장례식장의 경우, ‘시설명’을 통해 신고내역 조회
- 신고처리 완료 후 ‘영업(변경) 신고서’ 버튼을 클릭하여 [장례식장 영업(변경) 신고서] 발급
- ‘신고 확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확인증] 발급
 - ※’16.1.29. 이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신고 수리 조건 포함” 을 선택하면 변경신고 처리 가능
 - 신고 확인증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부칙(제13108호, 2015.1.28.) 제5조에 따라 2018.1.29. 이전까지 반드시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은 실효되고 같은 법 제39조제2호의2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됨.”이라는 안내 문구가 출력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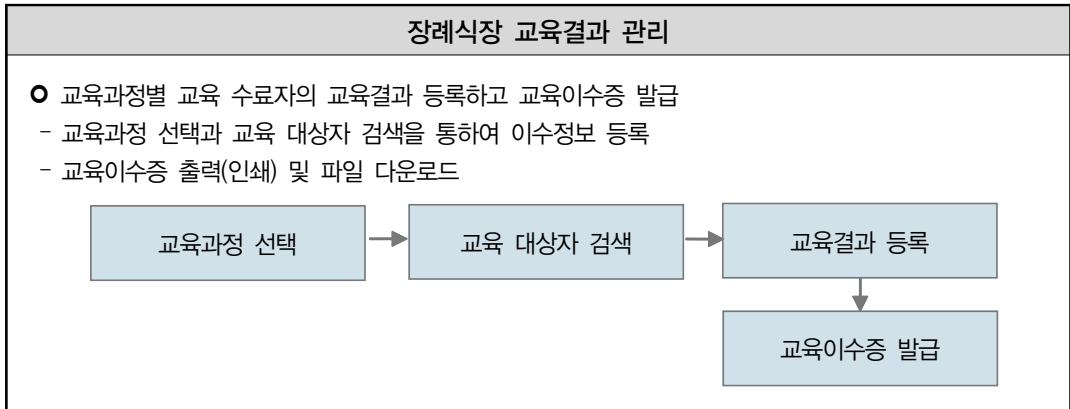
- 장례식장 관리·운영부 등록
 - 장례식장은 e하늘 포털을 통해 관리·운영부 제출
 - 지자체(시·군·구) 장사업무 담당자는 관할 장례식장에서 제출한 관리·운영부 현황 조회(신고년도, 시설명 등 선택)
 - 장례식장 관리·운영부를 확인한 후 접수 구분을 [접수완료]로 변경하여 접수처리
 - 접수처리 완료 시 ‘장례식장운영부’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가능
 - ※접수 구분을 [접수완료]로 변경하면 해당 장례식장 담당자는 e하늘 포털을 통한 수정 불가
 - ※염습·위생처리내역과 관련한 상세내역을 첨부하려는 경우 ‘염습·위생처리내역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
 - ※방문 접수된 장례식장의 관리·운영부는 장사업무 담당자가 장사행정지원시스템에 직접 등록 가능
- 장례식장 가격표 현황
 - 전국 장례식장에서 e하늘 장사정보 포털을 통해 등록된 장례용품 가격 조회
 - 장례식장 가격표 현황은 엑셀파일로 저장하여 대장관리 가능



- 장례식장 검색 및 등록
 - 관리연도를 지정하고 [장례식장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교육대상 장례식장을 선택 하며, 선택된 장례식장의 정보는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됨
 - 장례식장의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일반정보 확인 및 수정
 - ※설치·운영 예정자의 경우는 [영업예정] 항목을 선택하고 일반정보 입력
- 교육 수료자 검색
 - 교육실시기관의 교육 수료자현황을 검색하여 교육 대상자 등록
 - 관할행정기관, 수료자명, 장례식장명, 교육기관명으로 검색
 - ※장사지원센터에서 교육실시기관의 수료자 명단을 취합하여 제공하는 기능으로 교육결과 확인 및 대상자 등록에 활용
- 교육 대상자 등록
 - 교육대상 장례식장별로 대상자(영업자, 종사자, 영업예정자) 정보 등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구분(영업자, 종사자, 영업예정자) 등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록
 - ※이수 구분은 최초 교육대상 또는 교육면제를 선택하며, 교육면제를 선택하는 경우 면제사유를 선택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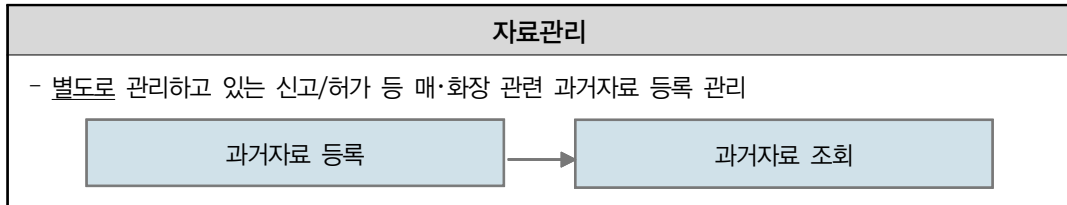
- 교육과정 정보 입력
 - 교육과정의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기관명, 문의/연락처, 정원 등 일반적인 정보 입력
 - ※소속 장례식장의 영업자·종사자가 교육을 수료한 교육실시기관의 과정 입력
- 교육과정 소개 입력 및 안내 첨부
 - 해당 교육과정 소개 정보입력
 - 지자체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안내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관리
 - ※교육실시기관의 교육과정인 경우, 교육과정 소개는 과목중심으로 간단하게 기술



- 교육과정 선택
 - 교육과정 관리에서 등록된 교육과정이 조회되면 이수자 등록을 위한 과정 선택
- 교육 대상자 검색
 - [교육 대상자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조건(영업자, 종사자, 영업예정자)과 성명으로 교육 대상자에 등록된 이수자를 검색하여 등록
- 교육결과 등록
 - 성명, 생년월일, 근무처 등 이수자의 인적사항과 이수여부(교육이수, 교육면제) 등록
- 교육이수증 발급
 - 교육결과와 [이수여부가 교육이수로 등록된 이수자에 대하여 [이수증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교육이수증 발급
 - ※교육이수증의 발급번호는 자동으로 연번이 생성되며, 수정 불가

교육실시기관 교육 수료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이수 확인을 위한 전국 교육실시기관의 교육 수료자 명단 조회 - 관할행정기관, 수료자명, 장례식장명, 교육기관명으로 수료자 현황 조회 ※장사지원센터에서 교육실시기관의 수료자 명단을 취합하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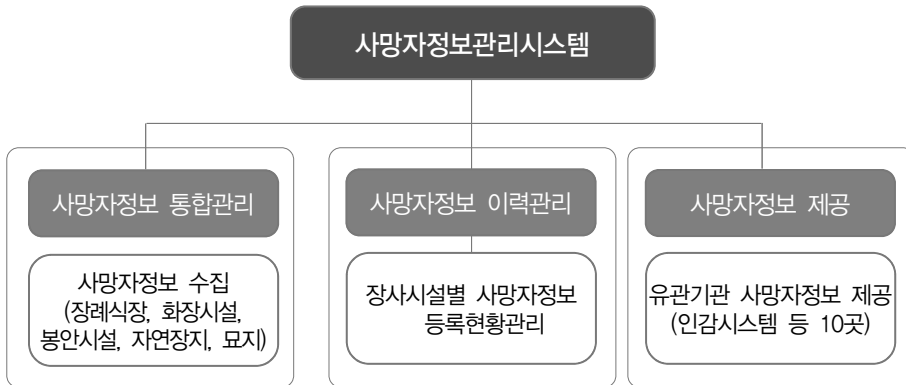
장례식장 직원(교육 대상자) 등록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하늘」의 장사시설 정보관리서비스를 통하여 장례식장 교육 대상자 파악을 위한 직원 인적사항 등록 가능 - 지자체에서는 장례식장의 직원 인적사항 정보를 참조하여 매년 교육 대상자를 등록하여 확정 ※지자체 담당자는 교육 대상자 확정 전에 장례식장에서 등록된 직원명단이 정확한지 지도·감독



- “과거자료실”에서 [자료등록] 버튼 클릭 후 보유하고 있는 신고/허가 등의 과거자료 (파일) 등록
- 관할행정구역 및 유형별 조회 가능

6 사망자정보관리시스템

1) 시스템 구성



2) 시스템 구축 목적과 기대효과

- 사망자정보 등록 의무화에 따른 장사시설(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묘지)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가능
- 사망자정보 유관기관 제공에 따른 각종 연금·복지 급여의 지급업무 등 복지급여 업무의 내실화 기여

3)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 장사시설에서 등록된 사망자정보 수집 관리

- 주요기능

- 사망자정보 : 사망자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이용일자, 최종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
- 유족 등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등

※사망자가 해당 시설로 최초 왔을 때 1번만 입력

〈사망자정보 등록〉

▶ 사망자 정보 입력

* 표시는 필수입력항목입니다.

시설선택 *	<input type="text" value=""/> ▼	구분 *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시신 <input type="radio"/> 개장유골 <input type="radio"/> 무연고
국적구분 *	<input checked="" type="radio"/> 국내 <input type="radio"/> 국외	성별 *	<input checked="" type="radio"/> 남자 <input type="radio"/> 여자 <input type="radio"/> 미확인
사망자명 *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실명확인 <input checked="" type="radio"/> 실명인증안내
사망일자 *	<input type="text"/> <input type="calendar"/>	이용일자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calendar"/>
최종 주민등록상 주소지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우편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유족 등 정보입력

* 표시는 필수입력항목입니다.

국적구분 *	<input checked="" type="radio"/> 국내 <input type="radio"/> 국외	성별 *	<input checked="" type="radio"/> 남자 <input type="radio"/> 여자
성명 *	<input type="text"/>	생년월일 *	<input type="text"/> <input type="calendar"/>
사망자와의 관계 *	<input type="text"/> ▼	전화번호 *	010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주소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우편번호"/> <input type="button" value="사망자 주소와 동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 사망자정보 이력관리

○ 사망자정보 등록내용 상세조회

- 주요기능

- 사망자정보 최초 등록일, 등록시설, 정보변경이력 현황 등 관리

※사망자정보 최종 등록시설 등 이력 추적관리 기능

〈사망자정보 이력〉

등록일자	2016-02-19 ~ 2016-02-22	사망 일자	~	사망관리번호	사망자명	[인]
------	-------------------------	-------	---	--------	------	-----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등록자	등록일자
<div style="float: right; width: 30%;"> <p>▶ 사망자 상세</p> <p>성명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p> <p>사망일자 <input type="text"/> 국적구분 <input type="text"/></p> <p>주소 <input type="text"/></p> <p>사망증명서발급기관 <input type="text"/> 사망증명서 번호 <input type="text"/></p> <p>매화장 구분 <input type="text"/></p> <p>매장지관할구역 <input type="text"/></p> <p>등록/수정자 <input type="text"/> 등록/수정시설 <input type="text"/></p> </div>				

▶ 연고자 이력																																								
등록일	등록시설	등록자	국적	연고자	주민번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8">▶ 사망정보 수정이력</th> </tr> <tr> <th style="width: 10%;">사망일자</th> <th style="width: 10%;">우편번호</th> <th style="width: 10%;">주소</th> <th style="width: 10%;">매화장구분</th> <th style="width: 10%;">매장지관할구역</th> <th style="width: 10%;">사망진단서발급기관</th> <th style="width: 10%;">사망문서번호</th> <th style="width: 10%;">등록/수정자</th> <th style="width: 10%;">등록/수정 시설</th> </tr> <tr> <td colspan="9" style="height: 50px;">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9" style="height: 50px;"> </td> </tr> </table> </td> </tr> </table>						▶ 사망정보 수정이력								사망일자	우편번호	주소	매화장구분	매장지관할구역	사망진단서발급기관	사망문서번호	등록/수정자	등록/수정 시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9" style="height: 50px;"> </td> </tr> </table>																	
▶ 사망정보 수정이력																																								
사망일자	우편번호	주소	매화장구분	매장지관할구역	사망진단서발급기관	사망문서번호	등록/수정자	등록/수정 시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9" style="height: 50px;"> </td> </tr> </table>																																								

5) 사망자정보 제공

○ 장사시설에서 수집된 사망자정보 유관기관 제공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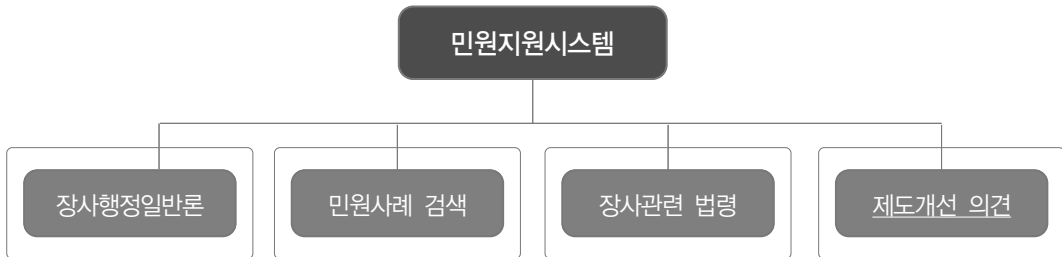
※ 現 사망자정보 제공 기관(10개 기관)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합회, 국방부, 국가보훈처, 행정자치부, 통계청, 사회복지 통합망

7

민원지원시스템

1) 시스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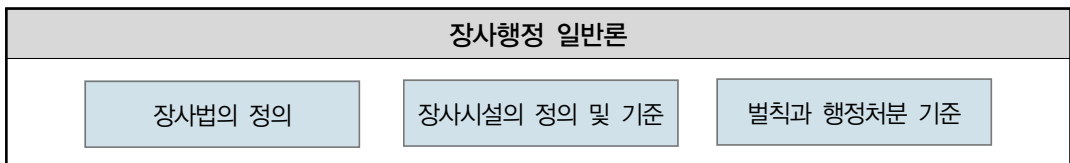


2) 시스템 구축 목적과 기대효과

- 장사관련 표준 민원사례 관리
- 장사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 공유
- 장사 민원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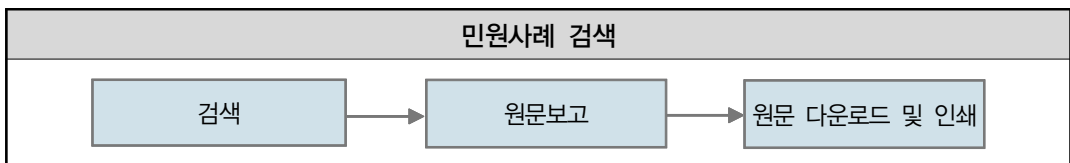
3) 민원지원시스템 이용방법

- 장사행정 일반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 및 기준사항 정보 제공

- 민원사례 검색



- 민원사례 정보 통합검색

- 검색유형 : 전체, 사실관계, 주요내용, 검토결과, 관련법령 검색 가능

<민원사례 검색>

전체
 다빈도
 온나라
 신문고
 전체

전체 (300건)	매장/묘지 (92건)	화장 (15건)	개장 (71건)	봉안시설 (40건)	자연장(수목장) (46건)	무연고시신 (12건)	장례식장 (20건)	장례지도사 (0건)	행정처분 (0건)	기타 (4건)
-----------	-------------	----------	----------	------------	----------------	-------------	------------	------------	-----------	---------

▶ 총 (300건)

【 장례식장 】 【 시설-설비-안전기준 】
장례식장 시설 기준
 등록일 : 2017-12-07 | 조회수 : 16 | 유형 : 공개 | 원본출처 : 신문고

사실관계
주요내용
검토결과
관련법령
유권해석

【 장례식장 】 【 장례식장-영업자-교육 】
장례식장 영업자 교육
 등록일 : 2017-12-07 | 조회수 : 23 | 유형 : 공개 | 원본출처 : 신문고

사실관계
주요내용
검토결과
관련법령
유권해석

【 장례식장 】 【 공설장례식장 】
공설장례식장 위탁운영
 등록일 : 2017-12-07 | 조회수 : 7 | 유형 : 공개 | 원본출처 : 신문고

사실관계
주요내용
검토결과
관련법령
유권해석

○ 장사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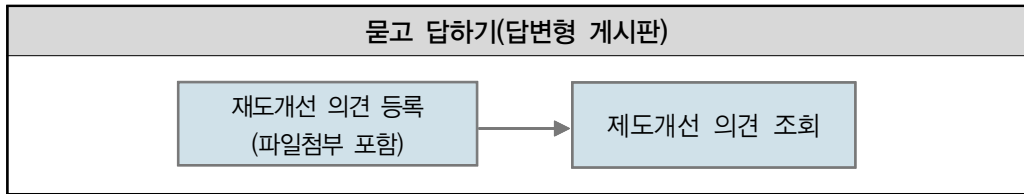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행정업무 관련 법령 바로가기(Link) 서비스

<장사관련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관련법령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5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산지관리법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농지법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학교보건법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건축법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무동산등기법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민법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input type="button" value="바로가기"/> </div> </div>

- ※ 장사업무 관련법을 바로가기(Link) 서비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13개)
- ※ 관련법을 추가 시 1577-4129로 요청

○ 제도개선 의견(게시판)



<제도개선 의견 게시판>

제목	<input type="text"/>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height: 100px;"></div>
첨부파일(최대 3개)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첨부 +"/>

- 민원업무 행정처리 사례(유권해석 등) 및 제도개선 의견 등록

8 기타

1)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사용신청 방법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시설은 시스템 사용 신청을 하고 발급받은 사용자ID로 시스템 접속
 - 시설별 해당하는 업무에 따라 시설 정보를 작성
 - 작성한 신청서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사용 신청” 공문에 첨부하여 보건복지부로 송부
 - 장사지원센터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아 신청내역을 검토 후 시설ID, 관리자ID 등을 발급함
 - 시설 관리자는 발급받은 ID로 시설 기초정보 등을 등록 후 시스템 사용
- ※자세한 시스템 사용 신청 및 기초정보 등록 절차는 장사지원센터(1577-4129)로 문의

2)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연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1	화장관리정보	「전자정부법」 제25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 화장예약정보 수집·전국 화장시설에 제공 - 실명인증신청정보 수집·승인 관리 - e하늘 이용상담 정보 등록·이력관리	1) 화장예약정보 · 필수항목 - 연고자(성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 신청자(성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연고자(전화번호) - 신청자(e-mail) 2) 실명인증신청정보 · 필수항목 - 연고자(성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 신청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휴대폰번호) · 선택항목 : 없음 3) 화장접수정보 · 필수항목	준영구

연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고자(성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 신청자(성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연고자(전화번호) - 신청자(e-mail) 4) e하늘 이용상담 정보 · 필수항목 - 유선상담(시설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 온라인상담 신청(성명, 휴대폰번호, 상담신청내용) · 선택항목 - 유선상담(없음) - 온라인상담 신청(상담분류, 상담희망 일자 및 시간) 	
2	장사행정 지원정보	<p>「전자정부법」 제25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p> <p>- 분묘실태 및 매·개장신고 정보 등록·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묘실태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항목 : 연고자, 설치자, 관리자(성명, 생년월일, 관계, 주소, 휴대폰번호) · 선택항목 : 전화번호 2) 매장신고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항목 :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관계, 주소) · 선택항목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3) 묘지설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항목 : 설치자(성명, 생년월일, 관계, 주소) · 선택항목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4) 개장신고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항목 : 신고자, 연고자(성명, 생년월일, 관계, 주소) · 선택항목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5) 화장·봉안·자연장 설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항목 : 설치자, 설치신고자(성명, 생년월일, 관계, 주소) · 선택항목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준영구

연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3	시설운영 관리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 시설내부 운영 관리	1) 매장정보 · 필수항목 : 신청인, 연고자, 납부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 선택항목 : 전화번호, e-mail 2) 봉안정보 · 필수항목 : 신청인, 연고자, 납부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 선택항목 : 전화번호, e-mail 3) 자연장정보 · 필수항목 : 신청인, 연고자, 납부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 선택항목 : 전화번호, e-mail 4) 산골정보 · 필수항목 : 신청인, 연고자, 납부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 선택항목 : 전화번호, e-mail	준영구
4	장사관련 정보 (뉴스레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장사관련 뉴스레터 신청, 발송 관리	· 필수항목 : 성명, e-mail · 선택항목 : 없음	1년(수신 거부시 까지)

※보유기간 책정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제9편

행정사항

제1장 행정사항	223
제2장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233
제3장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홍보	260

제1장 | 행정사항

1

장사업무 보완사항

1) 장사업무 관련 용어 정립

-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의 단위 : 개소
- 화장한 유골 및 분묘, 봉안묘(탑, 담)의 단위 : 기
※개소, 위, 묘 등은 잘못된 표현
- 유골, 시신의 단위 : 구
※기, 위 등은 잘못된 표현

2) 장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시행령 부칙 제2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조성되었거나 설치·조성 중인 묘지·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인묘지 등 사후신고 사항인 장사시설인 경우에는 설치·조성이 완료된 시점이 법 시행일('08.5.26) 이전인 경우로 보아야 함
- 가족묘지 등 사전신고(허가) 사항인 경우 “설치·조성 중”이라 함은 법 시행일 이전에 이행통지가 완료된 시설을 말하며, 단순히 신고(허가신청)서만 접수된 경우에는 설치·조성 중인 시설로 볼 수 없음

3) 자연장지 조성신고(허가신청) 접수시 주의사항

타인 소유 토지에 사용승낙을 얻어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불특정 다수인의 자연장지로 분양·임대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함

4) 봉안시설 설치 신고절차 간소화

- 법 제15조제5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봉안묘(탑, 담)와 가족 또는 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이때의 “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설치예정지가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이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해당 묘역 내에 동 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묘지설치 허가절차와 봉안시설 설치신고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민원인에게 불편 초래
- 따라서 새로이 묘지를 설치하여 동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묘지 설치기준에 적합하다면 묘지허가 절차와 봉안시설 신고 절차를 동시에 처리

5) 묘지면적 계산방법

- 법 제18조에 따른 분묘 등의 점유면적은
 -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의 경우, 15㎡) 이하
 - 개인묘지는 30㎡ 이하
- 동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수직선상의 위에서 아래로 보아 분묘, 시설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가로와 세로를 곱하여 계산
 -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면 끝에서부터 계산(경사면 자체는 면적에 미포함)

6)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 계산

- 사용료(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 묘지 사용자가 분묘 및 시설물 설치 등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점유면적(이하 “전용면적”)에 대하여 징수
 - 사용료 계산 : 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등 총 비용을 조성된 묘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m당 사용료에 분양된 전용면적을 곱하여 계산

○ 관리비(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 묘지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과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면적으로 구분하여 차등 징수
- 관리비 : 잔디 조성비, 별초 등 묘지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 전용면적 : 전용면적의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징수
 - 공용면적 : 공용면적 관리에 소요되는 총 비용에 조성된 묘지로 나누어 산출한 m당 관리비에 분할된 묘지를 곱한 금액 징수

7) 법인묘지 안의 묘지·봉안시설 설치 신고

- 법인묘지(공설묘지 포함) 안에 묘지·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 구비서류는 개인, 가족, 종중·문중이 묘지 또는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만 징수

8) 신고(청)서식 기재요령

○ 대상서식

-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설치(변경)허가신청서(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5호서식)
- 화장시설(봉안당)설치(변경)신고서(시행규칙 제7조, 별지제7호서식)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변경)신고서(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8호서식)

○ 기재요령

- “⑫신청(고)인”란의 신청(고)인은 신청(고)서를 해당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는 자의 인적사항 기재
- “서명(또는 인)”란의 신청(고)인의 경우
 - 개인(가족)은 설치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설치자 본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
 -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은 해당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단체 에서 대표로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

2 장사업무 통계보고

※매년 3. 31일까지 작성하여 우리 부(노인지원과)로 제출

1) 공설묘지 관리운영 현황('17. 12. 31현재)

■ 공설묘지 현황

시도	시군구	묘지명	위치	관리주체	전화번호	묘지설치현황					
						설치년월일	허가면적(m ²)	묘역면적(m ²)	총매장능력(구)	매장구수('17년포함)	향후매장가능구수

※향후 매장가능 구수 = 총 매장능력(구수) - 기 매장구수('17년 포함)

■ 관리·운영현황

○ 최근 운영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매장	개장	매장	개장	매장	개장	

2) 사설묘지 관리운영 현황('17. 12. 31현재)

■ 법인묘지 현황

시도	시군구	묘지명	위치	관리주체	전화번호	묘지설치현황					
						설치년월일	허가면적(m ²)	묘역면적(m ²)	총매장능력(구)	매장구수('17년포함)	향후매장가능구수

※향후 매장가능 구수 = 총 매장능력(구수) - 기 매장구수('17년 포함)

■ 법인묘지 관리·운영현황

○ 최근 운영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매장	개장	매장	개장	매장	개장	

■ 개인묘지 현황

시도	시군구	신고(허가)개소수 (’17년 포함 누계)	분묘설치기수 (’17년 포함)	’17년 분묘설치기수	비고
계					

■ 가족묘지 현황

시도	시군구	허가개소수 (’17년 포함 누계)	분묘설치기수 (’17년 포함)	’17년 분묘설치기수	비고
계					

■ 종중·문중묘지 현황

시도	시군구	허가개소수 (’17년 포함 누계)	분묘설치기수 (’17년 포함)	’17년 분묘설치기수	비고
계					

3) 공설 화장시설 관리운영 현황 및 화장실적('17. 12. 31현재)

■ 화장시설 설치현황

시도	시군구	화장 시설명	운영 주체	위치	전화 번호	설치 년도	시설규모		화장로수			산골장소 제공여부
							부지 (㎡)	연면적 (㎡)	계	실 가동	대기	

■ 관리·운영 현황

○ 최근 화장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계	시신	죽은 태아	개정 유골	계	시신	죽은 태아	개정 유골	계	시신	죽은 태아	개정 유골	

- 시신 화장실적

화장시설명	내외국인 구분	성별	주소	출생년월	사망년월	화장한 유골의 처리
계						

- 죽은 태아 화장실적

화장시설명	성별	임신주수	사망년월	신고인 주소	화장한 유골의 처리
계					

- 개정유골 화장실적

화장시설명	성별	사망년도	현존지(개정신고지)	화장한 달	화장한 유골의 처리
계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화장시설 운영개선 내용 및 주요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총예산	인건비	시설 등 기능보강비	국고보조 예산내역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반영 현황	운영개선내용

○ 2017년 화장시설 개/보수 내역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화장 시설명	화로 번호	설치 일자	개/보수 일자	구분	공사 일수	공사 금액	국고 금액	개/보수 내용
						전체/ 버너/ 화로/ 배기				

4) 공설봉안시설 관리운영 현황('17. 12. 31현재)

■ 공설봉안시설 설치현황

시도	시 군 구	봉안 시설 구분	명칭	위치	관리 주체	전화 번호	설치 년도	시설규모		봉안현황		
								부지 (㎡)	연 면적 (㎡)	총 봉안 능력 (구)	기 봉안 구수 ('17년 포함)	향후 봉안 가능 구수

※구분 : 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봉안탑 등

※향후 봉안가능 구수 = 총 봉안능력(구) - 기 봉안구수('17년 포함)

■ 관리·운영 현황

○ 최근 봉안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봉안시설 운영개선 내용 및 주요예산내역

총예산	인건비	시설 등 기능보강비	2015년~2017년 국고보조예산내역	2015년~2017년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반영 현황	운영개선 내용	비고

- 운영개선 내용(배수로·도로·축대 등 시설개선, 조경, 유족대기실(난방/냉방/ 기타) 등)

5) 시설봉안시설 관리운영 현황('17. 12. 31현재)

■ 종교단체 및 법인봉안시설 설치현황

시도	시 군 구	봉안 시설 구분	명칭	위치	관리 주체	전화 번호	설치 년도	시설규모		봉안현황				
								부지 (㎡)	연면적 (㎡)	총 봉안 능력 (구)	기 봉안 구수 ('17년 포함)	'17년 봉안 구수	향후 봉안 가능 구수	

※구분 : 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봉안탑 등

※향후 봉안가능 구수 = 총 봉안능력(구) - 기 봉안구수('17년 포함)

■ 개인, 가족, 종중·문중 봉안시설 설치현황

시 도	시 군 구	이용 구분	봉안 시설 구분	명칭	위 치	관리 주체	전화 번호	설치 년월일	규모		봉안현황			
									부지 (㎡)	연면적 (㎡)	총 봉안 능력 (구)	기 봉안 구수 ('17년 포함)	'17년 봉안 구수	향후 봉안 가능 구수

※이용구분 : 개인, 가족, 종중·문중

※시설구분 : 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봉안탑 등

※향후 봉안가능 구수 = 총 봉안능력(구) - 기 봉안구수('17년 포함)

6) 공설자연장지(수목장림) 관리운영 현황('17. 12. 31현재)

■ 공설자연장지 조성현황

시도	시군구	명칭	조성형태	위치	조성자	전화번호	조성년월일	조성면적(m ²)	자연장 현황				
									총 자연장 능력(구)	기 자연장 구수('17년 포함)	'17년 자연장 실적	향후 자연장 가능 구수	

■ 관리·운영 현황

○ 자연장지 운영 주요예산 내역

총예산	인건비	시설 등 기능보강비 등	2015년~2017년 국고보조예산 내역	2015년~2017년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반영 현황	향후계획 (이전계획안 등)	비고

7) 사설자연장지(수목장림) 관리운영 현황('17. 12. 31현재)

■ 사설자연장지 조성현황

시도	시군구	조성주체	명칭	조성형태	위치	조성자	전화번호	조성년월일	조성면적(m ²)	자연장 현황				자연장 현황(구)
										총 자연장 능력(구)	기 자연장 구수('17년 포함)	'17년 자연장 실적	향후 자연장 가능 구수	

8) 장례식장 관리운영 현황

■ 장례식장 설치현황('17. 12. 31현재)

시도	시군구	공사 시설 구분	명칭	위치	운영 형태	대표자	전화 번호	영업 개시 년월일	부지 (㎡)	건평 (㎡)	빈소 수 (개소)	안치 능력 (구)

※운영형태 : 직영, 임대

9) 장사업무 담당 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부서명	직급	성명	담당기간 (월)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10) 묘지관리 현황

■ 묘적부 관리실태

시도	시군구	묘적부 등록된 분묘수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비고

■ 행정처분 실태(중복표기 가능)

시도	시군구	처분건수 (합계)	신고의무 위반	설치기준 위반	시설물 설치 위반	설치금지 구역 위반	비고

제2장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1 목적

장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업무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 실적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지원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비용의 보조)

2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따름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련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감독을 행함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군·구의 사업 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목적과 효과를 분석·검토한 보조사업 수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3

2018년 국고보조사업

1) 지원기준

○ 일반사항

- 화장시설·봉안당(담) 신축, 화장로 개·보수, 자연장지 조성 등은 각 사업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 각 사업별 예산지원기준을 초과한 부분의 예산은 지방비에서 부담
- 각 사업별 예산지원은 부대시설 등을 제외한 본 건물에 대하여서만 지원

○ 사업별 지원기준단가

- 화장시설 신·증축 : m²당 1,500천원(화장시설 건축물 신·증축공사비에 한정)
- 화장로 신·증설 및 교체 : 기당 360,000천원(화장시설 신·증축에 수반되는 신·증설 화장로 설비비용)
- 자연장지 조성 : m²당 100천원(수목장립의 경우에는 m²당 10천원)
- 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 m²당 100천원
- 봉안당(담) 신축 : m²당 1,500천원(봉안담 m²당 1,050천원)
- 화장로 개·보수 : 기당 220,000천원

○ 국고보조율

- 화장시설 신·증축, 화장로 신·증설, 자연장지 조성, 봉안당(담) 신축 : 70%
- 화장로 개·보수 : 50%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국고보조예산 지원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 (2)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구에서 18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할 경우 '18.7.31까지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18.7.31.까지 사업포기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고 반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3) 국고보조금 신청 시 장사시설의 신축인 경우에는 총 국비지원액에 대하여 1차, 2차년도로 나누어 각각 50%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함(단, 연내 완공 가능한 시설은 100% 지원)
- 시설완공이 2 회계연도 이상인 경우 민원발생 가능성, 사업 진행 정도 및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국비를 차등 교부할 수 있음

〔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 지원기준 〕

- 화장로 평균 가동률이 50% 이상인 경우 우선 지원
- 3년마다 화장로 주요 구성품을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동률이 70% 이상일 경우에는 2년 후 교체도 지원
- 화장로 가동에 필수적인 구성품(내화벽돌, 필터 등)의 교체를 지원하고, 1년마다 교체하는 소모품은 가동률 등을 감안하여 별도 검토

○ 제출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서식 제1호)
- 사업계획서 1부(서식 제2호)
- 시·도지사 검토의견서 1부(서식 제3호)
- (화장시설 신증축인 경우) 부지 선정 지역 주민 대표가 포함된 자문위원회(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활동실적이나 자문(추진)결과 서류 1부

○ 사업계획서와 시·도지사 검토의견서는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함

※ 화장시설 증축 및 화장로 개·보수 : 1/4분기 내 교부신청
장사시설 신규 설치 : 절차완료 후 2/4분기까지 교부신청

[서식 제2호]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 필요성 및 지원사유 등 기술

3. 사업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등 추진경위
- 의회등의 심의통과 여부, 부지확보여부, 건축설계 및 건축 진행 상황 등
- 장사시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실적

4. 사업내용

- 사업기간, 규모 및 예산 등 기술
- 사업추진일정
- 연차별 사업 및 투자계획 등
- 장사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등
 - ※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별 순회설명회 등 활용(쪽)

5. 사업수행주체

6.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계획

7. 사업의 효과

8. 예상 문제점과 대책

[서식 제3호]

시·도지사 검토의견

1. 보조사업 수행자

기 관 명		기 관 장	
소 재 지			
사 업 명			

2. 의견내용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적정성
- 사업추진 가능여부
- 사업의 효과
- 기타사항

3. 2019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가. 예산요구

- 2019년 국고보조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작성양식에 의거 각 단위 사업별, 보조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예산신청 작성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각 시도에는 시군구에서 신청한 사업에서 장사시설 수급계획 및 시설 현황, 지방비 확보 및 사업집행가능성 등 지역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별표 1)
- 예산관련 부처와 예산 협의시 각 시·도의 특수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필요성, 목적 등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모든 예산은 신청이 있어야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신청이 누락되어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요구 및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제출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함

나. 제출기한 : 2018. 3. 30.

다. 예산지원사업

- 화장시설 신·증축, 화장로 신설·증설·개·보수, 자연장지 조성, 봉안당(담) 신축

라. 2019년도 국고지원 기본방향

- 신청사업의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사전이행절차의 완수 여부, 용역비 등 지방비부담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여 예산지원
-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인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집단민원 해소, 실시 계획 등 제반여건이 완료되어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
 - 사업추진과정에서 집단민원으로 사업 중단 등의 소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업 전 협의대상 주민 범위를 해당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향을 받는 인접 행정구역도 포함하여 집단민원을 해소
- 집행성과와 연계하여 단년도 예산 편성
 - 최근 5년간 국고 지원현황 및 집행실적 반영
 - 예산집행실적 등 성과가 부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관할 시·도에서 사전 검토 후 '19년도 예산에 편성할지 여부 판단
- 국고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 및 설득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주민 참여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전 실시 필요
 - ※ 친자연적 장례문화 순회설명회 등 활용
 - ☞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고시 전 일정기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의무사항)
 - ☞ 장사시설 설치·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전에 “장사시설은 주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거부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반드시 필요
- 기타(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지역수요, 화장률 등 감안)
- 국고지원 우선순위
 - ☞ 광역, 특별시·도, 인근 지자체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일부 장사시설만 설치한 지자체가 종합장사시설로 구축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 ☞ 지역주민 대표가 포함된 자문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실적과 자문 추진결과 제출

- 화장시설 신·증축, 화장로 신·증설 및 개·보수 등 화장시설 확충 사업
- 자연장지 조성사업
- 봉안당(담) 신축사업

마. 2019년 예산신청서 : 별표 1, 별표 2

[별표 2] 예산신청서 작성요령

사업명 : 2019년 ○ ○ ○ 사업 (* 신규 또는 계속 기재)
--

시·도명 :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13년~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요구액		
	보조액	집행액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필요성 및 지원사유 등을 기술

(나) 사업내용

- 사업기간, 규모 및 물량 등 주요지원내용 기술
- 위 치 :
- 사업기간 :
- 사업량 :
- 사업비 : 규모 및 물량 등 주요지원내용 기술
 - 소요물량 및 적용단가 산출기준(근거) 등 기술
- 주요시설 :
- 사업수행주체(지자체, 산하공공기관 등)
- 사업집행절차
 - 사업추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등의 형식으로 기술

(다) 사업추진 경위 및 현황

- 최초 시작년도 등 추진경위
-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반영 여부
- 중도에 사업추진이 지체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
- 사업추진 현황
 - 의회 등의 심의통과 여부, 부지확보 여부, 건축설계 및 건축진행 상황 등
 - 환경영향 평가 및 도시계획 인가 등 절차완료 여부
 - 집단민원 및 보상절차 완료 여부 등
- 재원확보상황
 -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도비·시(군)비 구분) 금액 및 비율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율(%)	비고
		도비	시비		

- 연차별 투자계획(표 등의 작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술)

(단위 : 백만원)

년도	금액		산출근거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17까지			
2018			
2019			- 화장시설 신축(예시) (국비) 1,500,000원×3,500㎡×70% =
2020			
2021			
2022			

○ 세부시설 규모 및 시설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규 모	재 원 별				산출 내역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용지매입 및 보상비	사업부지, 도로부지					
화장시설	면적, 공사비, 화장로					
화장로 개·보수	화장로, 교체기기 내역					
방안시설 신축	면적, 건축비, 안치구수 등					
자연장지 조성	사업량, 공간조성비, 조경공사비 등					
부대시설	건축비 등					
설계 및 감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 등					
기타						

(라) 사업지역 현황

- 사업지역 소재지
- 입지조건 및 입지선정기준(사유)
 - 광역입지여건
 - 대상지 입지여건
 - 입지선정 기준(사유)
- 화장수요 추이('13~'17)

(단위 : 명, %)

년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고
총인구						
사망	계					
	매장					
	화장					
	화장률					

- 인근 시·도 및 시·군·구의 화장시설(봉안당·묘지)의 화장(봉안·매장) 현황('13~'17)
- 당해 시(군)의 화장시설(봉안당·묘지) 이용실태
 - 화장시설(봉안당·묘지) 이용권역
 - 화장시설(봉안당·묘지) 설치 시 이용가능지역
 - 예상 이용 건수 및 수급전망
- 사업지역 등의 민원현황 및 처리상황

민원 발생시기	민원내용	처리상황	비고

〈주민 동향 및 진행상황〉

- 자문회의 등 활동실적 및 자문 결과 현황
- 주민 참여 및 장사시설 인식개선 교육·홍보 실시 현황

년월일	건명	대상	인원	주요내용	비고
				예 :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마) 사업 기대효과

- 현 수준과 투자 후 개선효과를 지표로 비교
 - 환경·국토이용, 경제성·수익성, 주민수혜도 등 측면에서 비교
- 비용/편익분석이 가능한 경우는 그 예측치를 기술
 - 계량화가 어려운 사업은 기대효과를 설득력 있게 기술
- 직·간접 기대효과 망라
-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편익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 제시
 - 보고서 작성자(작성기관), 작성일 명시
-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세부적으로 기술

(바) 축소 또는 폐지대상사업

- 동 사업으로 인해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할 기존 사업을 제시
 - 기존 봉안시설의 폐지 및 기존 시설의 사업현황

(사) 기 타

- 위 사항에서 제외되었으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

2. 2019년도 예산요구

(가) 사업추진방향

-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 예산확보의 시급성, 규모의 적정성 관련 자료 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여건 변화
-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정책방향
- 민영화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계획

(나) 주요 검토 요구사항

- 우리 부 예산심의 시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 예산증감 요인(규모, 단가 등)
 - 예산지원조건 및 방식 변경(보조율 인상, 정액·정율, 항목 신설 등)
 -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

(다) 연차별 투자 및 요구개요

(라) 예산집행 현황 및 2019년도 예산요구

- 예산반영 추이

(단위 : 억원)

사업명	'14	'15	'16	'17	'18
○ 합 계					
▪ 세부사업					

-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액 기준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합 계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세부사업명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세부사업명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 이·전용액 및 전용재원, 불용액, 이월액 내역 및 사유 포함
-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내에 지방비 집행실적을 기재
- 예비비 사용이 있을 경우, 이·전용에 포함하고, 예비비 액수를 별도로 표시

○ '19년도 요구내용 및 산출내역

-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요구내역을 기재
- 사업내용 중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
- '19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과 물량·단가 등의 산출내역을 개조식으로 기술(물량, 단가, 보조율 등으로 구분)
- 국고지원 필요성, 사업 우선순위, 타 시군구 사업과의 차별성 등 지원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기재

(마) 기타

- 관련 규정과의 관계 및 관련 부처별 조치상황
- 국내 및 유사사업과의 비교
- 지도·도면·공문서 등 증빙자료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계획보고서,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 각종 계획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주민의견 청취(열람) 시 주민의견, 각종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미조치 사유 포함)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

3.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등 보고

(가) 2018년도 국고보조금 중간정산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18년도 장사 사업 국고보조사업 집행상황을 2018. 8. 30까지 보고하여야 함

(나)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사업변경승인 신청서를

-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사업량의 변경

(다) 사업집행 실적보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2018년도 장사시설 국고보조사업 집행실적을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라)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요청

-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출연금 포함)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월할 수 있으므로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2018년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로 국고보조금 이월승인을 요청 하기 바람(서식 제6호)
 - ※국고보조금 이월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은 다음 연도에 집행잔액 전액 국고반납 조치

[서식 제4호]

2018년 국고보조예산 중간정산 보고

1. 사업실적

사업별	사업명	사업계획	사업실적	진도(%)	비고

※사업진도 80% 미만은 부진사유 첨부

2.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별	사업명	예산			실적			집행잔액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3. 향후 추진계획

[서식 제5호]

2018년 국고보조예산 집행실적보고

1. 사업실적

사업별	사업명	사업계획	사업실적	진도(%)	비고

※ 사업진도 80% 미만은 부진사유 첨부

2.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별	사업명	예산			실적			집행잔액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3. 사업효과 분석

- 시설물 설치에 대한 대표적인 사진 각 1매 첨부(착공 전, 공사진행, 완공 후)
- 준공검사 또는 기성고 확인증명서 관계서류 첨부

[서식 제6호]

2018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요청서

1. 보조사업 개요

회계·기금	일반회계	중앙관서명	보건복지부
보조사업 유형	자치단체 자본보조		
보조사업명			
사업내용	사업 목적, 지원대상, 사업내용 등을 요약 기재		
사업기간	2018.1.1.~12.31	사업비 부담 비율	국비 00% (지방비 00%, 자부담 0%)
보조사업자	기관명	○○도지사(○○시·군·구청장)	
	담당자(연락처)		

2. 보조사업 추진 현황(2018. 00월 말 기준)

○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국비 수령액	집행액	집행 잔액	불용 예상액	이월* 요청액

*이월 :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

○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첨부)

-

○ 집행상 애로사항(문제점)

- 애로사항
- 그간 조치결과

3. 이월 요청사항 : 명시이월(또는 계속 비이월) 또는 사고 이월

○ 이월예산 집행계획 및 사업 종료시한 :

○ 이월 사유(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세부명세는 별도 첨부)

참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1. 추진 배경

- 2014.12.4. 정부 합동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고보조금 개혁 방안 추진(참고 1)
-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구축하고, 2017년부터 모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등 업무처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화
 - ※참고 2. e나라도움 구성도, 참고 3. e나라도움 업무 흐름도 참조

2. e나라도움 구축 목표

가. 중복·부정수급 방지

- 보조금 정보 통합관리로 사업 유사중복 검증, 수급자격 및 지출증빙 검증, 부정 징후 모니터링, 가격 검증 등 실현

나. 업무 효율화

- 전자증빙 기반의 실시간 지급 관리, 업무 표준화, 온라인 정산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다. 대국민 서비스 제고

- 수혜 가능한 보조사업 정보 조회(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보조금 운영 현황 및 성과공개 서비스 개선, 투명성 제고

3. e나라도움 사용 대상

가. 지자체보조사업

- 지자체보조사업 중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국고보조금은 e-호조를 통한 지출 내역이 e나라도움에 자동적으로 연계

- 지자체보조사업 중 민간에 이전하는 보조사업은 각각의 민간보조 사업자가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지출행위 등 모든 업무 처리
 -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에서 보조금 비목*이 아닌 유사 비목**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관리
 -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 ** 출연금, 민간위탁금,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대상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등
 - 사용 대상 보조사업 : 노인 공익활동, 시장형 사업단, 인력파견형 등 지자체 보조사업

나. 민간보조사업

- 중앙관서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직접 집행하는 모든 민간보조 사업자(상위 보조사업자)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아 집행하는 하위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모든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
 - 사용 대상 보조사업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재능나눔, 고령자 친화기업등 민간보조사업

4. e나라도움의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

- 새로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개통에 따라 모든 민간보조금은 현재의 선 일괄 지급 후정산 체계에서 2017년 1월 이후부터는 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한 후 실시간 집행 체계로 변경됨(참고 4)
- 정부,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교부하는 보조금은 예탁기관에 예치
 - (현재 모습)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가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의 국고보조금 전용 계좌에 일괄 이체한 후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출행위로 집행, 사후 정산
 - (미래 모습)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가 예탁기관에 보조금을 예치하고,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의 각각의 지출행위시마다 실시간으로 검증한 후 지출행위를 승인하여 거래처 등으로 이체 완료 및 온라인 정산 등

5. e나라도움 단계별 처리과정

가. (1단계) 사전 검증

- 수급자 자격 검정, 중복 수급자 체크, 부정수급 이력 및 국세청 체납 등을 사전 검증 작업 진행

나. (2단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 모든 보조사업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국고보조금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다. (3단계) 집행·사후 검증

- 국세청, 은행, 카드사 등과 연계하여 허위 증빙서류를 적발
- 이중 취업자의 중복 정산이나 허위 근로자 여부 검증
- 집행 증빙의 진위 여부, 중복 사용 등을 자동 검증, 미사용 보조금 및 이자 발생분 확인 등을 집행 후에 검증

6.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 모든 민간보조사업자는 필요한 사항을 조치
 -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등 모든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이 제공하는 업무 매뉴얼을 활용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모든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대상 교육* 실시 방안 등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추진단과 협의하여 자체 교육 실시도 가능
 - *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의 전문강사가 전담
-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사용자 교육계획을 별도 통보할 경우 적극 참여

7. 협조사항

- 추후 있을 시스템 사용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 필요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추진단 콜센터(1670-9595) 적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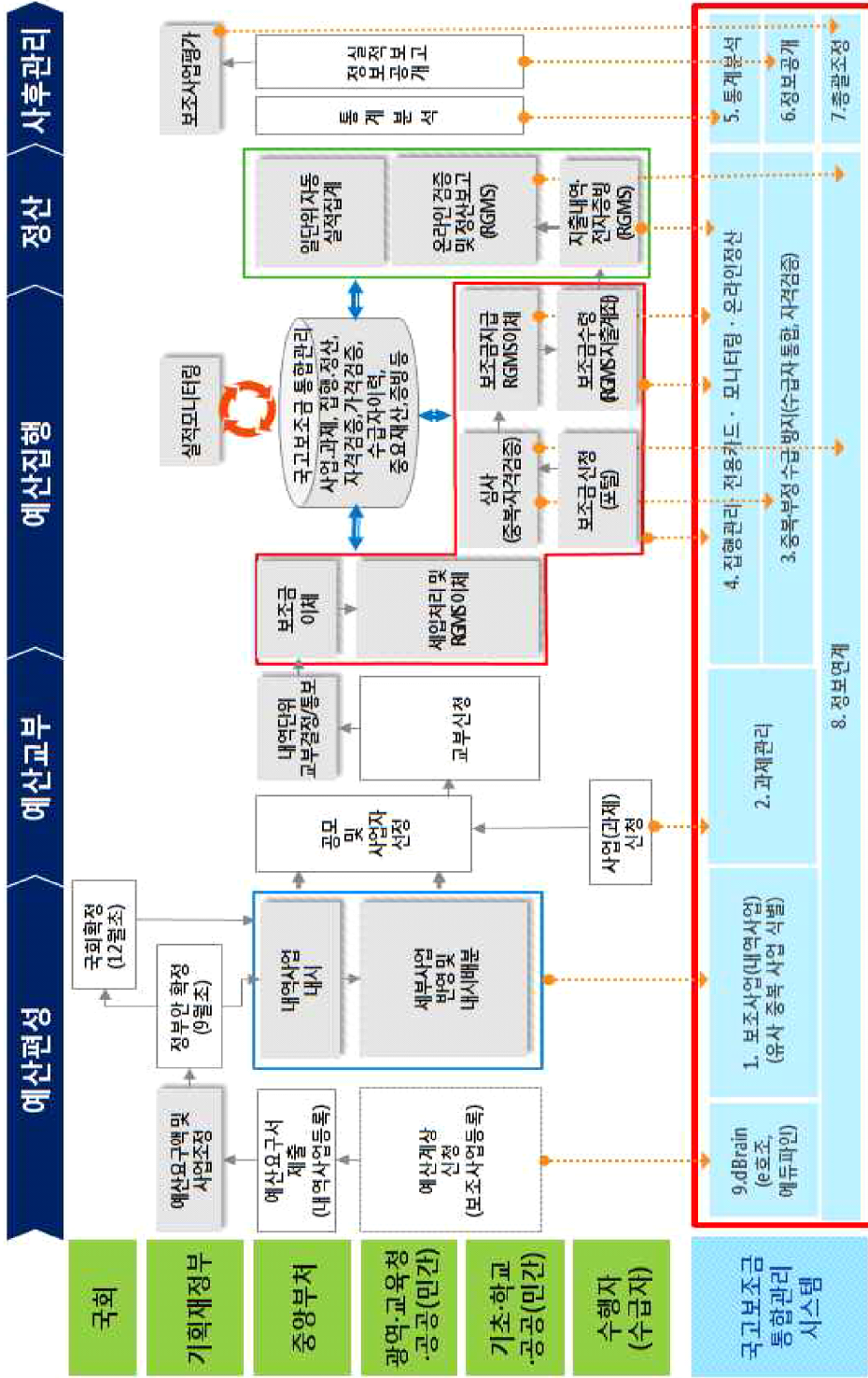
(참고 1)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종합대책 추진 전·후 비교

항 목	현 행	개 선
보조금 관리 컨트롤 타워	〈신설〉	○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기획재정부
보조금 정보관리	〈신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보조금 신고 인프라	○ 신고센터 분산 - 복지 분야 : 국민권익위 - 비복지 분야 : 각 부처 ○ 포상금 한도 : 1억원	○ 국민권익위로 단일화 ○ 포상금 한도 증액: 2억원 ○ 기관 포상제 도입
보조사업 운영 관리	〈신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정 ○ 보조금 운영·관리 매뉴얼 마련
보조사업자 선정 제도	○ 부처별, 사업별로 기준 상이 ○ 선정 과정에 제3자의 부당행위 개입	○ 선정기준, 절차의 명확화 *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 ○ 보조금 운영·관리 매뉴얼 마련
보조사업자 정보 공시	〈신설〉	○ 10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 시 보조사업자의 이력, 사업자 정보 등 공개 의무화
민간보조사업자 외부회계감사	〈신설〉	○ 보조금 10억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외부감사 의무화
민간보조사업자 벌칙·책임	〈신설〉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제 ○ 징벌적 과징금제(수급액의 5배) ○ 보조사업 참여 영구 금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신설〉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클린카드 개선 * 유사 유흥업소 등 제한 대상 확대
정산 절차	〈신설〉	○ 정산 표준화 * 표준 정산지침 마련 ○ 3억원 이상 보조사업은 외부 위탁 정산 의무화 ○ 미정산 보조사업자 패널티 부과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등 사후관리	〈신설〉	○ 중요재산 부기등기제 도입 ○ 중요재산 처분 승인 없이 양도, 담보 제공 등에 대한 처벌

(참고 2) e나라도움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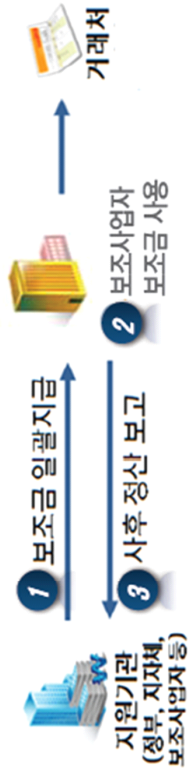
(참고 3) e나라도움 업무 흐름도



(참고 4) e나라도움의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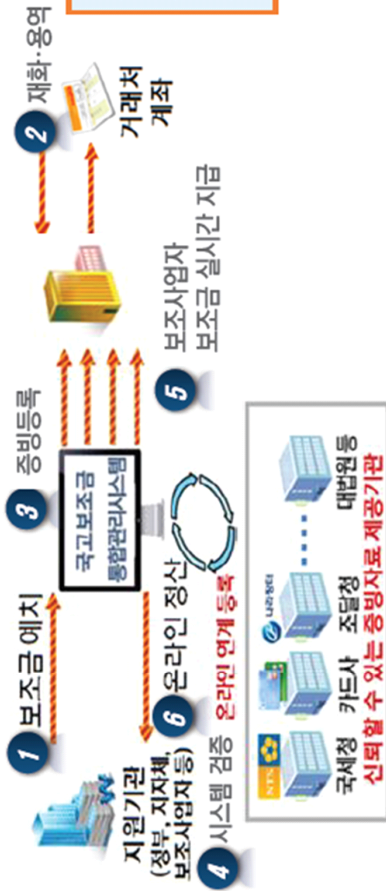
실증빙 기반 실시간 집행 구현

현재모습(As-Is) : 선 지급 후 정산



- ✓ 보조사업자 부도 폐업시 '보조금 머튀'
- ✓ 가짜 영수증 증빙 중복 사용
- ✓ 보조금 오·유용 소지

미래모습(To-Be) : 실시간 집행



- ✓ 실시간 거래처 검증
- ✓ 보조금 오·유용 여지 차단
- ✓ 집행 패턴 분석 및 통제

※ 보조금 예치는 중앙·지자체 등에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시에만 적용

제3장 |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홍보

1 목적

- 자연장을 중심으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하고, 허례허식을 배제하여 건전하고 품위 있는 장례문화를 활성화하며,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인식을 개선하기 위함
- 법적 근거 : 장사법 제4조제1항*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2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순회설명회

- 대상 : 노인 및 중장년 여론 주도층(회당 최소인원 80명)
- 장소 : 지자체 강당,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회관 등
 - 현장견학은 인근 공설자연장지에서 수행
- 내용 : 자연장 및 건전장례 안내(강의)

구 분	내 용	시 간
행사 전	사전 홍보영상 시청, 교재 및 설문지 등 배포	10분
순회설명회	교육소개 및 안내	60분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안내	
	장수행복노트 작성 및 질의응답	
중 식	중식 제공(1인당 7천원)	60분
현장견학	공설자연장지 견학(선택사항)	60분

* 중식 및 기념품, 배상책임보험, 현장견학 시 차량(버스) 제공

○ 주관 : 장사지원센터(한국장례문화진흥원, <http://www.kfcpi.or.kr>)

- 법적 근거 : 장사법 제33조의4제1항제5호*

* 보건복지부장관은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장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문의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사업운영부(전화 02-6930-9321, 팩스 02-6930-9393)

○ 교육계획(일정) 수립 및 신청

- 한식·윤달·추석 등 장례문화에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에 집중 편성

- 읍·면·동별로 오전·오후 또는 연일 순회토록 효율적으로 편성

- 당해 연도에 일정수립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다음 연도에 편성

-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 및 일정 제출

시도	시군구	읍면동	교육일정					비고
			월/주	장소	인원	담당자	연락처	

○ 참고사진

〈강 의〉



〈기념품 및 중식 제공〉



〈공설자연장지 현장 견학〉



제10편

부록

제1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주요 개정내용	265
제2장 친환경 화장용품 권장에 관한 운영지침	276
제3장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매뉴얼	279
제4장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소방안	291

제1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주요 개정내용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주요 개정내용

1)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정 1961.12.5., 법률 제799호)

■ 주요내용

- ① 매장 또는 화장은 사망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하도록 함
- ② 매장·화장 또는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지, 화장지 또는 개장지의 구청장(서울 특별시의 경우)·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
- ③ 시신의 매장이나 화장할 자가 없거나,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신현존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매장이나 화장할 하도록 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 ④ 서울특별시·시·군은 시신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 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⑤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당의 설치나 시신의 운반업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⑥ 설치자가 직접 관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에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관리인의 본적, 주소, 성명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 하도록 함
- ⑦ 묘지·화장장등의 관리인은 매장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신고증을 수리하지 않으면 매장이나 화장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⑧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시설·대장, 서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나 그 관리인 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⑨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이전, 그 시설의 개수 또는 사용금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⑩ 묘지, 화장장, 매장및 화장취체규칙(1912, 조선총독부령 제123호)을 폐지함

2)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68.12.31., 법률 제2069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① 법률의 제명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로 개칭함
- ② 매장· 화장 및 개장의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도록 함
- ③ 사설묘지등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④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금지 구역을 명문화함
- ⑤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이전 및 허가취소규정을 개정함

3)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73.3.13., 법률 제2605호)

■ 개정이유

묘지제도의 개선으로 국토의 활용면적을 확대하여 국토의 산업화를 기하고 묘지 및 분묘신고에 따르는 묘지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①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20㎡를, 합장의 경우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② 묘적부제도를 법제화하고 분묘에 대한 일제신고제에 의하여 연고자 없는 분묘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③ 분묘 및 유골상자의 형태와 사설묘지·사설 화장장 및 사설납골당의 설치자의 준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개수 또는 그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④ 벌금형의 벌칙을 강화함

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81.3.16., 법률 제3389호)

■ 개정이유

납골묘지 제도를 도입하여 화장의 확대를 유도·촉구함과 동시에 묘지면적 및 묘지내의 시설물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사설묘지등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적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규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① 종전에는 매장은 땅에 묻는 경우만을 뜻하였으나 땅에 납골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납골묘지제를 신설함
- ② 묘지의 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크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경영자는 그 시설의 관리비 또는 사용료등을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도록 함
- ④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⑤ 묘지면적·시설물 크기 등의 기준위반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5)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 개정이유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 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① 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 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② 공사채등록법·관세법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 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 ③ 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6)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 개정이유

현행 법률 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 ②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 ③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성시로 정비함
- ④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 ⑤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7) 장사등에관한법률(전문개정 2000.1.12., 법률 제6158호)

■ 개정이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증가억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등에 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타 불법묘지 연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①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② 공설묘지, 법인묘지, 종중·문중묘지, 가족묘지등 집단화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이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묘지면적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③ 공설묘지, 법인묘지, 종중·문중묘지, 가족묘지, 개인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는 그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되, 15년씩 3회까지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의무적으로 이를 화장 또는 납골하도록 함
- ④ 토지 소유자 또는 묘지 연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
- ⑤ 불법묘지의 연고자가 당해 묘지의 이전·개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8)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15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설묘지·공설 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사원 내에 설치하는 경우와 개인·가족·종중·문중의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장례식장의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9)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6841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관련법령 개정으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 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로 개정

10)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관련법령 개정으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 본문 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개정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7.5.25., 법률 제8489호)

■ 개정이유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묘지 등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방법에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관리자에게 장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를 정착

■ 주요내용

- ① 자연장제도 도입
- ②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
- ③ 사설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및 신고
- ④ 봉안묘의 시설기준 제한
- 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차등부과
- ⑥ 사설장사시설업자에 대한 관리금 적립의무 부과
- ⑦ 장사시설의 정비·개선 및 사용제한명령

- ⑧ 법률의 한글화
- ⑨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 ⑩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9.12.29., 법률 제9847호)

■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개정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0.5.31., 법률 제10331호)

■ 개정이유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 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개정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1.5.30., 법률 제10741호)

■ 개정이유

국가장법 개정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3호 중 “국장·국민장”을 “국가장”으로 개정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1.8.4., 법률 제11008호)

■ 개정이유

최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장례의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장례서비스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나, 현재 실질적으로 장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장례지도사는 민간단체에서 장례 관련 자격검정을 운영하고 있어, 자격증남발 및 전문성·신뢰성 부족 등으로 양질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장례지도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불공정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①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도입

- ②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기준 및 신고
- ③ 기존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2.2.1., 법률 제11253호)

■ 개정이유

장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화장시설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국가의 요보호 계층에 대한 공공부조와 공설화장시설 지역주민의 공설 화장시설 사용권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①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종종·문중자연장지 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②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관내·관외 화장비용의 격차가 커서 관외 기초 생활수급자 등이 화장시설을 이용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대상]

법 률 명	대상 구분
독립유공자예우법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예우법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이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보훈대상자지원법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예우법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법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예우법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예우법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제대군인지원법	중·장기복부 제대군인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13.6.17., 대통령 제24613호)

■ 개정이유

개정 전에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의 자연장지 조성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연장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개인·가족자연 장지에 한정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중에서도 일반주거지역 등 일부 지역에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함

■ 주요내용

구 분	조성불가지역	조성가능지역(완화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5.1.28., 법률 제13108호)

■ 개정이유

장사시설 내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장례식장영업의 신고제 전환 등을 통하여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장사정보시스템 및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목적

■ 주요내용

- 즉시 시행('15. 1. 28.)
 -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에서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제24조, 제29조)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제5조, 제13조)
- 1년 후 시행('16. 1. 29.)
 - 법인 장사시설 등에 가격표 반환에 관한 사항 표시의무 신설(제24조제2항)
 - 장사시설 폐지 시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시신·유골의 사후처리와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 의무 부과(제26조제2항·제3항)
 -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 가격표 게시·등록, 종사자 교육 의무 신설(제29조)
 - 장사정보시스템 및 장사지원센터 구축근거 신설(제33조의2, 제33조의4)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5.12.29., 법률 제13660호)

■ 개정이유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2001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 분묘개장에 따른 국민의 반감 및 국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며, 수목장림의 장려를 위해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 및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하며, 공설장사시설도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장례용품의 구매·사용강요 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8개월 후 시행('16. 8. 30.)

-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대해 사설장사시설의 가격표 게시·등록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장례용품 등의 구매·사용 강요행위를 금지함(제13조제5항)
-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이 의제되는 묘지의 종류 중에서 법인묘지를 삭제하고, 의제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제14조제5항·제6항)
- 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변경하고, 가족 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하며, 이의 의제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제16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8조의2 신설)
-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로 한정하고, 사망자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3조의3제1항 및 제42조제1항제12호의6)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7.12.29., 법률 15269호)■ **개정이유**

장사시설 이용자가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례용품까지 포함한 과다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 방지 목적

■ **주요내용**

- 즉시 시행('17. 12. 29.)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종전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정비(제29조의4제2호)
- 6개월 후 시행('18. 6. 20.)
 -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장례식장 임대료),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제1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9조)
 - 거래명세서 미발급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31조, 제32조, 제42조)

제2장 | 친환경 화장용품 권장에 관한 운영지침

1 목적

-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화장시설은 환경적 관련성이 높은 장사시설로서 화장을 하는 과정에서 화장용관, 부속용품에서 배출될 개연성이 있는 유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함에 있음
- 화장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자·종사자, 관계공무원은 유족들이 화장용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 화장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및 홍보

2 친환경 화장용 관 권장기준

- 재 질
 - 화장 시 쉽게 연소될 수 있는 재질로 구성되도록 함
 - 관 안정성을 위해 흔들림이나 파손의 우려가 없도록 충분히 견고한 재질로 구성되어야 함
 - 보편화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질(예: 오동나무)로 구성되어야 함
 - 유해물질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친환경 재질로 구성되어야 함
 - 관 도장재료는 천연도료이어야 함
- 크 기
 - 관의 크기(외경)는 길이 1,850mm, 넓이 482mm, 높이 360mm 내외로 함
 - 관의 두께는 30.3mm 이하로 함

○ 형 태

- 시신을 완벽하게 덮을 수 있도록 밀폐되어야 함
- 누출이나 옆질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관 규격 내에서 다양한 형태(디자인)로 구성될 수 있음
- 관 외부에 투명한 도장을 할 수 있음. 단, 도장재료는 천연재료여야 함

3 친환경 화장용 부속용품 권장기준

○ 용어의 정의

- 화장용 부속용품이란 화장하기 위하여 입관 전후에 필요한 부속용품을 말함
- 화장용 부속용품의 종류로는 화장용 수의, 화장용 관보, 화장용 명정, 화장용 보공, 화장용 결관 등이 있음

○ 재 질

- 화장하기 쉽고 가연성 재질로 구성되어야 함
-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천연물질 재질로 구성되어야 함

○ 형태 및 디자인

- 화장용 부속용품의 용도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함
- 전통적,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색상이나 디자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4 관 속의 부장품 규제물질

○ 오염(매연, 유해가스, 악취)의 발생 원인이 되는 것

- 비닐제품(핸드백, 구두, 장난감 등)
- 화학합성섬유제품(의류, 침구, 직물 등)
- 발포스티로폼제품(베개, 완충재, 포장재 등)
- 그 밖에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골프공 등)

- 가연물질이지만 연소에 방해가 되어 잘 타지 않는 것
 - 과일(수박, 메론 등의 과일류)
 - 서적(사전, 앨범 등의 서적류)
 - 섬유제품(이불, 의류, 인형 등)
- 화장로 설비의 고장원인이 되는 것
 - 스프레이통, 전지, 탄소제품(낚시도구, 골프채, 지팡이, 라켓 등) 등
 - 금속제품(동전, 휴대폰, CD플레이어, 귀금속, 불상 등)
 - 폭발물(캔음료, 화장품 스프레이통,ライター 등)
- 유골손상의 원인이 되는 것
 - 유리제품(안경, 병, 식기 등)
 - 페이스메이커 등 체내 장치의료품으로서 화로 내에서 폭발하여 유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 그 밖에 연소과정에서 위험한 것

제3장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매뉴얼

제1절 개요

1 목적

-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무연고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 근거

- 1) 장사 등에 관한 법령(법률 제12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참조)
- 2) 관계법령 등
 - (1) 의료법
 - (2) 외국인 보호규칙(법무부령)
 - (3)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해양경찰청 훈령)

3 적용대상

- 1)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4 용어 정의

- 1) '무연고 시신'이란 ① 연고자가 없는 시신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시신을 말한다.
 - (1) '연고자'는 장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이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시신을 말한다.
 -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연고자가 있어도 무연고 시신 처리기준 충족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된 경우(군복무) -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 장애인 또는 저·고연령층으로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운 경우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 및 생활경제 능력이 어려운 경우 - 그 외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처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시신처리 위임서'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시신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시신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 무연고 시신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서류를 말한다.

제2절 무연고 시신 처리 절차

1

무연고 시신의 처리

- 1) 시장등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인수받은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조사로 사망자의 연고자 여부를 재확인 한다.

◆ 장사법

-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조제1항)

◆ 의료법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6조)

◆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 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정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시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37조제1항)
- 사법경찰관은 변사체의 검사를 한 경우에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사망지역의 구·시·읍·면의 장에게 검시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제38조제1항)

- 2) 시장등은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 결과, 연고자가 확인되면 그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시신을 인도한다.

- (1) 시장등은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 결과, 연고자가 없는 시신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 3) 시장등은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 결과,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 관계 단절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시신처리 위임서'를 받아 무연고 시신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4) 시장등은 사망자의 연고자가 확인되어 시신 인수를 통보하였으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면서 시신처리 위임도 하지 않아 시신의 손상, 부패 등 보건위생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고,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시신처리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무연고 시신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시신을 매장 또는 화장하여 봉안하고 연고자에게 매장·봉안장소 등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5) 외국인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적 영사에게 자국민 여부, 자국 내 연고자 파악 및 시신 인수를 요청한 후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무연고 시신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 제23조(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① 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상처 등으로 위독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사에게 알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 지방검찰청·지청 검사에게 알려 검시(檢屍)를 받은 후, 그 외국인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그 가족에게 사망 일시, 사망 원인, 병명 및 14일 이내에 사체를 인수할 것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사에게 알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사망 통보를 받은 영사나 그 가족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체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④ 소장이 제2항에 따라 사망사실을 알릴 때에는 제3항의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
- ⑤ 소장은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을 때 또는 영사 및 그 가족이 사체 인수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체의 교부·매장 또는 화장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⑥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원인(병으로 사망한 경우 병명과 병력을 기록한다), 사망 일시, 사체 보관 장소, 사망 통보 일시, 수신인, 사체 인수자 및 인계 일시 등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망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무연고자 등에 대한 시신처리 행정요령

- 1) **변사자의 경우** : 시신을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 시신이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리(범죄수사규칙 제37조제1항)
 ※단, 수사기관이 시신 인도 요청 전까지의 시신 안치료는 수사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함.
 (선고2007가단81420 참조)
- 2)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장소에 관계없이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제급여 지급 등을 시행(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장제급여’ 참조)
 ※사망한 지역이 관외인 경우 거리상의 문제로 사망자의 이송 등의 불편이 발생할 경우 기초 수급자를 관리하는 행정기관과 사망한 지역의 행정기관 간의 시신처리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
- 3) **독거노인(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이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독거노인에게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던 수행기관이 장례지원 서비스를 시행(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중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참조)

■ 참고 : 의료급여 수급자의 병원 치료 중 사망시 행정요령

(기초의료보장과-2203(2011.5.27.))호 관련

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수급자의 병원 치료 중 사망시 행정요령 -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하였는데 수급자 책정 시군구와 병원 소재지 시군구간 망자 처리를 서로 미룸으로 인해 한 달 간 망자가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례 발생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사목 및 아목의 규정에 의거,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등 망자를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한 시군구가 장례를 치러야 함. - 상기 법에 의거, 망자 발생시 1차적으로 연고자에게 인계하고 연고자가 없을 시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정부의 보호를 받던 시민인 경우에는 수급자 책정 등 보호조치 중인 시군구가 장례를 치러야 하며, 연고자도 없고 수급자 등 정부보호를 받던 시민이 아닌 경우에만 망자 발생 병원 소재지 시군구가 장례를 치름 - 만약 행정관청별로 상기 법과 상이하게 자체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임 ○ 병원에서 질환, 노환 등으로 사망하는 것은 변사(사고사 추정)가 아니므로 경찰이 처리할 사항이 아님 ○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망자가 병원에 장기간 안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

무연고 시신의 처리방법 및 공고 등

- 1)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일정 기간(10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 (1)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무연고 시신 등을 화장하지 아니하고 매장한 경우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
- 2)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고자가 있으나 시장등에게 시신 처리를 위임한 경우 또는 연고자에게 처리 의무를 통보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아 시장등이 처리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연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3) 공고는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한다)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 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4) 시장등은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5) 민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고,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에는 장례에 사용한 비용을 무연고 사망자가 소지한 금품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 6)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의 품격 있는 장례처리 등을 위하여 무연고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한다.
 - (1) 무연고 시신 처리 산정비용은 매장·화장 사용료, 장례용품(수의, 관 등),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을 포함한다.

4

무연고 시신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 1) 시장등은 투명하고 적절한 무연고 시신의 처리를 위하여 염습·입관 등의 처리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장례지도사가 진행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최대한 참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장례 대행업체(장례식장 등)를 선정하여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3) 무연고 시신 처리 대행업자는 시신 처리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신사진, 염습(수의착용)사진, 입관사진과 매·화장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한 처리결과를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시장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무연고 시신 처리 관리대장을 반기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무연고 시신 처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신처리 위임서

1. 사망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본 적 :

2. 연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사망자와의 관계 :
- 국 적 :

3. 무연고 시신처리 위임사유

-

4. 위임내용

- 시신의 처리(매장 또는 화장·봉안) :

5. 위임을 받은 자

- _____ 시장·군수·구청장

20 . . .

연고자 : _____ (인 또는 서명)

※증명서류: 사망자와 연고자 관계 확인증명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장례에 사용한 비용을 무연고 사망자가 소지한 금품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무연고 시신 처리 사진

구분	사 진
전신	
염습 (수의 착용)	
입관 (관 속 인치)	

(뒤쪽)

○ 시·군·구명

구 분	40세 미만			40세~49세			50세~59세			60세~64세			노인						미 상 및 기 타*	총계								
													65세~69세		70세 이상		합계											
	남	여	소 계	남	여	소 계	남	여	소 계	남	여	소 계	남	여	소 계	남	여	소 계	남	여	소 계	남	여	소 계	남	여	미 상	합 계
계																												
①																												
②																												
③																												

※분류 : ① 연고자 없음 ② 연고자 알 수 없음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함

* 미상 및 기타 :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 파악이 불가능한 신원불상자(둘 중 하나만 불분명해도 '미상'으로 취급)

[별지 제4호서식]

무연고 시신 처리 실적

○ 시·도명

시군구명	40세 미만			40세~49세			50세~59세			60세~64세			노인									미상 및 기타*	총계					
													65세~69세			70세 이상			합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미상
계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 미상 및 기타 :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 파악이 불가능한 신원불상자(둘 중 하나만 불분명해도 '미상'으로 취급)

제4장 |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소방안

1 기본적 인식의 공유

1) 장사시설은 편의시설이면서 비선호시설이다.

- 장사시설 설치 대한 지역공동체의 반대는 지역공동체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 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 장사시설의 입지선정을 반대하는 주민과 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반대측에게 장사시설은 편의시설이라는 당위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보다는, 타협 및 우수 조성 사례 등을 소개하여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필요
- 장사시설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추진측과 반대측이 장사시설은 편의시설인 동시에 비선호시설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출발점에서 장사시설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절차의 공정성과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 입지선정에 관한 모든 쟁점에서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게 된다.

2) 입지선정은 절차가 더 중요하다.

- 입지선정 과정이 기술적·과학적 측면을 너무 강조하고 절차적 원칙을 소홀히 할 경우 불신이 생겨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불신으로 인해 주민들은 시설입지에 따른 영향을 정당하게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비이성적인 요구를 하게 되며,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비이성적이므로 충족될 수 없다) 반대하게 된다. 입지선정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 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형평성이 충실해져 사업계획의 품질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3) 주민참여는 주민들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 장사시설을 비선호시설로 인식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과 생활권,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지선정을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비선호시설에 대한 선택권은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 형식의 선택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규모와 종류, 위치,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선택권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은 주민참여 절차는 실질적인 문제해결 과정이 아니라 형식적인 전시행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4) 민주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 장사시설 입지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추진력과 함께 대화와 타협으로 반대주민들을 설득하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적 리더십은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결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민주적인 리더십이 반대주민들의 입장을 바꾸고 비선호시설 입지의 동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절차의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를 소극적인 반대로 완화하는 성과는 기대할 수 있다.

5) 서두를수록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하다.

○ 사업시행자가 일을 서두르면 이해관계자와 협의절차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게 된다.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상호협력적인 신뢰관계에서 문제해결 시한의 설정은 합의를 앞당기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적대적인 불신관계에서 시간에 쫓기는 협상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 이상의 양보를 강요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끌려 다니는 수동적인 입장을 벗어나기 어렵다.

2

장사시설 설치 민원극복 우수사례

□ 경주시 하늘마루(주민 반대극복 조성사례)

1) 사업개요

- 사업명 : 시립 화장시설 현대화사업
- 사업기간 : 2008년~2011년
- 주요규모 : 부지 43,000㎡, 건축 10,550㎡(화장로 10기(8,400㎡), 봉안시설(2,000㎡))
- 사업비 : 370억원
- 주요 추진 성과
 - 님비현상의 대표 시설인 화장시설 신축 추진 시 전국 최초로 부지 공모제를 도입하여 주민참여형 선제행정 추진
 - 공모제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주민반대를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소, 주민화합을 달성하여 지자체와 주민 간 상호협력·상생 달성
 - 파격적인 지역개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의 계기로 전환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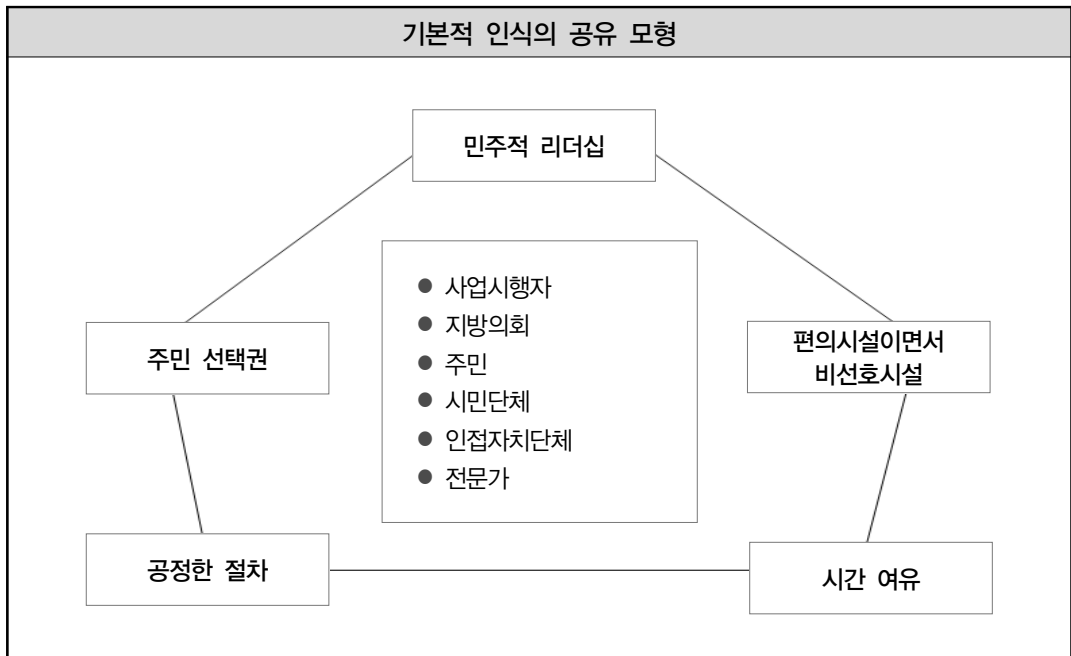
2) 갈등 해소 추진사항

- 주민참여형 부지공모제 도입으로 사전 갈등예방
 - 사업착수 단계부터 주민반대 최소화를 위해 전국최초로 부지공모제를 도입, 선제적 갈등예방행정 추진
 - 기피시설 유치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주민반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지 공모제를 도입하고 부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여 공정성·객관성을 확보
 - 주민설명회, 간담회, 선진시설 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 주도적 일방행정이 아닌 주민의 동의와 참여가 동반하는 공감행정 추진
- 님비시설 유치에 대한 주민인식 변화
 - 부지공모 시 선정지역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시
 - 주민대표와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을 통해 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당초 인센티브 보다 대폭 확대된 경제적 지원을 약속

- 선정지역뿐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지원을 약속하면서 보다 폭넓은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기피시설 유치가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변화에 성공
 - 경주시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이면서 지역과 동반성장 계기
- 주민협의체와 행정신뢰 형성
- 주민협의체와 유기적 관계 형성하여 협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점검
 - 열린 행정으로 행정신뢰도 확보하여 주민협의체를 주민의견수렴의 창구로 지속 활용

□ 갈등 처리 흐름도

경과	주요내용
사업계획 수립 및 부지공모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혐오시설임을 고려해 주민참여적 부지공모제를 전국 최초 도입 ○ 주민요구를 수렴하고 반대를 최소화하는 갈등예방적 선제행정 추진
↓	
유치경쟁 및 공정한 부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시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약속으로 11개 개인·법인 등에서 신청 ○ 전문가, 지역단체 대표로 구성된 부지선정 위원회의 심사 및 부지 선정 (객관성 확보)
↓	
선정 부지 주민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지역 주민이 ‘부지선정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 대규모 반대 집회·시위활동 지속
↓	
주민설득 및 대화창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선진시설 견학을 통해 인식변화 유도 ○ 지역민 합의기구인 ‘주민협의체 구성’으로 공식적 대화창구 마련
↓	
주민협의체 달성 및 협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협의체 ↔ 반대추진위원회 간 주민갈등 발생 ○ 주민대화 단일창구인 ‘서면민 대책위원회 구성’ 및 경주시와 주민지원 요구안 합의
↓	
지역발전 인센티브 및 지속적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협의체와 유기적 관계를 지속하고 주민약속사항 이행으로 행정신뢰를 획득



3

공모와 협상에 의한 입지선정

1) 대화와 타협을 위한 협상이 중요하다.

- ‘주민들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주민참여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추모공원건립협의회” 통해 대화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과거와 같이 소수 전문가와 공무원들에 의한 DAD(결정-발표-방어) 방식의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입지갈등 사례분석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갈등요인이 ‘공론화 노력의 부족, 일방통행의 의사소통과 빈곤한 설득, 공론화의 부재와 일방적 추진, 대표성의 부족, 행정편의적 접근’ 등 이해관계자와 협상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입지갈등 해결에 성공한 경우는 지속적인 주민대화, 개별 설득, 주민의견 존중, 폭설피해 축산농가 복구지원을 계기로 주민과 인간적인 유대감 형성, 화장시설 공사는 주민협의체와 협정서 체결 후 착공, 주민 명예감독 임명’ 등의 주민참여 절차를 갈등 해결의 주요인으로 꼽고 있다.

2) 협상은 반대하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 입지선정을 위한 협상은 자치단체 공무원, 사업자, 주민, 정치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고, 특히 환경, 교통, 재산 등의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정치인 등의 반대측 이해관계자들은 참여해야 한다.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이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입지선정은 결정에 불복하고 반대할 명분을 제공한다.

3) 이해관계자와 협상은 타당성 검토단계부터 필요하다.

- 주민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상은 사업계획의 입안 또는 타당성을 검토할 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선호시설의 필요성, 필요한 경우 시설의 종류와 규모, 위치, 환경·재산피해 예방대책, 이해관계자들의 수용 가능성 등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협상인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먼저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후에 보상 등 시설의 입지조건에 관한 협상인가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태도는 크게 달라진다.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협상하는 것은 반대의견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이해관계자들은 단정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상 과정에서 계획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전부를 취소할 가능성까지 약속해도 이해관계자들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 입지선정 후의 협상제외가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이라 오히려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이해관계자들이 협상참여의 조건으로 먼저 입지결정의 백지화,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4) 공모절차를 활용하면 입지선정이 용이하다.

- 선정기준과 항목별 순위 등 평가체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의 입지를 최적입지로 선정하는 방식과 일정 수준 이상의 모든 입지를 후보지로 고려하고 그 중 하나를 적정 입지로 선정하는 방식이 있다.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은 최적입지 선정방식과 적정 입지 선정방식을 결합하여 지역공동체의 수용 가능성을 토대로 제2, 제3의 입지를 고려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보상을 제시하고 공모, 협상, 주민투표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5) 정보공개는 신뢰형성의 지름길이다.

- 입지선정에 관한 정보는 이해관계자들이 때가 되면 알게 될 텐데 미리 알려서 굶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업시행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와 협상시점이 입지선정 후가 아니라 사업계획의 입안단계 또는 타당성 검토 단계라면 관련 정보도 미리 공개하고 함께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보공개는 사업시행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주민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정보도 함께 공개해야 바람직하다. 입지조건들에 대한 정보와 이해관계자들이 실제로 우려하는 환경·교통·재산피해 등의 우선순위, 비용을 줄이기 위한 추가대책과 불가피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들에 대한 정보가 쌍방향으로 교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보공유다. 정보공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촉진하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정보공개를 촉진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

6) 공동 사실조사는 정보공유의 필요조건이다.

- 공동 사실조사는 사업시행자와 주민, 환경단체 등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에 부정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사업계획의 과학기술적 타당성과 사회경제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한다. 공동 사실조사는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유 방식이다.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가치관과 경험의 차이로 인해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해석하며 자신과 상대방의 인식의 차이를 좁혀가는 상호학습 과정이다. 정보공유는 단순히 사업시행자가 보유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소극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시행자와 대등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수집과 전문가 고용 등의 조사연구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적극적인 기능이 진정한 의미의 정보공유다. 국내외 선진 화장시설의 견학도 고려해 볼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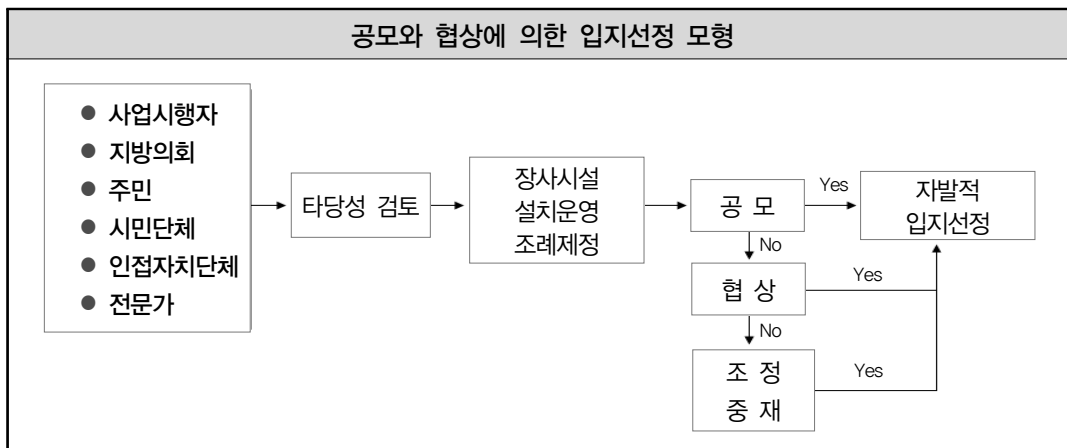
7) 중립적인 조정자는 협상의 윤활유다.

-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은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또는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사용하는 수단이다. 조정능력과 중립성, 공정성을 갖춘 조정자는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사전심사를 거쳐 합의로 선정한다. 조정자는 당사자들을 찾아가는 직접·개별 면담 방식의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양측의 입장과 이해관계들을 확인하고 쟁점별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미리 탐색하고, 협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협상 참여자, 의제, 기간, 장소 등 협상의 기본규칙을 설계하여 참여자들에게 제시한다. 조정자 역할은 조정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 또는 시민단체 대표자들도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으면 조정역할이 가능하다.

8) 모든 쟁점에 합의하는 것만이 협상의 목표는 아니다.

○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자들 간에 모든 쟁점에 대한 완전한 합의만이 협상의 목표는 아니다. 완전한 합의가 어려우면 부분적 합의도 가능하고,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공유와 공동 사실조사, 협상과 조정 등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이해하는 상호신뢰가 형성된다면, 그래서 각자의 입장 때문에 합의는 어려워도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추진절차의 민주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되면 그것만으로도 협상은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사업시행자가 예상할 수 있는 협상 결과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합의서에 서명하는 갈등종결 둘째, 합의서에 서명은 못하지만 반대하지는 않는 소극적 찬성의 갈등완화 셋째, 찬성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는 소극적 반대의 갈등잠복 넷째, 시위와 소송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갈등심화 등이다. 최선의 협상결과는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갈등의 종결이지만, 최선이 어려우면 소극적 찬성의 갈등완화 또는 소극적 반대의 갈등잠복 등의 차선으로 목표를 수정하더라도 시위나 소송 등의 전통적인 방식보다 협상과 조정에 의한 상호신뢰의 회복이 입지갈등 해결에 더 유용한 수단이다.



4

타당성 검토 강화

1) 시설장사시설의 활성화 방안도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 장사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처음부터 특정시설의 특정지역 설치를 전제로 검토하게 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다양한 대안개발의 가능성이 봉쇄된다. 장사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안들 중에는 사설 장사시설의 공급을 지원하는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

2) 소규모 분산설치의 타당성도 검토해야 한다.

- 도시지역에서 장사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사업시행자가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장례식장을 집단지화, 공원화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사시설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추석, 설날, 한식 등 특정일에 성묘객 집중으로 인한 교통피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 할 수 있다. 유족과 성묘객의 집중으로 인한 교통체증, 부정적인 지역이미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을 분리하거나 소규모로 분산하여 지역별로 동시에 설치하는 방안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묘지공원 내 입지선정의 타당성도 검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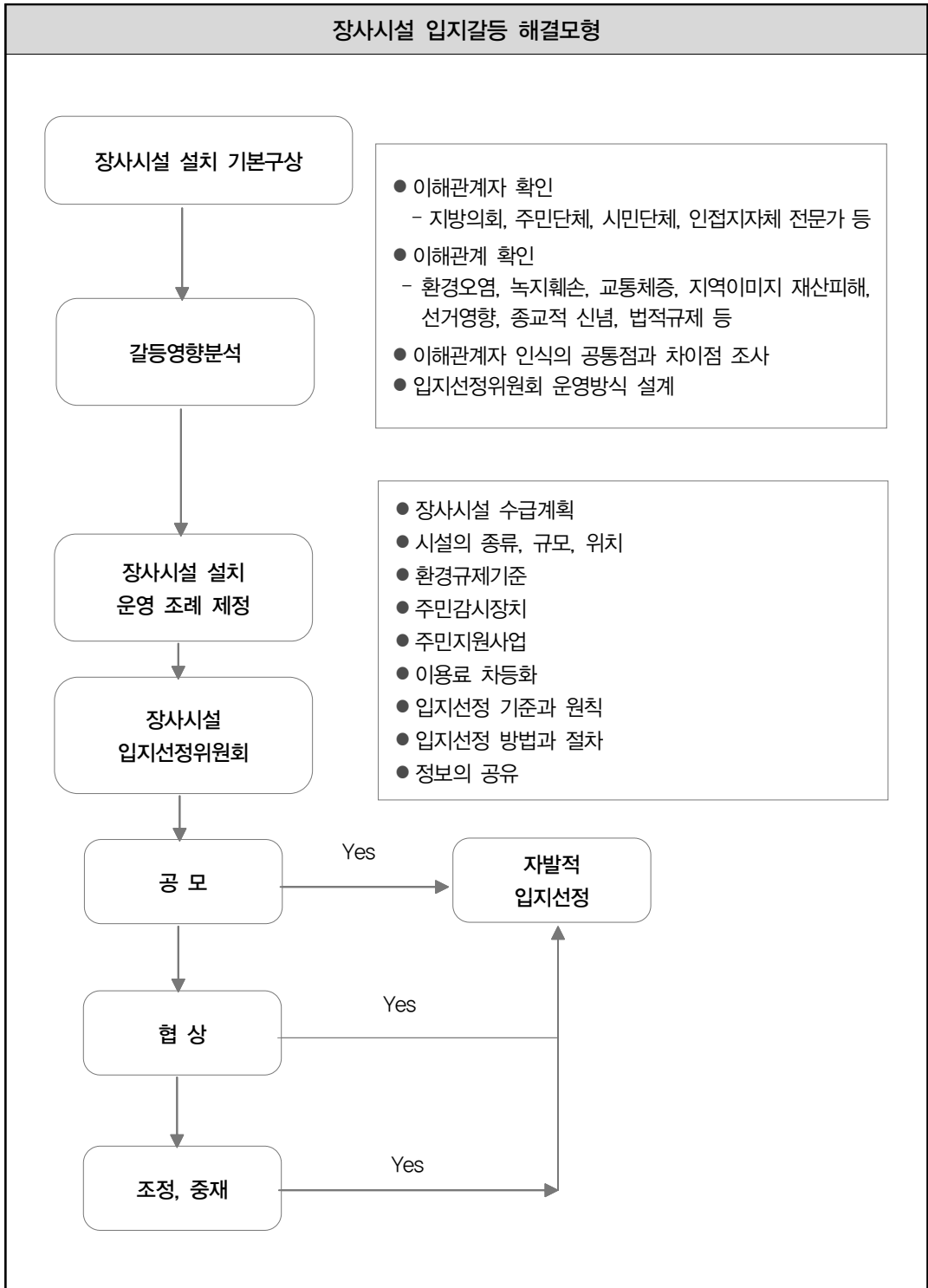
-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결에 성공한 자치단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공원묘지 안에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장례식장의 입지를 선정한 것이다. 지역주민은 누구든지 장사시설의 입지를 반대하지만 반대의 정도는 이미 장사시설이 입지하여 운영 중인 지역보다 신설 지역의 반대가 더 크기 때문에 운영 중인 공원묘지 안의 장사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장사시설의 입지 대상지역에 현재 운영 중인 공원묘지와 화장시설도 포함하여 낡은 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교체하고, 아름다운 설계와 조경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예방하며, 개발이익의 손실 보상방안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타당성과 형평성, 수용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도심지 내 입지선정의 타당성도 검토해야 한다.

- 일본 도쿄도 무사시노시는 시청 옆의 종합 운동장 부지에 소각장을 설치하여 입지갈등을 해결했다. 장사시설의 입지를 시청 옆에 선정하면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운영 과정의 환경피해와 교통피해를 줄일 수 있고,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로 인한 재산 피해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으며, 행정 경계지역의 입지로 인한 자치단체 간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

5) 광역시설 설치의 타당성도 검토해야 한다.

-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수요에 맞게 장사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화장 시설의 경우는 3~4개 시·군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각 시·도 장사업무 담당부서(전화번호 현행화 필요)

시·도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02-2133-7437	02-2133-0720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051-888-3291	051-888-3269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		053-803-6261	053-803-3959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032-440-2833	032-440-8655
광주광역시	고령사회정책과		062-613-3092	062-613-3079
대전광역시	노인보육과		042-270-4742	042-270-4719
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52-229-4823	052-229-4819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보건장애인과		044-300-3819	044-300-3829
경기도	노인복지과		031-8008-4328	031-8008-3378
	북부청	사회복지담당관	031-8030-3162	031-8030-3159
강원도	경로장애인과		033-249-2676	033-249-4078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043-220-3103	043-220-3069
충청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041-635-4234	041-635-3059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063-280-2513	063-280-2519
전라남도	노인장애인과		061-286-5834	061-286-4777
경상북도	노인효복지과		054-880-3747	054-880-3759
경상남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		055-211-4854	055-211-4819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064-710-6621	064-710-6609

